

최종 연구보고서

쌀 품질검정기능 활성화 및
검정체계 구축방안 연구

2006. 11. 10.

(사) 세계농정연구원

제 출 문

농림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쌀 품질검정기능 활성화 및 검정체계구축방안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

주관연구기관명 : (사) 세계농정연구원

총괄연구책임자 : 이상무(세계농정연구원 이사장)

연구 참여자 : 이효복(세계농정연구원 연구위원)

황진열(세계농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중환(세계농정연구원 연구보조)

최경연(세계농정연구원 연구보조)

정문상(세계농정연구원 연구보조)

최용규(세계농정연구원 자문위원)

조방환(세계농정연구원 자문위원)

정태균(세계농정연구원 자문위원)

최규원(세계농정연구원 자문위원)

- 목 차 -

<요 약>	7
제1장 서론	4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4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3
제2장 우리나라 쌀 산업의 실태	45
제1절 우리나라 쌀 산업의 여건변화 및 전망	45
제2절 우리 쌀의 품질수준 및 문제점	47
제3장 쌀 표시인증제 추진	50
1. 쌀 표시인증제의 필요성	50
2. 쌀 표시인증제의 개념	51
3. 표시인증 쌀의 특성	52
4. 표시인증 쌀 생산기준(안)	53
5. 국내 쌀 표시인증 방안	58
제4장 민간검정기관 설립방안	65
제1절 민간검정기관설립의 필요성	65
제2절 민간검정기관 설립형태	65
1. 사단법인	66
2. 재단법인	69
제3절 민간검정기관설립의 법적근거	70
1. 양곡관리법의 현행체제	70
2. 민간검정기관설립 근거마련	71
제4절 민간검정기관설립 운영	72
[제1안]	
1. 민간검정기관의 조직체계	73

2. 소요인력	73
3. 관할구역	76
4. 업무범위	76
5. 업무담당 계획	76
6. 품질관리실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	83

[제2안]

1. 민간검정기관의 조직체계	87
2. 소요인력	87
3. 관할구역	89
4. 업무범위	90
5. 업무담당 계획	90
6. 품질관리실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	92

[제3안]

1. 민간검정기관의 조직체계	93
2. 소요인력	93
3. 관할구역	95
4. 업무범위	95
5. 업무담당 계획	95
6. 품질관리실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	104

제5절 업무별 예상수입 및 소요액 검토 105

[제1안]

1. 수입액	105
2. 소요액	107

[제2안]

1. 수입액	110
2. 소요액	112

[제3안]

1. 수입액	114
2. 소요액	117
제 1안, 제 2안, 제3안에 대한 장·단점 비교	125
제5장 외국의 쌀 검사(검정)제도	127
1. 일본	127
2. 미국	146
제6장 위격검인증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152
1. 위격검인증행위에 대한 단속대상의 종류	152
2. 단속과 관련한 주요수행업무	152
3. 검정기관장(지사장)의 지도·감독	152
4. 위격인증 및 지시위반자에 대한 조치	153
5. 감독자에 대한 조치	153
6. 문책조치 및 보고	153
제7장 결론	154
<별표1> 벼 재배 약정농가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157
<별표2> 쌀 생산 RPC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159
<참고자료>	
1. 국내 쌀에 대한 기관별 검사·검정 등의 제도	162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62
나. 농촌진흥청	186
다. 지방자치단체	189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4
마. 한국 식품개발연구원	195

2.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공인검정기관지정 및 사후관리실태	196
가. 공인검정기관 지정	196
나. 사후관리실태	198
3. 축산물 등급판정소 운영실태	200
가. 설립근거 및 목적	200
나. 조직구성	201
다. 주요 사업내용	202
라. 예산 및 재무	202
4. 국내 검정회사 운영실태	204
가. 법적근거	204
나. 현황	204
다. 검정관련 업체의 종류 및 주요업무	204
라. 농산물에 대한 우리나라 검정회사의 검정능력 및 실태	204
마. 수입농산물의 검정 현황	205
바. 항만운송사업 면허 및 기준	206
사. 검수원 자격	206
아. 농산물검정 주요업체 현황	207
<참고문헌 및 관계기관 Home Page>	208

< 요약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DDA협상이후 WTO보조금 추가감축, 농산물시장개방 확대로 우리농업의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최소시장접근물량(MMA) 증가, 수입쌀 시판허용 등 수입쌀과의 경쟁이 불가피
- 소비자들은 쌀에 대한 안전성 및 고품질품 선택으로 급변해가고 있으나 브랜드난립('06현재 약 1,873개)으로 쌀 선택의 혼란을 가중시켜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과 맛, 그리고 안전성이 뛰어난 쌀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
-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품종선택, 비배 관리, 수확·건조·저장·가공·유통 등에서 총체적 System을 구축하여 관리를 하여야 하나 국내산 쌀의 경우, 관리가 미흡하여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은 실정
- 소비자들은 품질·맛·안전성이 뛰어난 쌀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우리 쌀은 인지도가 낮아 금후 외국쌀과의 품질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
- 양곡관리법시행규칙(제7조의3)개정에 따라 산연· 품종· 등급· 중량 등 표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표시제이행에 대한 검증기능은 아직 미흡한 실정
- 현재 MMA 수입쌀 선적지검정업무를 외국검정회사(OMIC)에 위탁하여 검정함에 따라 외화낭비초래('05년 선적지 검정료 : 12억 원)
- RPC의 산물 벼·보리는 구매자(농협)가 직접 검사함으로써 농업인들이 검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도 있어 일부지역의 행정기관에서는 검사전문기관이 직접검사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
- 따라서 생산자·소비자·유통종사자 모두의 욕구에 부응하는 쌀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 생산자·종자·포장업선
- 재배표준화에 의한 비배관리
- 수확·저장·관리·가공·사후관리의 체계적 이행 등

생산 전 과정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산·공급함으로써 우리 쌀에 대한 신뢰도제고로 대외경쟁력 확보가능

☞ 민간검정기관을 설립·운영할 경우,

- 생산과정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통합관리가 가능하여 차별화실현
- 소비자들에 대한 쌀 선택의 혼란방지 가능
- 값싼 외국산 쌀이 수입되더라도 우리 쌀에 대한 신뢰도구축으로 경쟁가능
- RPC산물수매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신배제로 분쟁방지 가능
- MMA수입쌀 검정과 관련한 외화절약실현 등

민간검정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업무를 개발 수행함으로써 현행 고비용 저효율의 System에서 저비용 고효율의System으로 전환이 가능.

2. 연구범위

가. 국내 쌀에 대한 기관별 검사·검정 등 실태 파악

- 농관원 : 수매벼·정부양곡(쌀)·MMA쌀 검사, 일반농산물의 품질인증, 친환경인증, GAP체계
- 농진청 : 벼 품종식별, 쌀 관련 식품개발현황
- 지자체 : 지역별 쌀 생산·관리현황
- 농 협 : 산물 벼·산물보리수매 체계
- 한식연 : 쌀 관련 식품개발·식미평가현황

나. 외국(일본·미국 중심)의 쌀 검사·검정 제도파악

- 일본 : 곡물검정협회 및 OMIC의 검사·검정 체제
- 미국 : 농산물검사·검정 체제

다. 타기관의 유사제도(법적근거·운영체계·업무범위·서비스내용 등)에 관한 연구

- 식약청의 공인검정기관 지정·지원과 사후관리관련 연구
-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설립·지원과 운영관련 연구

라. 민간검정기구설립 방안모색

- 조직구성, 소요인력, 장비확보, 업무범위, 검정대상 품목의 검정기준 및 검정방법, 소비자 신뢰제고방안, 소요자금 및 수익성 등에 대하여 중점연구

- 제1안 : 쌀 검사·표시인증 및 MMA쌀 검정(2종류)을 전담하는 방안

- 본(안)은 쌀 표시인증에 있어서는 RPC가 생산자와 계약재배 하여 수매한 벼에 대하여 곡물검정소가 이를 저장·관리·가공(완전미 생산 전 과정 포함)·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임.

- 제2안 : 쌀 표시인증, MMA쌀 검정, 친환경인증(3종류)을 전담하는 방안

- 본(안)의 쌀 표시인증방법은 제1안의 방법과 동일

- 제3안 : 쌀 표시인증, MMA쌀 검정, 친환경인증, RPC산물수매, 브랜드 쌀 평가(품종 및 식미평가 포함)업무를 전담하는 방안

- 본(안)의 쌀 표시인증에 있어서는 1안~2안과는 달리 곡물검정소가 생산자·품종·포장을 사전에 엄선하고 재배표준화에 의한 비배관리와 수확, 저장, 관리, 가공(쌀 생산과정 포함)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임.

바. 국내 쌀 표시인증방안 모색

- 완전미 기준, 벼 재배약정농가선정심사기준, 벼 재배약정농가선정을 위한 세부심사요령, RPC선정기준, RPC선정을 위한 세부심사요령, 완전미 표시인증번호 부여방법 등에 대하여 중점연구

3. 연구방법

문헌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검토

4. 우리 쌀의 품질수준 및 문제점

- 가. 그동안 재배 관행을 개선하고 가공·유통단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였지만, 외관·식미 등에서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
- 나. 직파재배지에서 잡초, 이형주, 앵미 등 발생으로 수량 및 미질저하다. 수확시기의 집중화 또는 조기·만기 수확으로 인한 품질저하
- 라. 건조·저장·도정 및 유통관리 등 수확 후 관리 인프라구축 미흡
- 마. 포장재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불일치로 소비자 신뢰도 저하
- 바. 우리 쌀의 품질우수성 인식 및 쌀 소비촉진 홍보미흡

5. 쌀 표시인증제 추진방안

가. 쌀 표시인증제의 필요성

- 값 싸고 양질인 중국산 쌀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
- 우리농가는 다수확품종선택 및 재배기술적용으로 품질경쟁력 미흡
- RPC의 고품질 쌀 생산노력 미흡
- 현재 쌀 브랜드는 대부분 개별브랜드이며, 브랜드 간에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편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972년7월1일부터 실시해온 품질인증제가 표준규격출하제와 유사한 면이 있고 품질 면에서도 외국산과의 경쟁력이 낮은 실정
- 특히 품질인증제도는 '08년부터 GAP제도와 통합 운영될 계획
- 민간검정기관설립으로 전문가를 영입, 품질·포장·표시·중량 등에서 완벽한 인증을 실시함으로써 현재 난립되고 있는 쌀 브랜드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란방지 및 외국산 쌀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구축 필요

나. 쌀 표시인증제의 개념

- 표시인증제 실시근거 : 양곡관리법 등에 법적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
- 표시인증 주체 : 민간 쌀 검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이의 기관이 소정의 기준 및 규정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
- 품질·포장·표시 등 :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적용
- 표시인증 주요체계 : 벼 계약재배 (품종, 비배관리) ⇒ 품종별 구분수매 (벼 품질평가 병행) ⇒ 수매벼의 저온관리 점진적 추진 ⇒ RPC시설을 이용한 완전미 가공 ⇒ 철저한 쌀 품질평가 및 제품관리 ⇒ 검정마크표시 및 출하 (생산, 가공, 유통이력 등 바코드화) ⇒ 사후관리 실시 (이상제품 리콜)

⇒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쌀을 생산하는 제도

6. 표시인증 쌀의 특성

가. 외관특성

- 쌀의 외관은 모양, 크기, 심·복백, 투명도, 윤기 등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특성으로 상품성을 판단하는데 큰 영향

나. 식미특성

- 모양, 섶택, 윤기, 찰기, 질감, 향기 등이 관여(밥맛은 개인적 성향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짐)

다. 이화학적 특성

- 중요한 요소는 아밀로스과 단백질 함량임(아밀로스과 단백질 함량은 낮을수록 밥이 부드럽고 탄력이 있음)

라. 안전적 특성

- 농약, 비료 등 농자재의 적정수준사용 또는 친환경재배를 한 것으로서 안전성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쌀

마. 기타 특성

- 당해 연도의 쌀로서 쌀알이 맑고 균일하며 심복백이 없고 밥맛이 우수한 쌀
- 투명하고 윤기가 나며 고유의 향기가 있는 쌀
- 낱알이 충실하고 싸라기, 금간 쌀, 이물질 등이 없는 쌀
- 영양가치가 높은 쌀
- 표시가 확실하고 이상품은 추적관리가 가능하며 리콜이 확실한 쌀

7. 표시인증 쌀 생산기준(안)

가. 품질규격

구 분		요 건	비 고
외형적 요인	형질	기준품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형질, 도정도, 충실도는 표준품을 작성하여 적용한다.
	도정도	기준품	
	충실도	기준품	
	피해립	0.0% 이하	
	분상질·심백립	1.0% 이하	
	착색립	0.0% 이하	
	싸라기	1.0% 이하	
	이물	0.0% 이하	
	이종곡립	없는 것	
	돌	없는 것	
	뉘	없는 것	
내적 요인	수분	16.0%이하 15%이상	
	단백질	7.0%이하	
	아밀로스	18.0%~20.0이하	

☞ 【조건 1】

(1) 다음의 것은 완전미가 될 수 없다.

- ① 생산연도와 품종이 혼합된 것
- ②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것
- ③ 열풍건조온도가 45℃를 초과한 것
- ④ 계약재배생산품이 아닌 것

나. 포장기준

- 겉포장 : 지대, 폴리에틸렌 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골판지 상자, 플라스틱 상자 등
- 속포장 : 지대, 폴리에틸렌 대(PE대) 등

다. 표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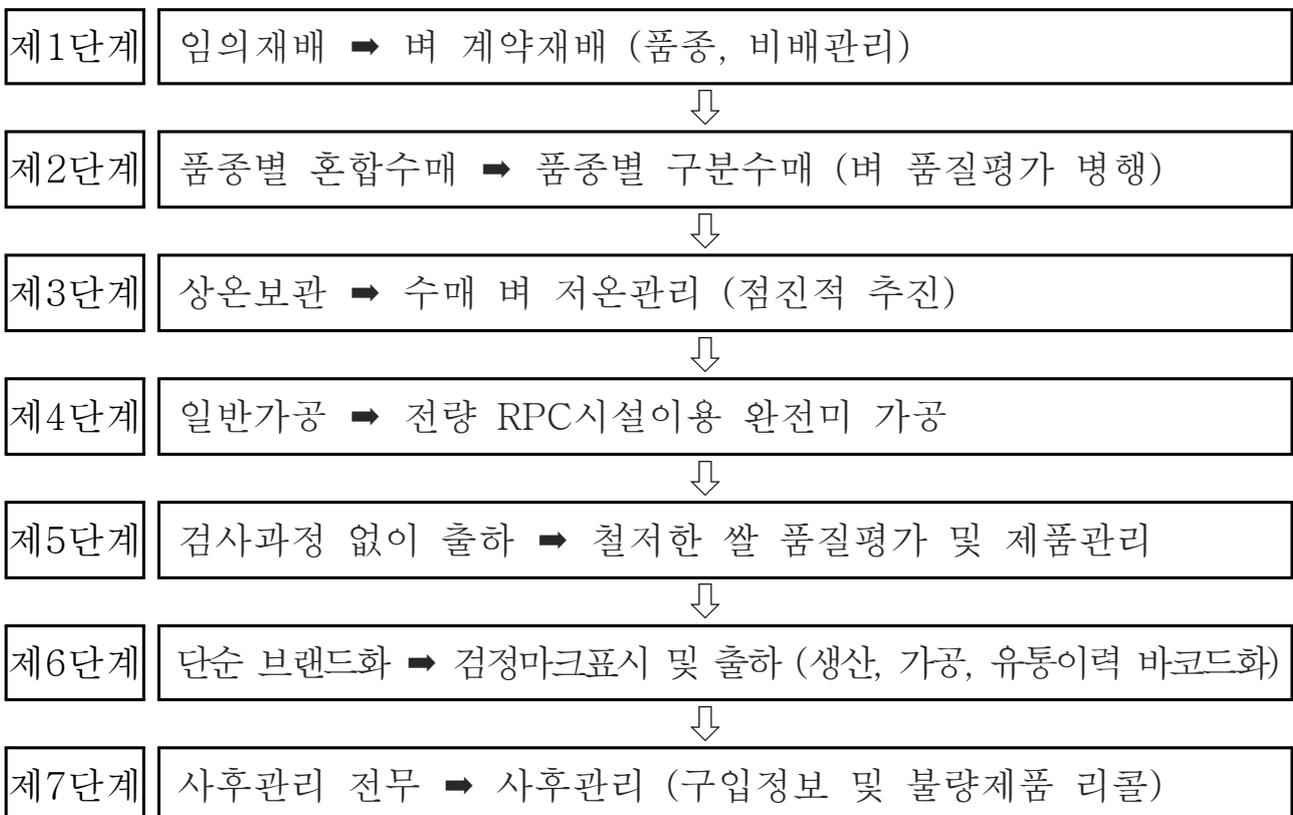
- 품목, 산지, 연산, 품종, 등급, 무게, 성분함량, 생산자 또는 단체명칭, 전화번호

라. 표시기준

- 산지는 재배지역 시·군명을 표시. 다만, 필요한 경우 읍·면 명을 추가하여 표시가능
- 생산년도는 수확연도를 표시.

8 국내 쌀 표시인증 방안

가. 쌀 표시인증을 위한 기본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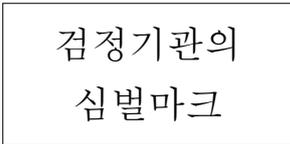


나. 이력 추적관리의 표시

- 생산자의 인적사항 종자, 농약, 비료 등의 내용, 생산지, 생산품목, 출하일, 수량, 가공제품생산 Lot별 번호, 계약내용, 품질관리 기록 등

다. 적격품 검정마크표시 및 출하

- 쌀 표시인증 번호부여 방법
 - 표시인증기관 지정번호(00) - 시·도별 지정번호(00) - RPC로 지정된 순위의 일련번호(00)를 결합하여 부여.
- 표시인증 표지도표



9. 민간검정기관 설립방안

가. 민간검정기관 설립형태

- 농산물검정업무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특별법에 근거한 공익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수익성이 없는 공익적 성격을 지니는 업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수출·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정·분석·조사 등 사업을 통한 이익금으로 운영의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정부지원은 불가피.

나. 법적근거 검토

- 현행법으로는 민간 검정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기존의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여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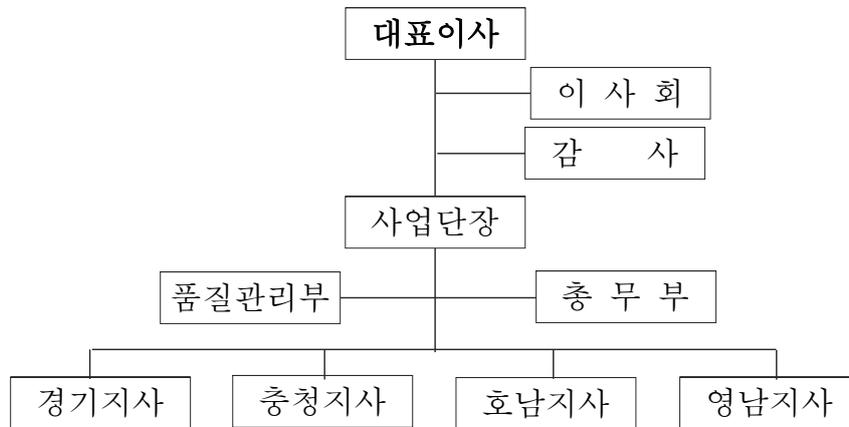
다. 각(안)별 검정기관설립 방안

[제1안]

☞ 쌀 검사·표시인증, MMA쌀 검정(2종류)을 전담하는 방안

- 본(안)은 쌀 표시인증에 있어서는 RPC가 생산자와 계약재배 하여 수매한 벼에 대하여 곡물검정소가 이를 저장·관리·가공(완전미 생산 전 과정 포함)·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임

(1) 검정기관의 조직체계



(2) 소요인력

(단위 : 명)

구 분	중앙단위	시·도 지사(支社)단위	합 계
관리자	5	4	9
실무인력	11	65	76
계	16	69	85

※ MMA쌀 검정업무와 관련한 임시일용잡급 인부인원은 제외.

① 관리자

- 중앙단위 : 대표, 감사실장, 사업단장, 총무, 품질, 등 부서간부
- 시·도 지사단위 : 지사장

② 실무인력 : 인사, 총무, 예산편성 및 집행, 일반관리, 검정 등 실무담당자

(3) 관할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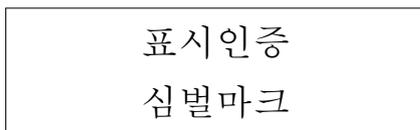
- 경기지사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전역
- 충청지사 :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역
-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전역
- 영남지사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역

(4) 업무범위

- ① 쌀 검사 및 표시인증
- ② MMA쌀 검정
- ③ 쌀 사후관리
- ④ 교육, 연구, 홍보
- ⑤ 쌀 표시인증·검정기술의 개발
- ⑥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 ⑦ 곡물검정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 ⑧ 기타 곡물검정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 검정마크표시

- ① 쌀 표시인증 번호부여
 - 표시인증기관 지정번호(00) - 시도별 지정번호(00) - RPC로 지정된 순위의 일련번호(00)를 결합하여 부여.
- ② 표시인증 표지



⇒ RPC에서 자체 수매한 원료 벼를 대상으로 하여 우선 표시인증제를 실시한 후

- 벼 재배약정농가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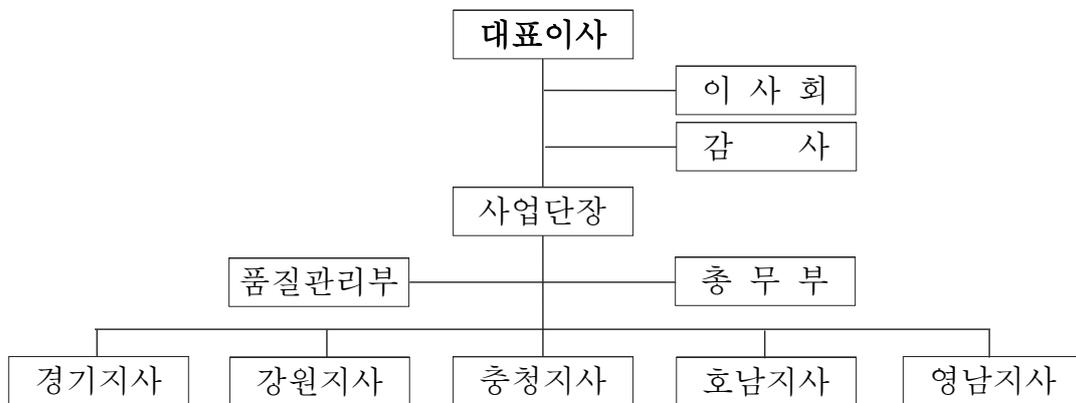
- 벼 재배 심사신청, 수수료, 심사, 시료채취 방법, 심사대상, 심사결과판정, 약정농가유효기간, 표시사항, 표시방법, 생산과정조사, 시료수거분석 등
- 쌀 생산을 위한 RPC선정도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 생산자자질 및 가공시설 운영능력, 대외 유명도, 대외신용도, 생산자 재 및 시설, 생산기술수준, 자체품질관리수준 등

[제2안]

☞ 쌀 검사·표시인증, MMA쌀 검정, 친환경인증(3종류)업무를 전담하는 방안

- 본(안)의 쌀 표시인증방법은 제1안과 동일
- 친환경인증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승인을 받은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검토

(1) 검정기관의 조직체계



(2) 소요인력

(단위 : 명)

구 분	중앙단위	시·도 지사(支社)단위	합 계
관리자	5	5	10
실무인력	14	97	111
계	19	102	121

※ MMA쌀 검정업무와 관련한 임시일용잡급 인부인원은 제외.

① 관리자

- 중앙단위 : 제1안과 동일.
- 시·도 지사단위 : 강원지사 신설로 제1안에 비하여 관리자 1명 증가

② 실무인력 : 강원지사 신설 및 업무추가로 인력증가(35명)

(3) 관할구역

- 경기지사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
- 강원지사 : 강원도 전역
- 충청지사 : 제1안과 같음
- 호남지사 : 제1안과 같음
- 영남지사 : 제1안과 같음

(4) 업무범위

- ① 제1안과 동일
- ② 다만, 친환경인증업무를 추가

(5) 검정마크표시

- 제1안과 동일

[제3안]

☞ 쌀 검사·표시인증, MMA쌀 검정, 친환경인증, RPC산물검정, 쌀 브랜드평가(품종 및 식미평가 포함)업무를 전담하는 방안

- 본(안)의 쌀 표시인증에 있어서는 1안~2안과는 달리 곡물검정소가 생산자·품종·포장을 사전에 엄선하고 재배표준화에 의한 비배관리·수확·저장·관리·가공(쌀 생산과정 포함)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방안임
- 친환경인증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검토

(1) 검정기관의 조직체계

- 제2안과 동일

(2) 소요인력

(단위 : 명)

구분	중앙단위	시·도 지사(支社)단위	합계
관리자	5	5	10
실무인력	24	140	164
계	29	145	174

※ MMA쌀 검정업무와 관련한 임시일용잡급 인부인원은 제외.

① 관리자

- 중앙단위 : 제2안과 동일.
- 시·도 지사단위 : 제2안과 동일.

② 실무인력 : RPC산물검정 및 쌀 브랜드 평가업무(품종 및 식미평가 포함) 추가로 제2안에 비해 실무인력 53명 증가 (중앙단위10, 시·도지사단위43)

(3) 관할구역

- 제2안과 동일

(4) 업무범위

- 제1안 및 제2안과 동일
- 다만 RPC산물검정 및 쌀 브랜드평가업무를 추가

(5) 검정마크표시

- 제1안과 동일

10. 업무별 예상수입 및 소요 예산

[제1안]

☞ 안전성분석업무는 outsourcing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검토

(1) 수입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MMA쌀 검정	쌀 표시인증	합계
수입('09설립)	1,780	375	2,155

(2) 소요 예산

(단위 : 백만 원)

구 분	MMA쌀 검정	쌀 표시인증	사무실운영	합 계
인건비	990	810	858	2,658
여비(국·내외)	315	27		342
자산취득비			2,919	2,919
임차료			1,700	1,700
안전성 분석의뢰 등 경상경비	5	10	60	75
합계	1,310	847	5,537	7,694

- 검정기관설립 당년도에는 사무실임차, 전산장비 및 사무실집기 등 구입, 품질관리실 장비구입, 최소한의 관리요원사역 등 기초적인 요소를 갖추기 위한 비용 약 77억 원 정도가 소요
- 그 이후부터는 인건비와 출장여비가 대부분으로서 약31억 원이 소요
- ※ 검정기관설립당년 이후부터는 자산취득비 및 임차료에 대해서는 계상 불필요
- ▶ 가칭 곡물검정소가 2009년도에 설립된다고 가정할 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시기는 기관설립 2년 후인 2011년도가 될 것으로 예상.
- ※ 전담업무별 연도별 발생예상 수수료

(단위 : 백만 원)

구분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MMA쌀 검정수수료		1,662	1,780	1,898	2,016	2,134	2,252	2,370
쌀 표시인증 수수료		125	375	750	1,250	1,875	2,625	2,625
계		1,787	2,155	2,648	3,266	4,009	4,877	4,995

[제2안]

☞ 안전성분석업무는 제1안과 같이 outsourcing 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

(1) 수입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MMA쌀 검정	쌀 표시인증	친환경인증	합 계
수입('09설립)	1,780	375	430	2,585

※ 검정기관설립 당년도에 약26억 원의 수입을 예상(본 예상 수입액은 각각의 사업별 신청이 계획대로 이루어 졌을 경우를 가정한 산출결과임)

(2) 소요 예산 (단위 : 백만 원)

구분	MMA쌀 검정	쌀 표시인증	친환경인증	사무실운영	합 계
인건비	990	810	990	960	3,750
여비(국·내외)	315	27	400		742
자산취득비				3,452	3,452
임차료				2,000	2,000
안전성 분석의뢰 등 경상경비	5	10	210	72	297
합계	1,310	847	1,600	6,484	10,241

- 검정기관설립 당년도에는 사무실임차, 전산장비 및 사무실집기 등 구입, 품질관리실 장비구입, 최소한의 관리요원사역 등 기초적인 요소를 갖추기 위한 비용 약 102억 원 정도가 소요
- 그 이후부터는 인건비와 출장여비가 대부분으로서 약48억 원이 소요
- ※ 검정기관설립당년 이후부터는 자산취득비 및 임차료에 대해서는 계상 불필요

▶ 가칭 곡물검정소가 2009년도에 설립된다고 가정할 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시기는 기관설립 4년 후인 2013년도가 될 것으로 예상.

※ 전담업무별 연도별 발생예상 수수료

(단위 : 백만 원)

구분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MMA쌀 검정수수료	1,662	1,780	1,898	2,016	2,134	2,252	2,370
쌀 표시인증 수수료	125	375	750	1,250	1,875	2,625	2,625
친환경 인증 수수료	409	430	452	473	495	516	538
계	2,196	2,585	3,100	3,739	4,504	5,393	5,533

[제3안]

☞ 안전성분석업무는 제1안 및 제2안과는 달리 검정기관이 분석실을 설치,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검토

(1) 수입액

(단위 : 백만 원)

구분	MMA쌀 검정	쌀 표시인증	친환경인증	RPC 산물검정	브랜드 쌀 품위평가	합 계
수입 ('09설립)	1,780	375	430	116	50	2,751

※ 검정기관설립 당년도에 약28억 원의 수입을 예상(본 예상 수입액은 각각의 사업별 신청이 계획대로 이루어 졌을 경우를 가정한 산출결과임)

(2) 소요 예산

(단위 : 백만 원)

구분	MMA쌀 검정	쌀 표시 인증	친환경 인증	RPC 산물검정	쌀 브랜드 평가	사무실 운영	합 계
인건비	990	810	1050	1,008	870	960	5,688
여비(국·내외)	315	27	400		6		748
자산취득비						6,364	6,364
임차료						2,000	2,000
안전성 분석 등 경상경비	-	-	10		27	958	995
합계	1,305	837	1,460	1,008	903	10,282	15,795

- 검정기관설립 당년도에는 사무실임차, 전산장비 및 사무실집기 등 구입, 품질관리실 장비구입, 최소한의 관리요원사역 등 기초적인 요소를 갖추기 위한 비용 약 158억 원 정도가 소요
- 그 이후부터는 인건비와 출장여비가 대부분으로서 약 74억 원이 소요
- ※ 검정기관설립 당년 이후부터는 자산취득비 및 임차료에 대해서는 계상 불필요
- ▶ 가칭 곡물검정소가 2009년도에 설립된다고 가정할 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시기는 기관설립 6~7년 후인 2015~2016년도가 될 것으로 예상.
 - 2015~2016년경 자생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곡물 검정소가 담당하는 업무 중 특히 표시인증 쌀에 있어 현재는 20Kg들이의 쌀이 주로 유통되고 있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소비자들의 핵가족화 및 식생활패턴이 바뀌어 감에 따라 1, 3, 5, 10Kg 등 소포장화로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검정기관설립 후 6~7년 정도 경과할 시 소포장품유통이 최소한 30~40%정도 증가할 것이므로 표시인증 수수료 또한 증가예상
 - ※ 소포장품 증가(30~40%)에 따른 수수료 변동예상액 : ('13) 2,625백만 원 → ('15~'16) 3,413~3,675
 - 따라서 쌀 표시인증수수료를 제외한 여타 업무의 수수료가 2013년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여도 수수료총액이 70억 원 내외가 될 것이므로 자생력이 생길 것으로 여겨짐.
- 전담업무별 연도별 발생예상 수수료

(단위 : 백만 원)

구분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MMA쌀 검정		1,662	1,780	1,898	2,016	2,134	2,252	2,370
쌀 표시인증		125	375	750	1,250	1,875	2,625	2,625
친환경 인증		409	430	452	473	495	516	538
RPC 산물검정		116	116	115	114	111	108	104
브랜드 쌀 평가		40	50	60	70	80	90	100
계		2,352	2,751	3,275	3,923	4,695	5,591	5,737

【 제 1, 제 2, 제 3안에 대한 장점과 단점 비교 】

□ 제 1안

<장점>

- ▶ 85명의 적은 인력으로 MMA쌀 검정, 쌀 표시인증 등 2종류의 업무추진이 가능
- ▶ 업무발생량에 있어서는 특히 MMA쌀의 경우, 향후 8-9년간의 검정물량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 있으며 쌀 표시인증에 있어서도 쌀 소비패턴이 소포장화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수입원확보가 용이
- ▶ 안전성분석에 있어서는 outsourcing체제를 유지하면서도 outsourcing기관 및 분석결과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가능하여 중앙 및 지방단위의 분석실설치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약 29억 원)대폭 절감가능
- ▶ 담당업무가 단순함에 따라 농관원, 한식연,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 영역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내재
- ▶ 검정기관운영을 위한 인력(85명) 및 예산(약77억여 원)이 가장 적게 소요되어 검정기관의 신규설립이 용이

<단점>

- ▶ 최소한의 관리인력(85명)을 확보하여 운영함에 따라 제 3안과 같은 체제로의 관리 및 운영은 불가능하여 완전미를 생산하였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도 미흡우려
- ▶ 중앙단위기관의 안전성분석실설치운영, 그리고 지방단위기관의 거점분석실 설치를 배제함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outsourcing 등 간접적인 관리에 따른 시간의 과다소요, 절차의 번거로움, 능동적 관리 불가능 등 안전성업무추진 애로 및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확보 미흡우려
- ▶ 담당업무가 단순함에 따라 검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내지 못하여 위상정립 미흡우려

□ 제 2안

<장점>

- ▶ MMA쌀 검정, 쌀 표시인증, 친환경인증 등 3종류의 업무를 담당할 때 121여명의 최소한의 인력으로도 업무추진이 가능
- ▶ 최소한의 인력(121여명) 및 예산(약102억여 원)으로도 검정기관의 신규 설립운영이 가능할 뿐 아니라 업무추진도 용이(위 제1안 보다는 검정기관 설립용이성이 다소 낮은 편)
- ▶ 안전성분석에 따른 장점은 위 제1안과 동일
- ▶ 업무영역에 대한 관계기관간의 갈등문제에 대한 장점도 위 제1안과 유사

<단점>

- ▶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도, 안전성, 검정기관의 위상정립 등에 대한 단점은 위 제1안과 동일

□ 제 3안

<장점>

- ▶ 검정기관이 전문성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여 생산자·종자·포장선정 및 재배 표준화에 의한 비배관리와 수확·저장·관리·가공·사후관리 등 완전미 생산 전 과정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명실상부한 완전미 생산으로 우리 쌀에 대한 대외경쟁력확보 가능

<단점>

- ▶ 인력의 과다소요(174명) 및 중앙단위기관의 안전성분석실설치운영, 그리고 지방단위기관의 거점분석실설치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과중(약38억 원)과 곡물검정기관설립을 위한 총 예상소요 예산이 약158억 원이나 되어 당해 기관의 신규설립에 부담으로 작용

11. 외국의 쌀 검사(검정) 제도

가. 일본

(1) 일본의 쌀 유통제도

- 50년간 정부가 통제하던 쌀의 유통을 2001. 4부터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유통 활성화 추진
 -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쌀 가격 관리, 계획 외 유통 미(자유 미)의 법제화
 - 정부비축미는 흉작 시 쌀 수급을 대체할 수 있는 최소물량비축(150만 톤)
 - 정부미는 정부가 전량 보관하지 않고 민간위탁보관하며 보관료 및 금리는 국가에서 부담
 - 정부미는 1년간 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중 쌀값의 하락으로 판매를 제한하여 장기(4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도 있음.
 - 쌀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비축미 외 자주유통미 일부를 조정보관(정부 보관료 지원)
 - 현미는 국가에서 품위검사, 유통 쌀은 산지·품종·산연 등 표시 관리이행
- 계획유통미(정부미, 자주유통미)와 계획 외 유통미의 유통경로
- 정부미 : 생산자 → 제1종 등록출하취급업자 → 제2종 등록출하취급업자 → 자주유통법인 → 정부(비축) → 등록도매업자 → 등록 소매업자 → 소비자
 - 자주유통미 : 생산자 → 제1종 등록출하취급업자 → 제2종 등록출하취급업자 → 자주유통법인 → 자주미 가격형성센터(가격형성) → 등록도매업자 → 등록 소매업자 → 소비자
 - 계획 외 유통미 : 생산자 → 소비자
- 계획유통미(정부미, 자주유통미)는 등록 출하업자만 취급
- 자주유통법인은 전국의 자주유통미의 유통량을 관리
- 정부미 및 자주유통미는 현미 검사를 받아야만 유통이 가능

- 검사는 2001. 4월부터 식량검사소와 등록된 민간검사기관이 병행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민간 검사기관으로 완전 이양계획

(2) 농산물검사 제도

- 농산물 검사제도 : 1950년도 검사법 제정, 2000년 개정, 2001년 4월부터 시행
- 검사목적 : 공정 원활한 거래, 품질개선, 농가경제의 발전, 소비의 합리화
- 검사대상 품목
 - 농림수산성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결정
- 검사 실시 기관
 - 법률개정 전까지는 국가기관이 검사하였으나 2001년 4월부터는 민간이양을 추진하여 국가검사와 병행.
- 민간검사기관은 농림수산성에 등록
 - 민간검사기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은 갖추어야 함
 - 검사원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받아야 함
- 국정검사
 - 포장물 검사 : 매개검사, 추출검사 실시
 - 산물검사(산물 또는 flagon bag에 담아 출하) : Lot별로 sample을 채취하여 실내검사 후 등급 판정
- 자체검사
 - 생산자가 컨트리엘리베이터에 출하한 건별로 벼의 수분, 중량을 계측하고 품위를 구분(상, 중, 하)하는 검사(검사품은 품종별, 품위별로 보관)
 - 수분검수는 수분측정기로 측정
 - 생산자의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비하여 농가별 시료를 보관
 - 구매대금은 컨트리엘리베이터 자체검사(검수)후 60%정도 지급하고 검사완료 후 잔액을 지불

- 농산물검사법을 개정하여 2001년 4월부터 민간검사 시행
 - 2001년 4월부터 농산물 검사를 민간검사기관에 이양을 추진하여 2007년에는 완전 이양
 - 민간검사기관은 농림수산성에 등록
 - ▷ 민간기관(법인)은, 농림수산성에 등록을 한 다음 검사 업무를 실시.
 - 검사원, 기계기구, 자력신용, 조직체제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 검사를 적정하고 확실히 실시할 수 있는 법인인지를 심사.
 - ▷ 검사는 등록검사기관이 하며 국가는 규격설정 등의 기본법율의 제정, 등록검사기관에 대한 개선명령, 등록취소 등의 지도 감독을 실시.

【등록격부기관의 등록기준에 관한 근거법령】

(3) 쌀 표시제도

- 쌀 판매자는 JAS법에 따라 명칭, 원료현미 내용(산지, 품종, 산연, 사용비율), 실중량, 도정 연. 월. 일, 판매자(정미업자)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식량사무소는 적합성여부를 관리
 - 의무표시사항 : 명칭<현미(찰 현미포함), 쌀, 찹쌀, 배아미>, 원료현미(산지, 품종, 산연, 사용비율), 내용 량(중량), 도정연월일, 판매자(정미업자)
 - 임의 표시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표시가능.
 - 브랜드 미(복수원료 미)는 산지, 품종, 산연을 사용비율과 병행 기재(사용비율이 많은 순으로)하되 국내산, 또는 수입국명, 사용비율만 기재가능
 - “新米”표시는 생산 당해 연도에 가공한 쌀에만 표시
 - 유통 쌀 표시 중에서 특별표시사항은 유기재배 표시.
- 표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모두 판매업자(정미업자)에게 있음.
- 쌀 표시 관리는 식량사무소 등이 순회 모니터링에 의한 감시를 하며 부적정한 표시를 한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지시, 공표, 명령, 벌칙 등 조치.

- 산지, 품종, 산연 표시위반 시 과학적인 감정방법으로 조사가 가능하나 분석비용이 많이 들고 정확도가 떨어져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통과정조사 등으로 단속을 함. (단 품종은 DNA분석으로 식별가능)
- 단백질함량 등 식미 표시는 임의로 표시한 경우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으면 국가에서 규제하지 않음.
- 허위표시는 관리규정에 따라 엄격히 단속하나 식미(단백질함량 등)에 대한 의무적 표시규정은 없음.
- ※ 특정 성분만의 성분표시는 위생성법에 저촉되므로 성분에 대해서는 모든 성분을 표시하여야 함.

(4) 쌀 성분 및 식미검정 제도

- 쌀의 단백질, 아미로스, 수분을 분석하고 있으나 검사에 적용은 않고 분석의뢰 시 단백질 등 분석결과를 통보
- 현재 쌀 식미검사는 연구단계이며 앞으로 검사기준이 통일되면 검사에 적용검토(식미기 제작회사들이 공동으로 검량선 표준화작업 추진 중)
- 식미검사는 생산자, 유통업자 등이 의뢰할 경우 식량청이 검정결과를 통보(의무검사는 아님)
- ※ 2003년부터 등록된 민간검정기관에서도 검정이 가능(곡물협회, 농협 등)
- 통일된 식미의 검정 검량선은 없으며 식미검정 결과를 공식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음

☞ (재)일본곡물검정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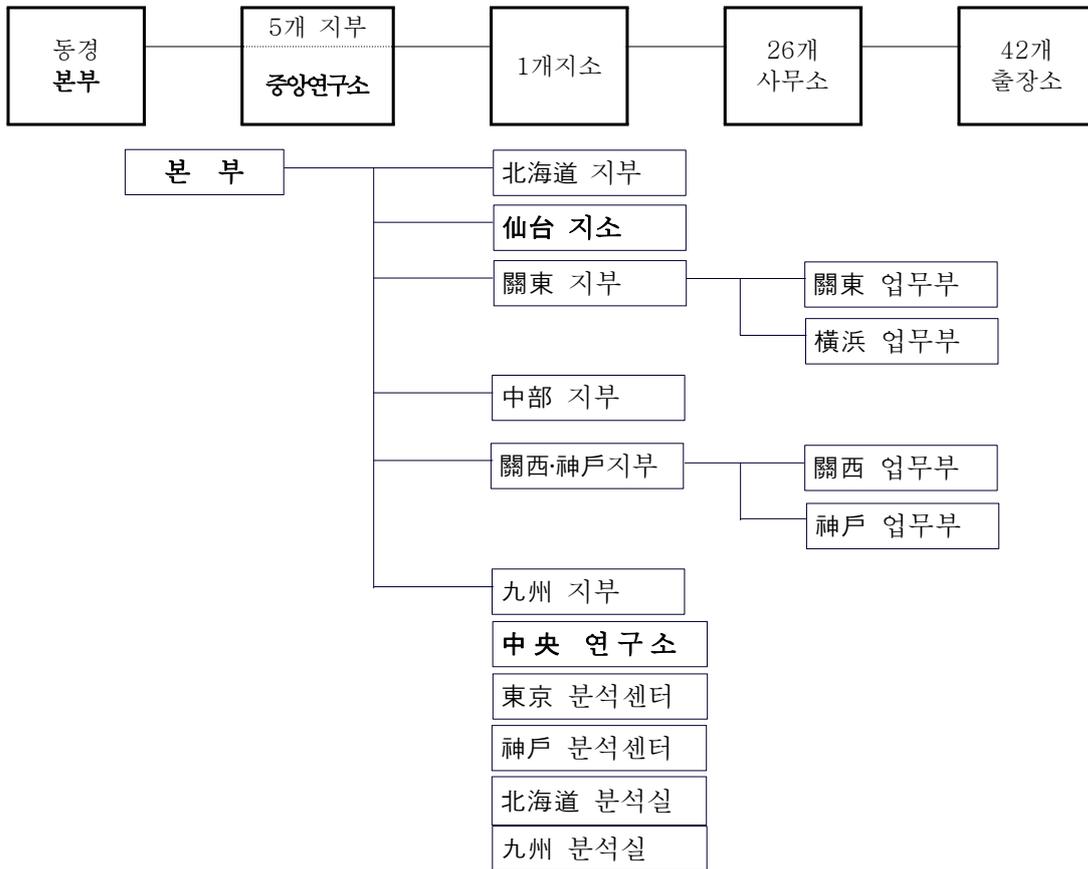
(1) 설립 목적

재단법인 일본 곡물검정협회(穀檢)는 미맥 등의 곡물을 시작으로 농작물 식품 등의 유통 과정에 대한 제삼자검정기관으로서 품질 안전성, 공정한 검사·검정을 실시해 유통의 원활화·품질의 향상을 도모해 소비 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조직 및 인원

가) 조직(1955.8.31. 농림성 지령30 식량 제4175호에 의거 설립인가)

◦ '03. 4. 1 현재



나) 인원('03.4.1현재) : 581명(임원11, 고문5, 직원377, 준 직원 188)

(3) 주요사업

가) 농산물검사. 검정

- 외국산 농산물 검사
- 국내산 농산물 검사
- 성분 검사

농산물의 종류	외국산 및 국내산 미곡, 외국산 및 국내산 밀
검사 항목	단백질, 아밀로스, 전분(폴링 넘버)
검사 실시 구역	전국

- 수입 잡곡류 검정
- 미곡검정

나) 농산물의 이·화학 분석

- 분석·검사 항목 : 쌀의 품종(DNA)감정,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중금속, 미생물분석, 성분분석, 규격시험, 품질성상 시험, 유전자조환체 시험, 사당분석, 쌀의 선도판정, 米麥의 성분검사, 위탁시험, 연구개발

다) 규격시험

- 농산물규격 시험
- JAS규격 시험
- 식품위생법에 따르는 용기포장 시험
- 레토르트 포장 쌀밥 규격 시험

라) GMO 분석

마) 사탕 분석

바) 쌀의 선도 판정

사) 위탁시험

- 보관시험
- 농약, 곰팡이독소의 안전성에 관한 분석법 개발
- 안전성에 관한 오염조사

아) 연구개발

- 포지티브 리스트 농약의 잔류농약 분석법의 개발
- 곰팡이독소(micotoxin)의 분석법개발 및 오염조사
- 쌀의 음식 맛에 관한 연구
-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의 검지 기술의 개발
- 근적외선분석계에 의한 비파괴 분석법개발

자) 식미 평가 사업

- 쌀의 이화학 시험
- 쌀의 관능 시험

차) 기타 서비스 사업

- 증명업무 : 사료증명, 포장증명
- 계량업무
- 국제협력사업
 -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연수 「벼의 수확 후처리 기술」 코스
 - 중국검험검역총국(AQSIQ :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 Quarantine)과의 기술 교류
 - 정부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ociation) 사업

☞ (사) 미곡안전공급확보지원기구 : 일본 전국미곡협회

(1) 설립취지

- 1981년 12월에 농림수산성으로부터 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아 「쌀의 소비확대에 관한 사업」 「미곡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경영기반 강화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 2004년 4월 식량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전국식량신용협회를 모체로 하여 재단법인 전국미곡협회, 사단법인 전국미맥개량 협회, 자주유통 법인의 조직과 업무를 재편 통합, 「사단법인 미곡안정공급확보지원기구」로 발족과 함께 「경영기반강화에 관한사업」 「쌀의 Traceability 시스템에 관한 사업」을 추진.

(2) 주요사업

- 가) 신용보증 사업
- 나) 집하 원활화 사업
- 다) 미곡 안정공급 지원 사업

라) 찹쌀수급 안정대책강구

마) 소비확대 사업

바) 정보제공 사업

□ 경영 기반 강화에 관한 사업

◦ 리스 사업의 운영

- '96부터 정부보조를 받아 설비정비를 위한 Lease사업을 계속관리·운영 중.

◦ Traceability 실시에 의한 사업경영 효과 등의 추적조사

- Traceability의 실적 및 Traceability가 경영에 주는 효과 등에 대해 1년간 추적조사 하여 그 결과를 집계 분석한 후 시스템개선 및 보급에 이바지.

□ 쌀의 Traceability에 관한 사업

◦ 2003년~2004연도는 쌀 유통에 있어 소비자의 안심·안전과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Traceability 시스템 도입사업(쌀 생산유통 이력정보시스템 도입 지원 사업)의 실시를 꾀해 시스템에의 참가 모집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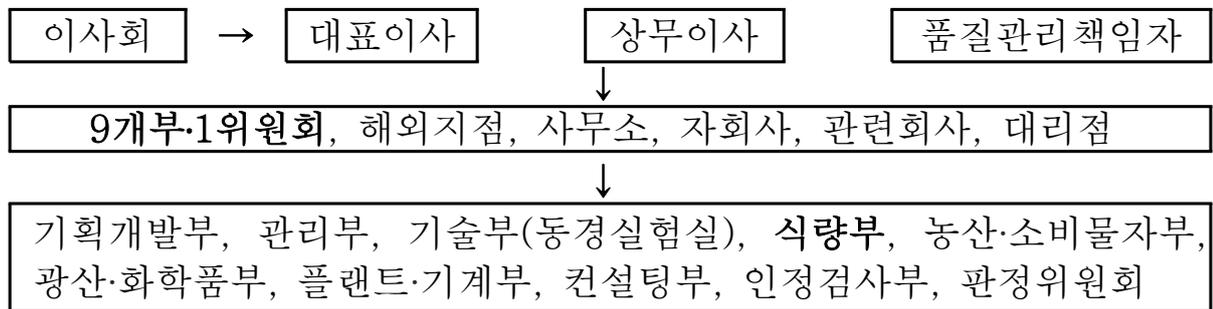
◦ 금년도에도 본격적인 참가모집을 실시해 Traceability에 의한 경영발전 및 쌀 소비확대 도모.

☞ **해외화물검사주식회사 : OMIC(Overseas Merchandise Inspection Co.,Ltd.)**

(1) 회사설립

- 태국 쌀의 선적지검사를 목적으로 하여 1954년에 설립되었음.
- 국제적인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국제총합검사기관으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
- 오늘날OMIC의 사명과 마크는 「신뢰」와 「안전」의 Brand로서 세계 각국에서 인정.

(2) 회사조직



(3) 업무분야

가) 농산물 INSPECTION

나) Testing & Analysis 분석

- 식품성분, 식품첨가물, 중금속, 카드뮴, 잔류농약, Mycotoxin, DNA, 유전자조작 식품 및 유전자조작 식품원료, 철강원료, 철강 부 원료, 비철원료, 화학제품, 각종금속류분석, 식품미생물검사, 사료영양성분의 검정, 커피·컵 테스트, 수분·립도·품위 등에 대한 물리적 시험, 광석 중의 금·은 분석 등

다) Consulting

라) 그 외의 서비스

- 물류 슈퍼비전 (하역, 수송감독) 및 Claim Survey
- Marine 및 보험 Survey
 - 충돌, 좌초, 하역설비손상에 관계되는 Survey
 - 선가계산, 선적화물에 관한 보험 Survey
 - 특수화물의 적부·하역 Survey
 - 본선에서의 연료적입 시 Tank Cleanliness Survey
 - 용차, 용선 계약 및 해약업무 대행 Survey
- FOG (積揚品質 重量 보상업무)
 - 積地와 揚地에서의 품질·중량의 차이에 의해 생기는 손실을 보상.

- PSI (선적 전 검사)
- 본선 · 창고 훈증
- 산원조사 및 관련항만 조사
- 식품의 안전성확인업무
- JAS법에 근거한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가공식품의 생산행정관리자, 제조업자, 소분업자, 수입업자 인정.

나. 미국

(1) 미국의 농산물검사(검정) 제도

가) 법적근거

- 미국 곡물규격법(The United States Grain Standards Act) : 1916년 제정
 - 1976년의 대폭적인 개정을 포함 현재까지 6회의 개정을 거침
 - 수출 농산물 : 의무검사(미국 곡물규격 법 제5조 의거)
 - 국내유통 농산물 : 희망검사(미국 곡물규격 법 제7조 의거)

나) 검사대상

- 미국 곡물규격(Official United States Standards For Grain)에 의하여 소맥, 대맥, 호밀, 호소맥, 옥수수, 귀리, 수수, 대두, 해바라기종자, 아마종자, 혼합곡물 등 11품목
- 농업시장법(The Agricultural Marketing Act, 1946년 제정)에 의하여 미곡, 두류 및 사료 등에 대한 규격설정

다) 검사기관 및 검사원

- 연방곡물 검사국(Federal Grain Inspection Service : FGIS)
 - 국내검사와 수출검사 실시 및 주정부·민간 검사기관의 감사 담당
- FGIS가 위임 또는 지정한 주정부 및 민간 검사기관
 - 위임을 받은 주정부 검사기관(7개 주정부) : 국내 및 수출검사
 - 지정을 받은 주정부 검사기관(6개 주정부) : 국내검사만 실시
 - 지정을 받은 민간 검사기관(43개 단체) : 국내검사만 실시

※ 검사원

- 요 건 : FGIS 및 검사기관 소속직원으로 검사원 자격시험 합격한 자
- 자격부여·유효기간 : FGIS 부여, 3년(일정조건의 훈련 이수)
- 검사원 구분 : 샘플러, 검량기술관, 검사기술관, 검량관, 등급부여 검사관

라) 검사방법

- 1) 시료채취 및 봉인 : Sampler, Ellis Cup, 이중관 색대 등을 사용
다만, 수출검사는 Diverter형 등의 자동샘플러 사용
- 2) 품위분석 : 육안감정 및 기기분석(NIRS 등) 활용
- 3) 최종검사결과 합격판정 시 FGIS 검사원이 납으로 봉인된 Control key Box를 개봉한 후 모든 선적장치가 작동되는 System으로 FGIS직원이 본선선적의 최종결정.

마) 현미 검사규격

- 국내 유통규격 및 수출규격의 구분이 없음

바) 농산물 민간검정기관

< OMIC 미국지사 >

- 1) 설립연도 : 1955년(미국 샌프란시스코)
 - 포트랜드 지점 : 북대서양 곡물(밀)수출 위주('59 설립)
 - 오리건 지점 : 최첨단 분석기기 보유 실험실('98 설립)
 - 캘리포니아 지점 : 미국과 일본 간의 쌀 거래 도모('98 설립)
- 2) 검사항목 : 농산물검사, 안전성검정, GMO검정, 쌀 품종 판별 등
 - ※ 농산물검사 : 등급·품질검사, 중량검사, 피해조사, 선적감독 등
- 3) 인증가입 : ISO 9001, 잔류농약분석인증서, 식품화학인증서, ACS 등

(2) 미국 농산물 공인검사기관 인증요건

가) 법적근거

- 미국곡물규격 법(USGSA)
 - GIPSA에서 3년 단위로 검사원, 주 및 지방정부에 대하여 공인검사 기관으로 지정

나) 검사 분류

- 위임 주정부 : 수출농산물에 대한 의무 공인검사(캘리포니아 등 7개 주)
- 연간 15,000톤 이상의 농산물 수출업체는 의무 등록
- 지정 주 검사기관 및 민간기관 : 국내농산물 허용 공인검사(6개주 농업국 및 43개 민간검사기관)

다) 공인검사 종류

- 공인기관 검사원에 의한 시료채취 및 검사
- 검정의뢰업체 공인검사원에 의한 시료채취 및 검사
- 제출시료에 대한 검사
- 공인 시료채취
- 저장 및 공정과정 확인조사
- 중량검사
- 철도차량 단위 검사
- 호퍼 및 트럭 단위 검사 등

라) 공인검사 기관 인증(자격요건)

1) 미국곡물규격 법 제7조(7.f.1.A)

- 시설 및 자격검사원 확보
- 공인검사가 이루어지는 가공공장, 저장고 등의 시설에 대한 검사원에 의한 주기적 점검 여부
- 곡물규격 법에 따른 교육 충족 여부
- 부당한 검사수수료 징수 여부
- 제한항목에 대한 검사원 이외의 인력에 의한 업무 이행 금지
- 법에 따른 조직 활동에서의 정확한 기록 여부
- 주 및 지방정부는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고용 여부
- 사무국은 공인검사기관 신청자 중 가장 유능한 기관을 선정

2) 규칙(Regulation 800.199)

- 곡물업체 주식보유자에 대한 고용금지
- 이해당사자간 뇌물행위 금지
- 법 규정하의 곡물업체내의 검사장소 및 기기 이용 가능
- 이해당사자간 갈등 발생 시 검사기관은 조속히 처리

마) 검사 수수료적용 원칙

- 합리적이고 무차별 적용
- 정부기관의 검사수수료는 검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 검사에 소요된 비용 및 인접 검사기관의 수수료와 비교
- 검사항목 간 검사신청자에 따라 차이가 없어야 함
- 검사수수료 schedule을 GIPSA에 제출
- 검사수수료의 유효기간 명시
- 일과 중 수수료와 초과 시간 및 휴일 검사수수료의 구분 명시
- 출장비 명시 등

12. 위격검인증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가. 위격검인증행위에 대한 단속대상의 종류

- 1) 위격검인증행위
- 2) 검인증 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 위반 행위
- 3) 점검·조사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 위반 행위

나. 검정기관장(지사장)의 지도·감독

- 검인증 및 점검현장수시 확인실시
-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검인증현장 확인을 실시.
- 위격검인증, 관련지시사항 위반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단속요강에 따라 조치

다. 위격인증 및 지시위반자에 대한 조치

- 위격검인증의 범위, 조치의 범위 및 문책의 종류, 문책의 처분방법 등은 별도로 규정을 정하여 적용

라. 감독자에 대한 조치

- 문책기준, 처분방법, 처분 건수의 산출 및 적용, 문책기산 기간 등은 별도로 정하여 적용

13. 결 론

- 시장개방 폭 확대에 따라 수입쌀과 국내 쌀과의 품질경쟁심화로 우리의 쌀시장이 잠식될 가능성상존.
- 쌀 브랜드난립('06. 3현재 1,873개)으로 국산 쌀 선택의 어려움가중.
- 수입쌀과 국산 쌀을 비교하여 구매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문제내재.
- 미질과 안전성이 높은 쌀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증대, 쌀 소비 계속감소, 업체들 간의 시장경쟁치열 등 쌀 시장이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어 정부에서 위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 고품질품종 재배 확대
 - 지력증진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 품질향상을 위한 재배기술지도 강화
 - 친환경 벼 재배면적 확대
 - RPC를 고품질 쌀 생산·유통의 중심체로 육성
 -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강화 등 총력을 경주 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생산자·소비자·유통관련자들이 우리 쌀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수 있게 하여 쌀은 물론, 다양한 농산물이 대대적으로 수입이 되더라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 첫째 : 국내 쌀에 대한 기관별 검사·검정 등 제도파악
 - 둘째 : 외국의 쌀 검사(검정)제도(일본·미국 중심)파악
 - 셋째 : 축산물등급판정소의운영 실태파악 등현행의 다양한 제도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쌀에 대한 품질차별화 방안과 민간검정기구설립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참고로 핵심연구의 Key Point는

<국내 쌀 품질차별화 방안모색과 관련하여>

- 완전미기준(안)마련, 벼 재배약정농가선정심사기준(안)마련, 벼 재배 약정농가선정을 위한 세부심사요령(안)마련, RPC선정기준 및 RPC선정을 위한 세부심사요령(안)마련, 완전미 표시인증번호 부여방법(안) 등에 대하여 중점연구

<민간검정기구설립 방안모색과 관련하여>

- 조직의 구성, 소요인력, 장비확보, 업무범위, 검정 대상품목의 검정기준 및 검정방법, 소비자 신뢰제고방안, 소요자금 및 수익성 등에 대하여 중점 연구

본 연구결과를 실행에 옮길 경우,

- ⇒ 생산자·종자·포장을 엄선하여 재배표준화에 의한 비배관리, 수확·저장·관리·가공·사후관리 등 완전미 생산 전 과정은 물론, 사후관리 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어 명실상부한 완전미 생산으로 우리 쌀에 대한 대외경쟁력확보 가능
- ⇒ 현재 약 1,900여종이 난립하고 있는 쌀 브랜드정비를 통한 차별화가 가능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쌀 선택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케 하여 우리 쌀에 대한 신뢰도 제고기여
- ⇒ MMA 수입쌀 검정과 관련한 외화절약실현 등 민간검정기관을 중심으로 쌀 품질고급화,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개발 수행함으로써 현행 고비용 저효율의 System에서 저비용 고효율의System으로 전환하는 등 쌀 품질관리의 전문기관으로서 그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여겨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DDA협상이후 WTO보조금 추가감축, 농산물시장개방 확대로 우리농업의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최소시장접근물량(MMA)증가, 수입쌀 시판허용 등 수입쌀과의 경쟁이 불가피
- 소비자들은 쌀에 대한 안전성 및 고품질품 선택으로 급변해가고 있으나 브랜드난립('06현재 약 1,873개)으로 쌀 선택의 혼란을 가중시켜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과 맛, 그리고 안전성이 뛰어난 쌀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
-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품종선택, 비배관리, 수확·건조·저장·도정·유통의 총체적 System관리를 하여야 하나 국내산 쌀의 경우 관리가 미흡하여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은 실정
- 소비자들은 품질·맛·안전성이 뛰어난 쌀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우리 쌀은 인지도가 낮아 금후 외국쌀과의 품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 양곡관리법시행규칙(제7조의3)개정 에 따라 산연·품종·등급·중량 등 표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표시제이행 대한 검증기능은 아직 미흡한 실정
- 현재 MMA 수입쌀 선적지검정업무를 외국검정회사(OMIC)에 위탁하여 검정함에 따라 외화낭비초래(2005년 선적지 검정료지급 : 약12억 원)
- RPC의 산물 벼·보리는 구매자(농협)가 직접 검사함으로써 농업인들이 검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도 있어 일부지역의 행정기관에서는 검사전문기관이 직접검사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

[표1] '04년도 농관원 퇴직자의 RPC산물 벼 검사 참여현황

시·도별	수매주체별 참여인원수(명)			
	농협	곡물협회	가공협회	계
경기도	4	1	3	8
강원도	6			6
충청북도		1		1
충청남도	2	4	1	7
전라북도	2	1		3
광주광역시	2	1		3
전라남도	1	2	1	4
대구광역시	1	2		3
경상북도	4	6	1	11
합 계	21	19	6	46

- 따라서 소비자(유통종사자)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 생산자·품종·재배포장의 엄선
 - 재배표준화에 의한 비배관리
 - 수확·저장·관리·가공·사후관리의 체계적 이행 등
 완전미 생산을 위한 전 과정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검정기관을 설립·운영토록 하여 명실상부한 완전미를 생산·공급함으로써 우리 쌀에 대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임
- ☞ 민간검정기관을 설립·운영할 경우,
 - 현재 약 1,900여종이 난립하고 있는 쌀 브랜드정비를 통한 차별화가 가능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쌀 선택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 값싸고 품질 좋은 외국산 쌀이 수입되더라도 우리 쌀에 대한 신뢰도가 구축되어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음.

- RPC산물수매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신을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음
- MMA 수입쌀 검정과 관련한 외화절약실현 등 민간검정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업무를 개발·수행함으로써 현행 고비용 저효율의 System에서 저비용 고효율의System으로 전환이 가능.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가. 국내 쌀에 대한 기관별 검사·검정 등 실태 파악

- 농관원 : 수매벼·정부양곡(쌀)·MMA쌀 검사, 일반농산물의 품질인증, 친환경인증, GAP체계
- 농진청 : 벼 품종식별, 쌀 관련 식품개발현황
- 지자체 : 지역별 쌀 생산·관리현황
- 농 협 : 산물 벼·산물보리수매 체계
- 한식연 : 쌀 관련 식품개발·식미평가현황

나. 외국(일본·미국 중심)의 쌀 검사·검정 제도파악

- 일본 : 곡물검정협회 및 OMIC의 검사·검정 체제
- 미국 : 농산물검사·검정 체제

다. 타기관의 유사제도(법적근거·운영체계·업무범위·서비스내용 등)에 관한 연구

- 식약청의 공인검정기관 지정·지원과 사후관리 관련 연구
-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설립·지원과 운영관련 연구

라. 민간검정기구설립 방안모색

- 조직구성, 소요인력, 장비확보, 업무범위, 검정대상 품목의 검정 기준 및 검정방법, 소비자 신뢰제고방안, 소요자금 및 수익성 등에 대하여 중점연구

- 제1안 : 쌀 검사·표시인증, MMA쌀 검정(2종류)을 전담하는 방안
 - 본(안)은 쌀 표시인증에 있어서는 RPC가 생산자와 계약재배 하여 수매한 벼에 대하여 곡물검정소가 이를 저장·관리·가공(완전미 생산 전 과정 포함)·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방안임
- 제2안 : 쌀 검사·표시인증, MMA쌀 검정, 친환경인증(3종류)을 전담하는 방안
 - 본(안)의 쌀 표시인증방법은 제1안과 동일
- 제3안 : 쌀 검사·표시인증, MMA쌀 검정, 친환경인증, RPC산물수매, 브랜드 쌀 평가(품종 및 식미평가포함)업무를 전담하는 방안
 - 본(안)의 쌀 표시인증에 있어서는 1안~2안과는 달리 곡물검정소가 생산자·품종·포장을 사전에 엄선하고 재배표준화에 의한 비배관리·수확·저장·관리·가공(쌀 생산과정 포함)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방안임

마. 국내 쌀 검사 및 표시인증방안 모색

- 완전미 기준, 벼 재배약정농가선정심사기준, 벼 재배약정농가선정을 위한 세부심사요령, RPC선정기준, RPC선정을 위한 세부심사요령, 완전미 표시인증번호 부여방법 등에 대하여 중점연구

2. 연구방법

문헌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검토

제2장 우리나라 쌀 산업의 실태

제1절 우리나라 쌀 산업의 여건변화 및 전망

1. 여건변화와 전망

가. 쌀 협상이후 시장 개방 폭 확대 불가피

- 쌀 협상타결로 최소시장접근물량(MMA)증가 및 수입쌀을 밥쌀용으로 시판
 - MMA수입량 : ('05) 225천 톤 → ('14) 409천 톤
 - 시 판 물 량 : ('05) 22.5천 톤 → ('14) 122.7천 톤
- DDA협상 기본골격은 관세와 국내보조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감축하도록 되어 있어 DDA협상이 완전 타결되면 시장 개방 폭은 더욱 확대 될 전망
- 또한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으로 가격과 품질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

나. 쌀 소비감소 및 소비자들의 고품질 쌀에 대한 선호도 증가추세

- '04년 말 양곡년도 재고는 102만 톤 수준이었으나 '04년 풍작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05년 말 재고는 144만 톤 수준을 유지
- 현재 국내산 쌀 품질이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란 미흡한 실정
- 양정제도개편으로 쌀 시장기능 확대 및 차별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

2.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체계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농림부)

☞ UR타결 이 후 쌀 산업 경쟁력제고 대책마련 및 시행철저로 쌀 생산성이 향상, 쌀 자급을 달성하였으나 과잉재고 등 문제점 발생

가.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생산기반집중정비

- 경리정리사업 : 149천ha(29,469억 원)
- 용수개발사업 : 46천ha(32,351억 원)
- 배수개선사업 : 64천ha(18,079억 원)

나. WTO에 대응하기 위하여 '94 및 '96년도 『쌀 생산비 절감 계획』 수립추진

- 벼 재배·수확작업 기계화를 제고 : ('95) 83% → ('04) 90%

다.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 규모화사업 추진

- '95~'04까지 총 3조 2백억 원을 지원, 86천ha 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화
- 쌀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영농규모 크게 증가
 - 전체 경영면적 : ('95) 35천ha(전체의 3%) → ('04) 279천ha (28%)
 - 쌀 전업농 육성대상자(70천호) 평균규모 : ('95) 2.5ha → ('04) 3.9ha
- 규모 확대에 따라 도시근로자 소득과 대등한 수준의 소득실현
 - 전체 쌀 전업농 소득('04) : 3,718만원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 3,736만원)

라. 쌀 산업 선진화를 위한 RPC 규모화 사업 추진

- ('91~'94까지) 146개소 → ('95~'01년까지) 182개 RPC 추가 설치
 - * RPC 공급 과잉에 따라 '02년부터 지원 중단
- '95~'04년까지 639개 건조·저장시설 설치비 지원(총사업비 3,216억 원)

마. 민간 유통 능력을 높이기 위해 양정제도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

- 양정 수매제도를 개선('96년)하여 품종별 별도 보관
- 정부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도 도입('05년)
- 쌀 소득 보전 직불제도 도입('05) : 고정직불금 + 변동직불금 지급
<'02년부터 양에서 질 위주의 고품질 쌀 생산·유통시책으로 전환>

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품종 개발 보급 확대

- 품종 개발 보급 : ('95년 이전) 48개 품종 → ('04) 141(누계)
 - 복합 내병성 품종 : ('95년 이전 20개 품종 → ('04) 68(누계)
 - 고품질 품종 : ('95년 이전) 12개 품종 → ('04) 43(누계)

사. 고품질 품종 재배 확대 및 품종 단일화

- 고품질 품종 재배 비율 확대 : ('01) 43% → ('04) 95%
- 고품질 품종 추천제도 도입 : ('02) 23품종 → ('04) 18품종
- 품질이 떨어지는 밭벼 재배 감축 추진 ('01) 27천ha →('04) 17.6
-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쌀 생산조정제 및 논 콩 재배제도 도입

아. RPC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평가제 도입('04년)

- 매년 RPC에 대한 경영평가를 의무화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지원 (운영자금, 시설비 등) 차등화
- RPC 경영평가를 통해 자율적인 통폐합 및 부족한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 규모화 촉진

자.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각종 행사 추진

- UN이 정한 『'04 세계 쌀의 해』 행사를 통한 쌀의 중요성 인식제고
- 국제행사 2회(기념식, 심포지엄) 및 지자체 등 주관 주관행사 58회
- 브랜드 쌀에 대하여 소비자 단체와 연대하여 품질평가 실시
- 유통 중인 브랜드 쌀을 연중 4회 평가하여 우수브랜드 쌀 선정('03 ~ '04년)

제2절 우리 쌀의 품질수준 및 문제점

1. 그동안 재배 관행을 개선하고 가공·유통 단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였지만, 외관·식미 등에서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재배단계에서 적지 적 품종 선택, 재배관리 표준화, 질소비료 감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정착되지 못한 단계임
2. 직파재배지에서 잡초, 이형주, 앵미 등 발생으로 수량 및 미질 저하
 - 부분경운직파 등 파종방법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재배기술정립은 미흡

3. 수확시기의 집중화 또는 조기·만기 수확으로 인한 품질 저하

- 수확기 콤바인작업 경합으로 수확지연에 의한 동할미 증가
 - 완전미율 감소에 따른 시장성 저하 ⇒ 숙기별 재배품종 안배필요

4. 건조·저장·도정 및 유통관리 등 수확 후 관리 인프라 구축 미흡

- RPC는 과잉이나 미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조·저장시설(DSC)은 부족
- 고품질 쌀 생산·가공 기반시설(색채선별기, 입형분리기 등) 부족

5. 포장재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불일치로 소비자 신뢰도저하

- 일부 외포장에 표시된 등급(예 : 특품)과 실제품질이 다른 경우가 있는 실정
 - 도정도, 싸라기, 이물 등에서 규격치를 상회함에도“특품”으로 표시하여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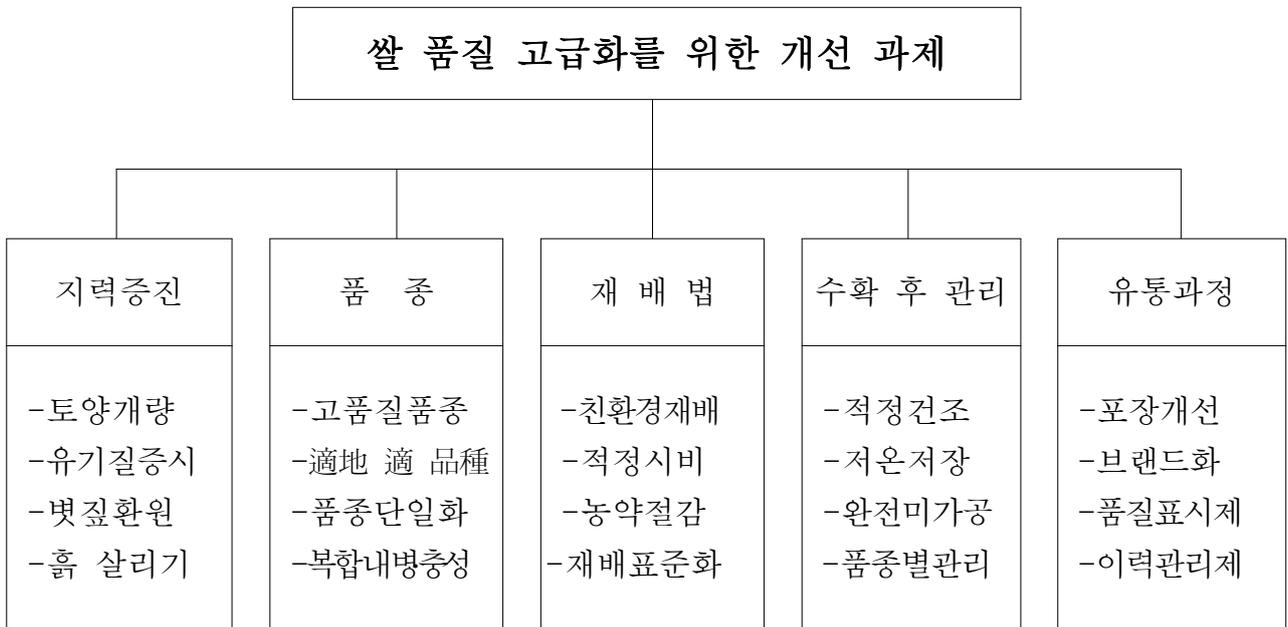
6. 우리 쌀의 품질 우수성 인식 및 쌀 소비촉진 홍보미흡

-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간편식 등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미흡
 - 정부, 농협, 유통업체,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공동 참여
- ⇒ 앞으로 지력증진, 품종갱신, 재배기술, RPC 수확 후 관리 시스템구축, 유통체계 등 종합적인 쌀 품질고급화 보완 대책 필요
- <고급 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장 여건·수요 형성이 급선무>

7. 우리 쌀의 품질고급화를 위한 과제

- 지력증진관련 : 토양개량, 유기질비료증시, 벼짚의 토양환원, 흙 살리기 지속추진
- 품종관련 : 고품질품종선택, 適地 適 品種선택, 품종단일화유지, 복합 내병·내충성
- 재배법관련 : 친환경재배확대, 적정시비이행, 농약절감실행, 재배 표준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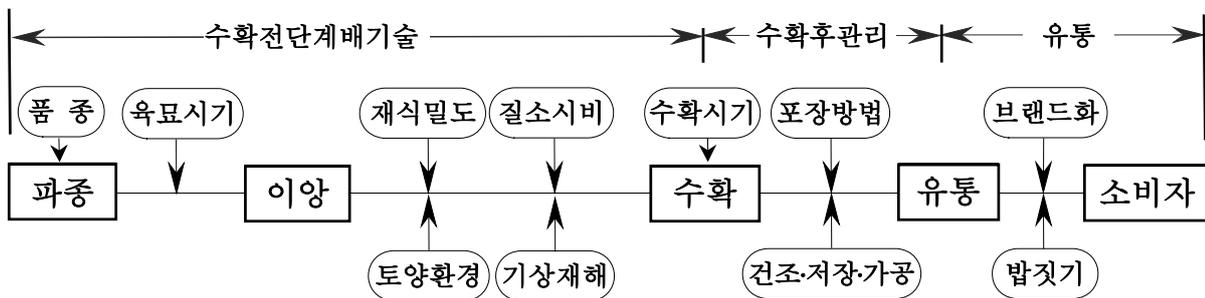
[그림1]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개선 과제



☞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핵심 추진체로 육성하여 생산·유통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개선

□ **미질과 밥맛**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확 전 생산단계에서는 품종, 기상, 作期, 재배법 및 수확시기, 수확 후 유통단계에서는 건조, 가공, 저장 및 취사방법이 중요

[그림2] 수확단계별 체계도



* 수확 전 단계의 영향이 수확후단계보다 크고, 수확 전 단계에서 품종, 시비가 중요

제 3장 쌀 표시인증제 추진

1. 쌀 표시인증제의 필요성

- 값싸고 양질인 중국산 쌀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
 - 중국 동북3성에서 생산되는 쌀은 우리 쌀에 손색이 없음
- 2005년도 쌀 협상비준안의 국회통과로 국내산 쌀의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해 미국·중국·호주·태국 등 9개 국가와 협상
 - 2005~2014년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MMA물량을 매년 늘리고, 2005년도 도입량 225,575톤의 10%인 2만 2,557톤을 밥쌀 용으로 판매키로 합의
- 우리농가는 다수확품종선택 및 재배기술적용으로 품질경쟁력 미흡
 - 질소비료의 과다 시용 추세 : 표준(11kg)보다 많은 18~20kg을 사용
- RPC의 고품질 쌀 생산노력 미흡
 - 고온급속 건조, 품종 간 연산 간 혼합가공, 제품정선시설가동 소홀 등 RPC의 쌀 가공담당자들의 생산기술 미흡
- 현재 쌀 브랜드는 대부분 개별브랜드이며, 브랜드 간에 차별화가 이루어 지지 않아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편
 - '06년 3월말 현재 쌀 브랜드는 총 1,873개이며 이중 개별브랜드가 1,787개로 전체의 96%를 차지(※ 품질인증 및 상표가 등록 된 브랜드는 883개로 전체브랜드의 41%를 차지)
 - 브랜드 경영체의 브랜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천전략이 미흡
 - 고품질 품종위주 계약재배,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공동브랜드화 추진 미흡 등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972년7월1일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품질인증제를 실시해 오고 있으나 이의 제도는 그 동안 표준규격출하제와 유사한 면이 있었고 현재는 품질규격도 양곡관리법의 규정을 적용받음에 따라 품질 면에서 외국산과의 경쟁저하 우려.
- 뿐만 아니라 품질인증제도는 2008년도부터 현행GAP제도와 통합 운영됨에 따라 폐지될 계획임
- 따라서 민간검정기관을 설립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영입, 품질·포장·표시·중량 등에서 완벽한 인증을 실시토록 함으로서 현재 난립되고 있는 쌀 브랜드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함과 아울러 물밑듯 밀려오는 외국산 쌀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2. 쌀 표시인증제의 개념

- 표시인증제 실시근거 : 양곡관리법 등에 법적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
- 표시인증 주체 : 민간 쌀 검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이의 기관이 소정의 기준 및 규정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
- 품질·포장·표시 등 :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적용
- 표시인증 주요체계 : 벼 계약재배 (품종, 비배관리) ⇒ 품종별 구분수매 (벼 품질평가 병행) ⇒ 수매 벼의 저온관리 점진적 추진 ⇒ RPC시설을 이용한 완전미 가공 ⇒ 철저한 쌀 품질평가 및 제품관리 ⇒ 검정마크표시 및 출하 (생산,가공,유통이력 등 바코드화) ⇒ 사후관리 실시 (이상제품 리콜)

⇒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쌀을 생산하는 제도

3. 표시인증 쌀의 특성

가. 외관특성

- 쌀의 외관은 모양, 크기, 심·복백, 투명도, 윤기 등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특성으로 상품성을 판단하는데 큰 영향

나. 식미특성

- 모양, 선택, 윤기, 찰기, 질감, 향기 등이 관여하며 밥맛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짐

다. 이화학적 특성

- 중요한 요소는 아밀로스과 단백질 함량임.
- 아밀로스과 단백질 함량은 낮을수록 밥이 부드럽고 탄력이 있으며, 품종 > 연산 > 토양 > 생산지 > 수확시기 순으로 영향을 받음

라. 안전적 특성

- 농약, 비료 등 농자재의 적정수준사용 또는 친환경재배를 한 것으로서 안전성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쌀

마. 기타 특성

- 당해 연도의 쌀로서 쌀알이 맑고 균일하며 심복백이 없고 밥맛이 우수한 쌀
- 투명하고 윤기가 나며 고유의 향기가 있는 쌀
- 낱알이 충실하고 싸라기, 금간 쌀, 이물질 등이 없는 쌀
- 영양 가치와 안전성이 높은 쌀
- 표시가 확실하고 이상품은 추적관리가 가능하며 리콜이 확실한 쌀

4. 표시인증 쌀 생산기준(안)

가. 품질규격

[표2] 표시인증 쌀 기준

구 분		요 건	비 고
외형적 요인	형질	기준품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형질, 도정도, 충실도는 표준품을 작성하여 적용 한다.
	도정도	기준품	
	충실도	기준품	
	피해립	0.0% 이하	
	분상질·심백립	1.0% 이하	
	착색립	0.0% 이하	
	싸라기	1.0% 이하	
	이물	0.0% 이하	
	이종곡립	없는 것	
	돌	없는 것	
	뉘	없는 것	
내적 요인	수분	16.0%이하 15%이상	
	단백질	7.0%이하	
	아밀로스	18.0% ~ 20.0이하	

☞ 【조건 1】

(1) 다음의 것은 완전미가 될 수 없다.

- ① 생산연도와 품종이 혼합된 것
- ②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것
- ③ 열풍건조온도가 45℃를 초과한 것
- ④ 계약재배생산품이 아닌 것

【정의】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비율을 말한다.

(2) 수분 : 105℃ 건조로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수분을 말한다.

- (3) 피해립 : 오염 또는 손상된 낱알(병해립, 충해립, 반점립, 흑점립, 생리장해립, 등)의 반점의 직경이 1mm이상인 것을 말한다.
- (4) 분상질립 : 사미, 복백, 심백 등의 분상상태를 말하며, 심백미는 체적의 3분의1 이상을 말한다.
- (5) 싸라기 : 1.70mm 그물체로 쳐서 체 위에 남은 것 중 부러졌거나 깨진 낱알로서 완전립 평균 입장 크기 5분의 4 미만의 쌀알을 말한다.
- (6) 돌 : 돌, 콘크리트 조각 등 광물성의 고형물질을 말한다.
- (7) 이종곡립 : 쌀 외의 다른 곡립과 찹쌀을 말한다.
- (8) 이물 : 1.70mm 그물체로 쳐서 체 위에 남은 곡립 외의 것과 체를 통과한 것(잔싸라기, 미강, 돌, 풀씨, 기타 광물성 고형물질 등)을 말한다.
- (9) 단백질 : 켈달(Kjeldhal) 질소정량법으로 측량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단백질 신속측정기를 보조방법으로 측정한 단백질을 말한다.
- (10) 아밀로스 : 쌀을 1.0mm로 분쇄하여 브라벤다 아밀로 그래프를 사용하여 건물 40g 분말에 증류수 450ml를 가하고 30℃에서 93℃까지 일정속도(1.5℃/분)로 가열하여 93℃에서 10분간 유지, 30℃까지 가열과 같은 모양으로 냉각시켜 측량한 아밀로스를 말한다.

나. 포장기준

(1) 포장 재질

- 겉포장 : 지대, 폴리에틸렌 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골판지상자, 플라스틱 상자 등
- 속포장 : 지대, 폴리에틸렌 대(PE대) 등

(2) 겉포장

[표3] 거래단위별 포장규격

거래단위	종 류	외 치수(mm)		
		길이	너비	높이
10kg	골판지(속포장용)	293	220	215
10kg	PP, PE대(구봉식, 접착식, 산물용)	590	370	-
10kg	지대(산물용)	550	300	75(절입)
20kg	골판지(속포장용)	458	320	200
20kg	PP대(구봉식, 산물용)	690	450	-
20kg	지대(산물용)	650	420	75(절입)

(3) 속 포장(300g, 500g, 1Kg~5Kg 등) : 거래 당사자 합의에 따른다.

(4) 포장재 색깔 : 노란색

다. 표시사항

품목, 산지, 연산, 품종, 등급, 무게, 성분함량, 생산자 또는 단체명칭, 전화번호

라. 표시기준

(1) 산지는 재배지역 시·군명을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읍·면 명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생산연도는 수확연도를 표시한다.

마. 품질관리실 기자재 등 비치기준

[표4] 시설기자재 비치 기준

시설기자재	규격	단위	수량
품질관리실(전기,수도포함)	건평2평이상	실	1
KSA5101표준체(방안체)	1.4, 1.7mm, Pan & Cover	조	1
U/V 분광광도기	메카시스	대	1
감정대	40cm×100cm	대	1
감정접시	4각	개	20
감정접시	원형	개	20
곡온계(철케이스 포함)		개	1
도정도 감정기구	1회 4점이상 동시처리(10홀)	조	1
소형저울(디지털)	외산 0.01g-810g	대	1
소형저울(수동식)	국산 0.1g-2610g	대	1
수분측정기	곡물측정용(모툼코 신형)	대	1
시료균분기	대형(보너스식)	대	1
시료균분기	소형(전동식)	대	1
쌀 단백질 분석기	FOSS	대	1
쌀 비파괴 성분분석기	FOSS	대	1
쌀 성분 분석기(ICP)	JONIN YVON	대	1
쌀 신선도판정기(화상판정기)	KET RN 820	대	1
쌀 외관분석기	FOSS	대	1
입형테스타	한눈금 0.02mm이하	대	1
조명등		개	1
체	(6½ : Sieve)	조	1
체	(6호 : Plate)	조	1
확대경		대	1
휴대용간이수분측정기	켓트 라이스타	대	1
합 계	24종류		

〈참고〉

농림부고시 제2005-59호

[표5] 양곡관리법상의 쌀 등급규격 세부기준 (제2조제1항 관련)

등급 \ 항목	최 고 한 도 (%)					
	수분	싸라기	분상질립	피해립	열손립	기타이물
특	16.0	3.0	2.0	1.0	0.0	0.1
상	16.0	7.0	6.0	2.0	0.1	0.3
보통	16.0	20.0	15.0	6.0	0.5	1.0

※ 기타조건

- ① 생산연도가 다른 쌀이 혼합된 경우나 수확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특”이 될 수 없음.
- ② 위의 “특”품 중에서 완전 립 비율이 96.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특” 표시와는 별도로 포장에 □□완전미(Head Rice)□□라고 표시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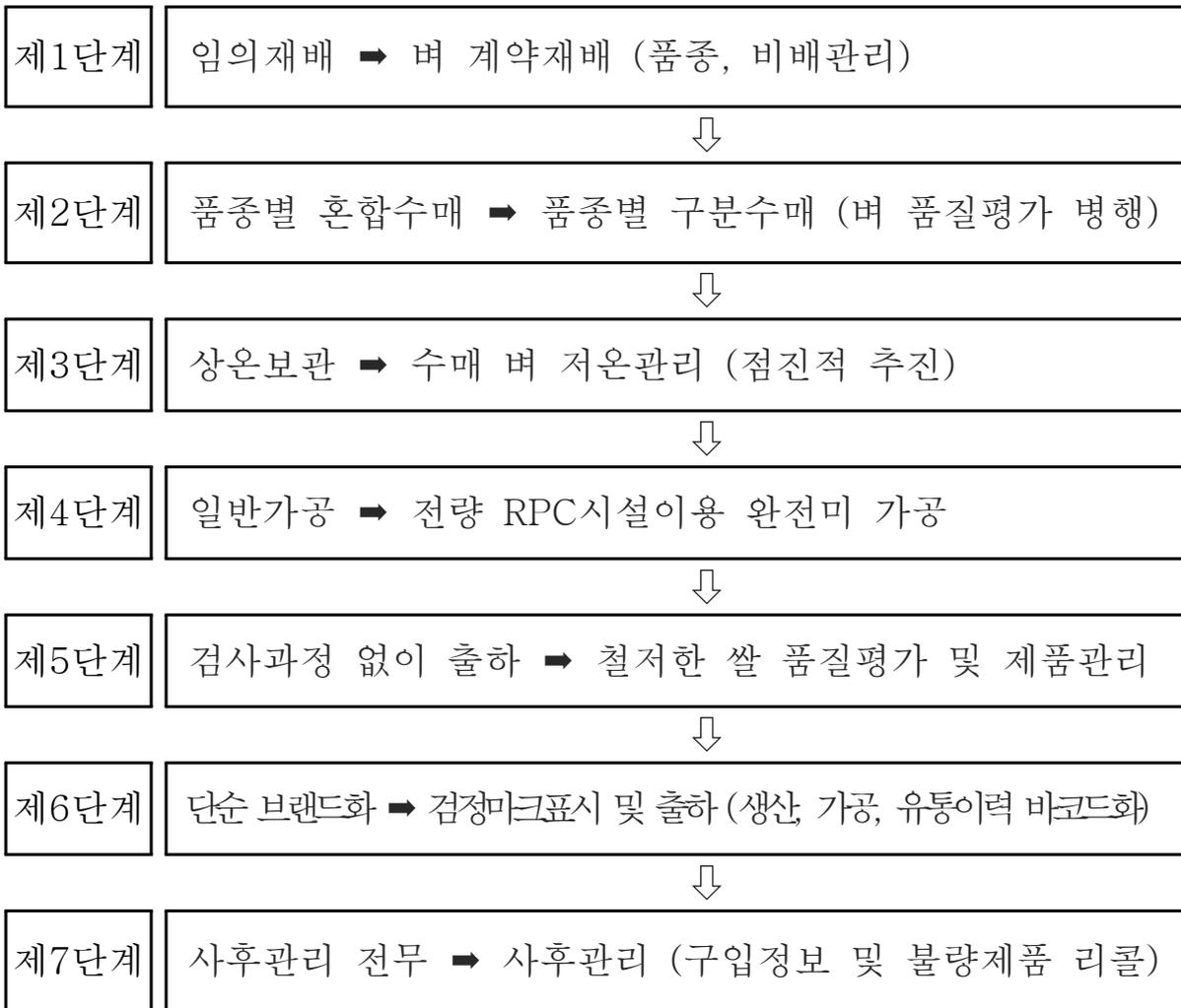
【 용어의 정의 】

- 완전 립 : 쌀의 외관특성상 깨지지 않은 쌀과 깨진 쌀이라도 완전한 낱알 평균길이의 3/4이상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중 분상질 립, 열손 립, 피해립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낱알의 평균길이는 완전한 낱알 15개 이상을 계측하여 산출한다.
-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비율을 말한다.
- 수분 : 105℃ 건조로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함수율을 말한다.
- 싸라기 : KS A 5101 표준체 중 호칭치수 1.7mm 그물체로 쳐서 체 위에 남는 것 중 완전한 낱알 평균길이의 3/4미만의 깨진 낱알을 말한다.
- 분상질 립 : 체적의 1/2이상이 분상질 상태인 낱알을 말한다.
- 피해립: 오염된 립, 병해 립·충해 립·발아 립 생리장해 립, 적조 및 흑조가 낱알 길이의 1/4이상 부착된 립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열손 립 : 열에 의하여 변색 또는 손상된 낱알을 말하며 미립표면적 1/4이상이 주황색(한국 표준색표집 2.5Y8/4기준이상)으로 착색된 것을 말한다. 다만, 착색된 정도가 주황색 기준이하이거나 1/4미만인 것은 피해립으로 적용한다.
- 기타이물 : 쌀 이외의 것과 1.7mm 그물체로 쳐서 통과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돌, 광물질의 고형물은 3반복 조사 합산하여 1개 이내이어야 한다.

5. 국내 쌀 표시인증 방안

가. 쌀 표시인증을 위한 기본체계

[그림3] 단계별 체계도



나. 벼 재배약정농가 선정

- 쌀의 품질이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요인은 벼 재배부터 쌀 생산까지 각 단계별 즉, 농가선정·품종선택·비배관리·적기수확·적정건조·적정보관 관리·적정가공 등 각 과정의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으나 그 첫 관문인 벼 계약재배농가선정이 가장 기본이라 할 것임.
- 따라서 벼 계약재배농가선정기준설정 및 계약재배농가선정을 위한 심사 방법을 아래와 같이 하여 엄선하고 이들로 하여금 벼를 생산하도록 함.

(1) 벼 재배 약정농가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 검정업체의 인증을 희망하는 RPC에서는 참여농가 조사, 벼 재배약정 희망자 신청접수 등 사업 주관별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약정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별표 제1호의 벼 계약재배 농가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적용, 벼 재배대상자를 엄선

(2) 심사기준 항목별 심사결과 적합판정 충족기준

- ① 전체심사항목 중 “양”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어야 한다.
- ② 전체심사항목 중 “미”로 평가되는 항목이 2이하이어야 한다.
- ③ 전체심사항목 중 “수”로 평가되는 항목이 5이상이어야 한다.

(3) 심사방법

- 별도로 심사방법을 정하여 적용

다. 벼 품질평가

1) 등급판정 기준적용

가) 산물(포장) 벼 품위기준

- 국내산 일반 벼 품위기준을 적용

나) 검정방법

- 별도로 벼 품위검정방법을 정하여 적용

라. 수매 벼 보관관리

(1) 건조시설의 청소

- 벼가 투입되기 전에 싸이로, 호퍼 내외와 컨베이어 등을 청소

(2) 훈증소독

- 전년도 병충해 피해발생 싸이로에 대하여는 훈증소독을 실시한 후 벼 투입

(3) 곡온관리

- 매일 오전10시에 측정 기록하되, 휴일이나 곡온이 15℃이하일 때는 생략.

(4) 수분관리

- 건조 벼의 수분은 16%(±0.5)가 유지되도록 관리
- 저장 벼의 평균수분 또는 부위별 수분이 16%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통풍 실시

(5) 결로 대책

- 외기 온도 저하로 싸이로 내부 윗부분에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Rotation 실시(Bin 교체작업)

(6) 병충해 방제

- 곡온이 20℃가 넘을 때는 10일 간격으로 싸이로의 상·중·하단 부위에서 시료 500g정도씩을 채취, 제현 하여 병충해 발생여부를 조사
- 예찰결과 병충해 피해나 징후가 발견될 때는 농관원의 자문을 받아 훈증소독 또는 가공 등 조치.

(7) 통풍 및 Rotation 실시 방법

- 곡온이 20℃를 넘을 경우에는 외기 온도가 곡온보다 낮은 시간에 통풍 또는 Rotation 실시
- 벼 수분이 16%이상일 때는 외기의 상대습도가 83%이하인 상태에서 통풍 실시
- 통풍 및 Rotation 금지의 경우
 - Bin 외부의 온·습도가 Bin 내부 보다 높을 때
 - Bin 내·외의 습도는 같으나 온도차가 노점온도보다 높을 때
 - Bin 내·외의 온도는 같으나 Bin 외부 습도가 곡물의 평형습도보다 높을 때
 - 온도차가 노점온도 이내이고 Bin 외부의 습도가 평형습도 이내가 되더라도 Bin 외부의 절대습도가 Bin 내부보다 높을 때

마. RPC시설이용 가공

(1) 쌀 생산을 위한 RPC선정심사기준

- 사전에 우수RPC를 선정하여 쌀을 생산하여야 하며 그 선정기준은 별표 제2호와 같다.

(2) 심사기준 항목별 심사결과 적합판정 충족기준.

- (가) 전체심사항목 중 “보통”으로 평점이 되는 항목이 2이하이어야 한다.
- (나) 전체심사항목 중 “우수”로 평점이 되는 항목이 5이상이어야 한다.

(3) 심사방법

- 별도로 심사방법을 정하여 적용

(4) 쌀 가공

(가) 원료정선

원료 벼에 섞여 있는 이삭 벼, 설 정조, 돌, 지푸라기, 먼지 등을 제거하는 공정

- 먼지, 소지경 등 가벼운 물질은 풍구나 흡입 선풍기에 의하여 제거
- 지푸라기, 이삭 벼, 큰 돌 등은 흔들 체의 상단 체상에서 제거하고, 모래, 잡초종자 등은 흔들 체의 하단 체하에서 제거
- 흔들 체의 하단 체상에 벼와 함께 남은 돌은 석탈기에 의해 제거
- 설 정조는 제현과정에서 선별이 어려우므로 풍구에 의하여 제거율을 높이도록 조치

(나) 제현공정

- 벼의 왕겨를 벗겨 내는 공정으로 탈부 안된 벼가 혼입 되면 정백과정에서 누 상태로 남거나 도정이 덜된 상태로 혼입되어 쌀의 품위를 떨어지게 함으로 완전 제현
 - 제현기의 고무로-라 간격은 좁게 할수록 탈부 능력은 향상되나 기찰립, 동할립, 현쇄미 및 로-라의 탄소분이 현미에 부착되는 것이 증가하고 동력소비도 많아지므로 벼 알 두께의 1/2정도로 (0.5~1.2mm) 조정하여 1회 탈부율이 75~85%정도 되도록 함

- 제현기를 통과한 현미 와 미탈부 된 벼는 만석과 현미분리기를 통하여 분리
- 현미분리공정에서 남은 벼는 되돌림 시켜 다시 탈부하고 완전 현미는 입선별기(중선만석)에 의해 설미, 현쇄미 및 기타 이물 등을 선별시킨 후 현미탱크에 이송

(다) 현백공정

현백공정은 현미의 강층을 조금씩 박리 제거하여 내부 전분층을 노출시키는 작용으로서 현미날알이 고르게 도정되면서도 싸라기와 얼룩 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도정기의 분류 및 선택

- 마찰식 정미기 : 마찰이 도정작용의 근본요인이 되고 로라·금망·분동 저항이 합성된 압력에 의하여 도정
- 연삭식 정미기 : 충격이 도정작용의 요인이 되고 연삭에 의하여 도정반응이 나타남.
- 도정기 선택 : 원료 벼 품위에 따라 마찰식과 연삭식을 적정 배분 하여 양질미 생산과 수율증대 및 전력소비량의 최소화를 도모

◦ 도정기의 조합 및 도정배분

[표6] 연삭식 도정기 1대에 마찰식 도정기 시설 대수별 도정정도 배분율

마찰식대수	1번 기 (연삭 식)	2번 기 (마찰 식)	3번 기 (마찰 식)	4번 기 (마찰 식)	제품목표분도
2 대	30~40%	40%	30~20%	- %	100%
3 대	10~20	40	30	20~10	100

◦ 정미공정의 주의사항

- 과도한 곡은상승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분동저항과 유량조절
- 정미기 중간탱크에는 다음 기에 넘어갈 쌀의 양을 호퍼에 충분히 비축 하여 각 기계별로 유량이 일정하게 되도록 해야 함.

(라) 제품 정선

- 피해립, 유백립, 착색립 및 싸라기 등을 철저히 제거해야 함
- 습식연미기
 - 최종 정미기에서 배출된 쌀의 표면에 소량의 물이 가습된 후 연미기 정백실내에서 미립간의 마찰로 0.2~0.5분도 정도 도정되게 하고
 - 현백공정에서 도정도를 완제품보다 0.2~0.5분도 정도 낮추어 생산되게 한 후 습식연미 과정을 거치도록 함.
- 색채선별
 - 피해립(착색립)과 유백립의 동시선별은 불가능하므로 선별대상에 따라 채널수의 다소를 감안하여 기계의 조작 레벨을 조정
- 싸라기 분리
 - 로타리-시후다 등의 싸라기선별기를 사용하여 싸라기를 제거

(마) 제품포장

- 1, 2, 3, 4, 5, 10, 20kg 등의 중량을 계량한 후 P.E, P.P대, 지대 등으로 포장
- 냉각되지 않은 쌀을 포장할 때에는 열감량(0.149%)을 포함하여 계량

바. 쌀 품질평가

(1) 농산물표시인증신청절차 등 규정

- 별도로 세부규정을 정하여 적용

(2) 쌀 가공공정 입회·확인

- 별도로 세부규정을 정하여 적용

(3) 쌀 완제품 생산과정조사

- 별도로 세부규정을 정하여 적용

사. 이력 추적관리의 표시

생산자의 인적사항 종자, 농약, 비료 등의 내용, 생산지, 생산품목, 출하일, 수량, 가공제품생산 Lot별 번호, 계약내용, 품질관리 기록 등

아. 적격품 검정마크표시 및 출하

(1) 쌀 표시인증 번호부여 방법

- 표시인증기관 지정번호(00) - 시·도별 지정번호(00) - RPC로 지정된 순위의 일련번호(00)를 결합하여 부여한다.

[표7] 도별 표시인증기관 지정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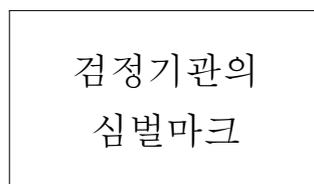
도별 표시인증기관 지정번호			
경기도지사(01)	강원도지사(02)	충청북도지사(03)	충청남도지사(04)
전라북도지사(05)	전라남도지사(06)	경상북도지사(07)	경상남도지사(08)
제주도지사(09)			

[표8] 시·도별 지정번호

시·도별 지정번호			
서울특별시(01)	부산광역시(02)	대구광역시(03)	인천광역시(04)
광주광역시(05)	대전광역시(06)	울산광역시(07)	경기도 (10)
강원도 (11)	충청북도 (12)	충청남도 (13)	전라북도 (14)
전라남도 (15)	경상북도 (16)	경상남도 (17)	제주도 (18)

예) 경남도지사에서 부산소재B라는 RPC에서 첫 번째로 표시인증을 받은 경우 08-02-01이 됨

[그림4] 표시인증 표지도표



제4장 민간검정기관 설립방안

제1절 민간검정기관 설립의 필요성

- 현재 MMA 수입쌀 선적지검정업무를 외국검정회사에 위탁, 검정하고 있는 것을 국내 농산물전문검정업체를 육성하여 MMA 수입쌀 선적지 검정을 담당케 함으로써 외화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양질의 MMA수입쌀 확보가능
- 농산물품질평가전문 인력확보로 컨설팅 역할담당 및 품질이 떨어지는 민수용 농산물도입에 따른 분쟁해결 가능
- 구매자가 직접 검사하고 있는 RPC 산물 벼 및 보리검사를 담당케 함으로써 농산물검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농산물 품질향상 촉진을 도모하고 · 농협 등 RPC수매 검사원의 인건비 절약으로 경영 성과거양.
- 날로 늘어나는 고품질· 안전성 등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충족시켜 주어야할 것은 물론, 무차별 도입되는 외국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 확보

제2절 민간검정기관 설립형태

- 농산물검정업무는 기본적으로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사단법인(공익사단법인 포함)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음
- 영리사단법인은 상법상 회사를 말하며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의 형태가 있으며 자본에 대한 이윤추구가 목적임
- 비영리사단법인은 공공의 목적 또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모인 단체이므로 이윤추구와는 거리가 있음
- 농산물검정업무 또한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익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여겨짐

- 다만, 수익성이 없는 공익적 성격을 지니는 업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수출·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정·분석·조사 등 사업을 통한 이익금으로 운영의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정부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짐.
- 따라서 아래의 법인종류별 특성을 고려할 때 농산물에 대한 민간검정기관의 설립연구는 특별법에 근거한 공익재단법인을 토대로 진행하기로 하며 참고로 법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1. 사단법인

- 사단법인은 근거 법에 따라 민법상의 사단법인, 상법상의 사단법인 곧 상사회사(商事會社), 기타 특별법상의 사단법인 등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 영리목적에 따라 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보통은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
- 민법상의 영리사단법인에 대하여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學術), 종교(宗教), 자선(慈善), 기예(技藝), 사교(社交),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그러나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사단법인은 2명 이상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 정관의 작성은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이다.
- 그 성질은 합동행위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부가 의사의 흠결(欠缺)이나 하자(瑕疵)로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다른 의사표시의 효력에 당연히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 주무관청의 허가여부는 자유재량행위로 본다.

- 설립등기는 사단법인의 성립요건이며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 사단법인의 권리능력이 발생한다.
- 사단법인의 기관으로는
 -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총회, 대표,
 - 집행기관으로서 이사,
 - 감사기관으로서의 감사 등이 있다.
- 이 중 사원총회와 이사는 필수기관이지만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 사단법인은 그 구성원인 사원이 존재하므로 사원총회를 통하여 단체의사를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사원이 존재하지 않는 재단법인이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되어 타율적으로 활동하는 것과 크게 다르다.
- 그러므로 사단법인은 사원총회를 필수기관으로 하며, 정관변경이 자유롭고 사원이 없게 되는 때는 해산사유가 되며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이 인정되지만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관변경이 엄격하고 사원이 없게 되는 때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이 있을 수 없다.
- 상법은 사원의 책임의 형태에 따라 회사를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고 그 밖의 회사는 인정하지 아니 한다

가. 주식회사

- 주식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간접책임을 부담하는 사원, 즉 주주만으로 성립하는 회사이다.
- 주주는 간접·유한책임이라는 데 비추어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참가하나 업무 집행에는 당연히 참여하지 못한다.
- 또 주식양도는 원칙으로 자유이고 사원의 개성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사원의 수가 많고 대자본이 필요한 대기업에 적합하다.

나. 유한회사

-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의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만으로 성립하는 회사이다.
- 중소기업에 적합하도록 주식회사의 복잡한 조직을 간단하게 하여 합명회사와 같은 점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다르다.
- 따라서 이것은 중소기업의 경영에 적합한 회사이다.

다. 합명회사

-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부담하고 원칙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그 지위를 타인에게 자유로이 이전할 수 없는 회사이다.
- 따라서 사원의 회사에 대한 관계가 깊고, 인적(人的)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인의 공동기업에 적합하다.

라. 합자회사

- 합명회사와 같은 무한책임사원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자원으로 성립되는 二元的조직의 회사이다.
- 무한책임사원은 기업경영을 담당하나,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 그러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모두 직접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사원은 인적(人的)으로 결합되어 있고 사원수가 적다.
- 법률상 회사는 위의 4가지이나 사원인 개인과 회사기업과의 관계가 밀접한가 희박한가에 따라 관계가 밀접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인적회사(人的會社)라 한다.
- 관계가 희박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물적 회사(物的會社)라 한다.

2. 재단법인(특수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법인과 대비된다.
- 목적재산을 그 출연(出捐)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주체적 조직으로서 신탁제도와 그 기능을 같이한다.
- 민법상 재단법인은 학술·종교·자선(慈善)·기예(技藝)·사교(社交)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주로 공익(公益)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한하지 않고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예 : 고아원 ·양로원 등)·의료법인·향교재단법인 등이 있다.
- 설립자가 설립행위(일정한 재산출연과 정관작성)를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설립자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에,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법인에 귀속된다.
-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목적의 범위 내라 함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범위 내라고 넓게 해석하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 재단법인의 법률행위는 대표기관인 이사가 하고 그 법률효과가 법인에 귀속하는 것이나 목적의 범위 외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아니며 이사 개인의 행위가 된다.
- 실재설에 의하면 불법행위능력도 가진다.

-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총회가 없고 대표기관인 이사가 유일한 필수기관이다.
- 재단법인의 모든 의사결정과 법률행위는 이사가 하고 대내적 업무집행권과 대외적 대표권을 모두 이사가 가진다.
- 감사(監事)는 필수기관이 아니고 임의기관이다.
-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 그리고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불능, 설립허가의 취소 등에 의하여 해산한다.
- 해산하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경우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며 청산이 완료되어 청산종료의 등기를 함으로써 소멸한다.

제3절 민간검정기관설립의 법적근거

1. 양곡관리법의 현행 체제

- 제 1장 총칙(제1조 제2조)
목적과 정의

- 제 2장 양곡의 관리(제3조~제25조)

 - 제3조 (정부양곡의 수급관리)

 - 제10조 공공비축미의 비축운용

 - 제11조 양곡의 수출입

 - 제20조의2 생산년도, 품질 등의 표시

 - 제22조 미곡 유통업의 육성

- 제 3장 보칙(제26조~제29조)

 - 용자 및 보조

- 제 4장 벌칙(제30조 ~제36조)

 - 벌금 및 과태료 등

- 따라서 현행법으로는 민간 검정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기존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여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2. 민간검정기관설립 근거마련

- 법인설립에 관한 법률(민법)에 의하면 관련법(양곡관리법 등)의 규정 없이는 법인의 설립이 불가능 함.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따라서 기존의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신설조항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제 0 0 조 (재단법인 한국곡물검정소)

- ① 미곡의 생산 및 품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곡물검정소(이하 곡물검정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곡물검정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곡물검정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농림부장관은 검사·검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0 0 조 (업무범위) 곡물검정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농산물의 검사·검정 사업
2. 농산물의 생산유통 사업
3. 농산물의 품질관리 사업
4. 교육, 연구, 홍보 등
5. 농산물의 검사·검정기술의 개발
6. 제1호 내지 3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7. 곡물검정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기타 곡물검정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0 0 조 (감독)

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절 민간검정기관설립 운영

[제1안]

☞ 쌀 검사·표시인증, MMA쌀 검정(2종류)을 전담하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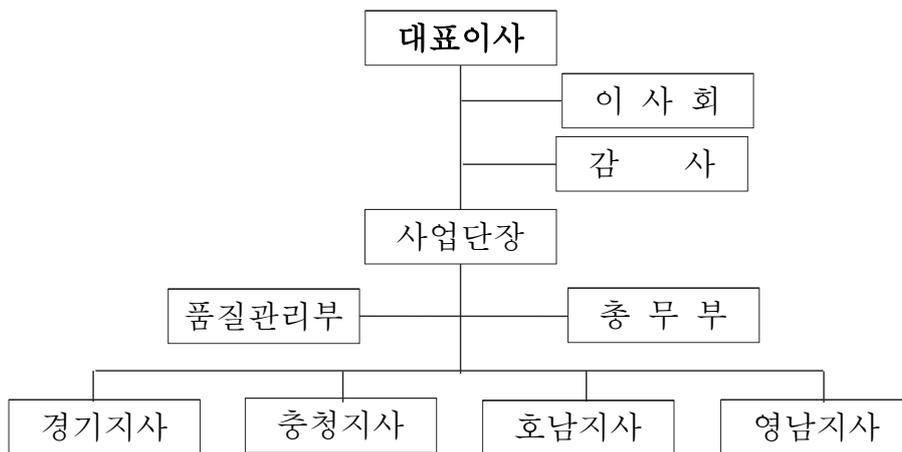
- 본(안)은 쌀 표시인증에 있어서는 RPC가 생산자와 계약재배 하여 수매한 벼에 대하여 곡물검정소가 이를 저장·관리·가공(완전미 생산 전 과정 포함)·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방안임.

다만 MMA쌀 검정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의거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등 각 분야별로 소정의 자격소지자(검수사 : 1급지 10-50인 이상, 2급지 3인 이상, 3급지 2인 이상, 감정 및 검량사 : 각 6인 이상)를 확보하고 항만청에 등록을 필하여야 함 .

따라서 (가칭)곡물검정소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자격을 취득하게 하거나 자격이 있는 자를 영입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

1. 민간검정기관의 조직체계

[그림5] 검정기관의 조직 체계도



2. 소요인력

가. 총괄

[표9] 소요인력 총괄표

(단위 : 명)

구 분	중앙단위	시·도 지사(支社)단위	합 계
관리자	5	4	9
실무인력	11	65	76
합계	16	69	85

※ MMA쌀 및 RPC 산물검정업무와 관련한 임시일용잡급 인부인원은 제외.

◦ 관리자

- 중앙단위 : 대표, 감사실장, 사업단장, 총무, 품질, 등 부서 간부
- 시·도 지사단위 : 지사장

- 실무인력 : 인사, 총무, 예산편성 및 집행, 일반관리, 검정 등 실무 담당자

나. 중앙 및 지역지사별 소요인력

[표10] 세부 소요인력

(단위 : 명)

구 분	중앙단위	시·도 지사(支社)단위	합 계
중앙	16	-	16
경기지사	-	19	19
충청지사	-	10	10
호남지사	-	20	20
영남지사	-	20	20
합계	16	69	85

다. 단위기관별·업무별 소요인력

[표11] 업무별 세부 소요인력

(단위 : 명)

구분	관리자	인사, 총무 등 업무관리	MMA쌀 검정	쌀 표시 인증	합계
중앙	5	4	4	3	16
경기지사	1	3	9	6	19
충청지사	1	3	-	6	10
호남지사	1	3	10	6	20
영남지사	1	3	10	6	20
합계	9	16	33	27	85

라. 세부 소요인력 검토(사업 관련)

(1) MMA 쌀 검정

<04년 MMA쌀을 기준, 1일8시간 년240일 근무기준>

□ 소요인력 : 33명(예상)

◦ MMA 쌀 입찰견본 계측(국별, 등급별, 곡종별, 업체별 제시견본)

- 산출식 : 8시간 × 500건 / 8시간 / 240일 = 2.1명

◦ MMA 쌀 선적지검정

- 산출식 : 307,000톤/1일(8시간)50톤/ 240일 = 25.6명

◦ MMA 쌀 착항검정

- 산출식

· 미국산 : 86,000톤/1일(8시간)400톤/ 240일 = 0.9명

· 태국산 : 46,000톤/1일(8시간)300톤/ 240일 = 0.6명

· 중국산 : 175,000톤/1일(8시간)200톤/ 240일 = 3.6명

(2) 쌀 검사·표시인증

<RPC 33개소(전체RPC의 10%)에 대하여 표시인증, 1일8시간 년 240일 근무기준>

□ 소요인력 : 27명(예상)

◦ 완전미 표시인증

- 산출식 : 8시간×6,000건(33개소 연간 총 표시인증건수)/8시간/ 240일 =25명

◦ 시판품조사

- 산출식 : 4시간 × 900건(총 6,000건의15%) / 8시간/ 240일 =1.9명

(3) 기타 행정관리부서 요원배치

□ 소요인력 : 25명(예상)

◦ 관리자 및 간부 : 9명(중앙5, 지사 4)

◦ 일반 행정 직 : 16명(중앙4, 지사12)

3. 관할구역

- 가. 경기도지사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전역
- 나. 충청지사 :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역
- 다.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전역
- 라. 영남지사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역

4. 업무범위

- 가. 쌀 검사·표시인증
- 나. MMA쌀 검정
- 다. 쌀 사후관리
- 라. 교육, 연구, 홍보
- 마. 쌀 표시인증·검정기술의 개발
- 바. “가”호 내지 “다”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 사. 곡물검정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아. 기타 곡물검정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 업무담당 계획

가. MMA 쌀 선적지검정

(1) 현황

- '93년 UR 협상결과에 따라 출범된 WTO협정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95년부터 '04년까지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
 - 관세(T.E)에 의한 수입은 종전과 같이 제한이 가능
 - MMA 물량기준은 '88~90년의 평균 식용쌀 수요량 5,131천톤을 기준으로 '95년 1%에서 2004년에는 4%를 도입

[표12] '95~'04 MMA 쌀 수입량

(단위 : 천톤)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쌀	51	64	77	90	103	103	128	154	180	205
(현미)	57	71	86	100	114	114	143	171	200	228

- '05년 쌀 협상결과 관세화를 10년간 유예하는 대신 '14년까지 매년 수입증량
- 쌀 수입은 국영무역 형태로 정부가 직접수입·관리하고 있으며 농림부 요청에 의하여 조달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구매
- '05 MMA 가공용 수입추진
 - '05 MMA 가공용 수입쌀은 225,575톤(현미기준/백미 203,018)이며 곡종은 단립종 136,245톤, 중립종 56,306, 장립종 33,024톤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계약 체결
- 이외 소비자시판용 물량(22,557톤)은 백미 형태로 별도 수입·비축·공매
- 수입쌀의 안전성 확보와 품위유지를 위해 지금까지 수출국 현지에서 해외검정공사(OMIC)를 통하여 선적전 제3자 검정을 실시
 - 잔류농약검사, 품위검사를 실시하며 이에 대한 지도·자문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검사원을 현지에 파견
- 국내법에 의한 식품검사(잔류농약검사 등), 식물검역(병·해충검사), 농관원검사(품위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품만 인수
- 품위 규격은 미국 농무성의 현미 검사규격(3등급의 열손립은 2립/500g)의 1등과 3등 규격을 적용

(2) 업무량 발생예상

[표12] '05년 이후 쌀 수입계획

(단위 : 톤, 백미 기준)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총물량(a)	225,575	245,922	266,270	286,617	306,964	327,311	347,658	368,006	388,353	408,700
시판용 물량(b)	22,557	34,429	47,928	63,055	79,810	98,193	104,297	110,401	116,505	122,610
비율(b/a)	10 %	14	18	22	26	30	30	30	30	30

<주> ① 가공용 쌀 : 총 물량(a) - 소비자 시판용 물량(b),

② 2005년도 수입계획물량은 2006년도에 인수

(3) 업무범위

- 수입쌀의 선적지 검정
- 수입쌀의 착항지 검정

(4) 선적지에서의 업무수행방법

- 원료 벼에 대한 품위점검 및 가공방법 지도
- 구매규격 및 입찰시 제시한 견본과의 일치 여부 검사
- 중량 및 수량 검사
- 포장 및 포장재 상태, 표시사항, 중금속 함유 여부 확인
- 농산물의 농약 및 중금속 잔류에 대한 분석
- 배의 수주(건조) 연도 및 상태 확인
- 배의 청소 상태 및 선창 내 파렛트, 방수매트 설치 확인
- 공적(空積) : 해치와 현미bag과의 간격 2m이상) 및 화물창 덮개 수압 확인
- 검역대상의 잡초 함유여부 확인, 선적감독 등

(가) 검정방법 및 검정기준

1) 검정방법

- 견본검정방법은 농관원의 수출입 농산물검사실시 요령(농관원 고시 제 2000-8호, 2005.5.20)또는 구매규격에 따라 실시

2) 수입현미 검정기준

◦ 구매규격

- 미국 농무성 현미 수출규격을 적용(단, 3등급의 열손립은 2립/500g)

(5) 착항지에서의 업무수행방법

(가) 검정기준 및 검정방법

1) 검정 사전대비

- 가) 적정검정 인력확보
- 나) 검정용 기자재 사전 점검·보완
- 다)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 검사신청서 접수

- 가) 조달청장·농유평사장(관할 지방지청장·지사장)으로부터 검정신청을 받아 검정에 임함.
- 나) 검사신청을 받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선적도(Stowage plan) 사본 등의 관계서류를 함께 받아 검정에 참고.

3) 외항에서 품위 파악

- 가) 승선 검정원 편성
- 나) 준비물 : 손전등, 색대, 감정접시, 시료봉투
- 다) 승선검정원의 임무
 - 검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후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도입현미의 품위 및 입하량을 사전에 파악.

4) 검정원 배치 및 임무

- 가) Sample 채취 요원
 - 임 무
 - 대표적인 Sample 채취
 - 소집단 구분 편성
 - 하역물량을 파악하여 소집단의 크기를 결정
- 나) 중량검정 요원

- 임무

- ▷ 상차 과정 포장검정 및 품위검정 요원

- 포장재 평균단량 측정
- 포장검사

- ▷ 차량단위 중량검정 요원

- 조달청·농유공관계관, 반출(입항)지 시·도 양곡관리관, 운송업체 관계자가 입회

다) 품위계측 요원

- 임무

- ▷ 계측요원

- 샘플채취 요원이 소집단별로 채취한 시료를 품위검정 순서 및 방법에 따라 해당 항목별 품위를 감정
- 계측과정에서 한 항목이라도 구매계약규격에 미달 될 때 “규격미달”로 판정
- 계측결과 구매규격 대비 “규격미달”로 판정한 모선에 대하여는 공급자와 검정회사의 이의를 대비한 자료를 완벽하게 대비

- ▷ 계측반장

- 계측요원이 검정한 계측결과를 재검토
- 계측항목별로 감정한 샘플을 재확인
- 계측야장 및 계측치를 재검토

5) 품위검정 시 주요 확인사항

가) 품위실태 확인(흡습, 발열, 결로 피해발생 여부 등)

- 곰팡이 특유의 냄새 유무를 확인
- 곡온상승 유무 및 포장표면의 얼룩유무를 확인
- 검사 전 입항농산물의 상황 파악 때와 샘플채취 시 중점 확인

나) 열손립 감정

- 완전 도정한 쌀 500g으로 계측
- 도정에 의하여 제거되지 않는 속까지 현저히 착색된 열손립과 일반 피해립과 구분하여 정밀 감정

다) 분상질립 계측

- 미숙립으로서 명확히 분상질립으로 판정하기 애매한 낱알은 세로 또는 가로로 절단하여 체적의 1/2이상이 분상질인 낱알만 분상질립으로 계상

라) 국내산 현미와 수입현미의 감정 상 착안해야 할 사항(계약규격 참조)

- 마) US 1, 3등급에는 합당하나 입찰시 제시견본과 비교(색택, 형질, 냄새, 기찰 등)하여 상당한 차이가 나면 “규격미달”로 처리

6) 감정결과 판정 등

가) 감정결과 판정

감정기관장은 수입현미 감정 업무를 총괄하며, 감정 자는 소집단별 품위 계측치와 소집단의 수량을 기초로 하여 전 항목별로 모선의 품위 가중 평균치를 산출, 규격치와 대비하여 모선단위로 규격 합치 여부를 판정

나) 중량 산출

중량감정을 완료한 후 총 차량의 실중량을 합산하여 그 모선의 실중량으로 확정하고, 상차한 총 대수로 나누어 1대의 평균 실중량으로 삼는다.

7) 보고 및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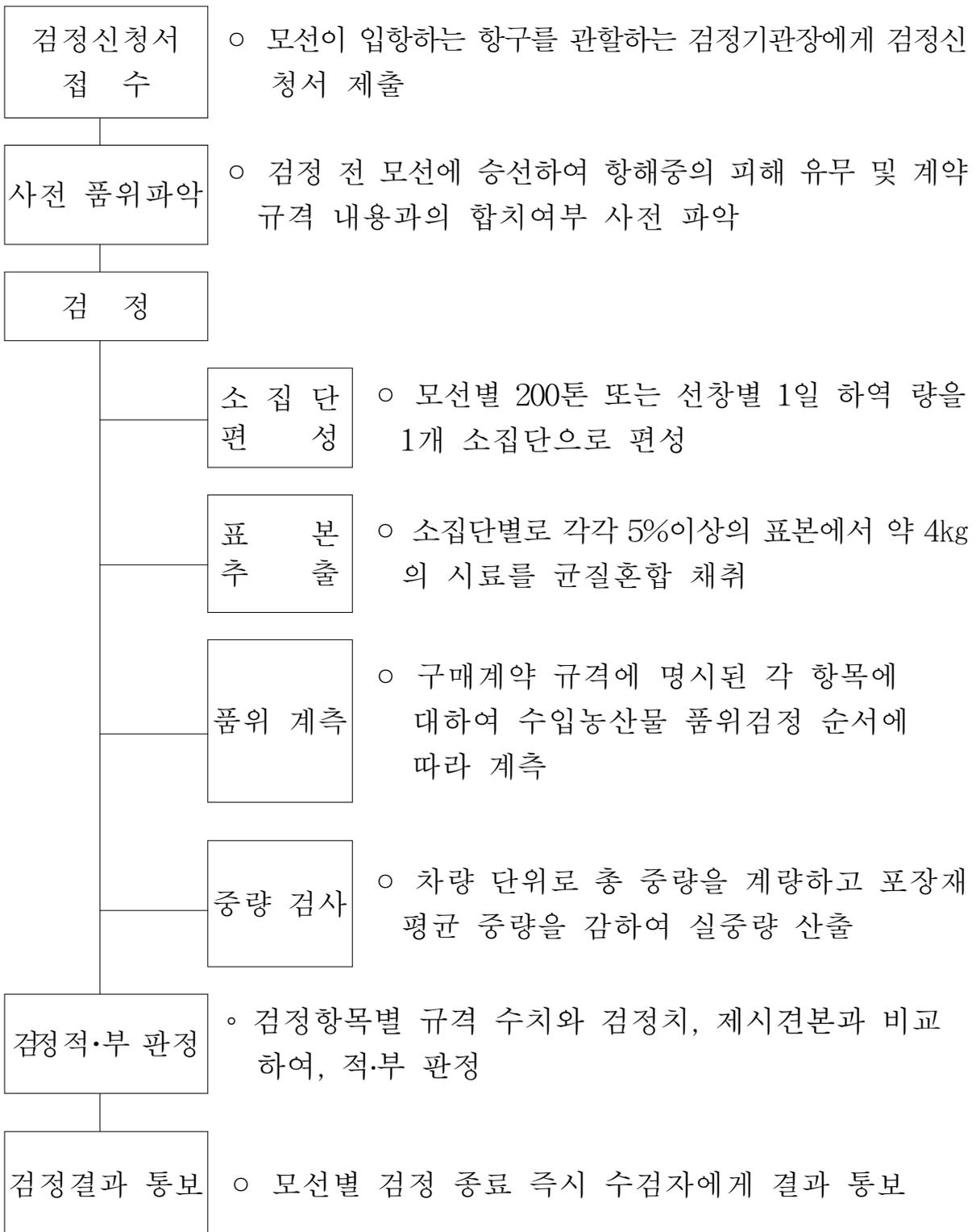
가) 수입현미 입항실태 보고

나) 사고품 발생시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즉시보고

다) 감정진척도 및 상황은 일일보고, 특이사항 발생시는 즉시 전화보고

8) 감정결과 계통보고 및 수검기관에 감정결과 통보

[그림6] MMA 수입쌀 착항검정 체계



6. 품질관리실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

[표14] 단위 사무실(중앙 및 지사)별 검정실 설치 및 기자재 비치기준

시설기자재	규격	단위	수량
품질관리실(전기,수도시설포함)	건평2평이상	실	1
KSA5101표준체(방안체)	1.4, 1.7mm, Pan & Cover	조	1
U/V 분광광도기	메카시스	대	1
감정대	40cm×100cm	대	1
감정접시	4각	개	20(개당 900원)
감정접시	원형	개	20(개당1000원)
곡온계(철 케이스 포함)		개	1
도정도 감정기구	1회 4점이상 동시처리(10홀)	조	1
소형저울(디지털)	외산 0.01g-810g	대	1
소형저울(수동식)	국산 0.1g-2610g	대	1
수분측정기	곡물측정용(모뚱코 신형)	대	1
시료균분기	대형(보너스식)	대	1
시료균분기	소형(전동식)	대	1
쌀 단백질 분석기	FOSS	대	1
쌀 비파괴 성분(수분, 단백질, 지방산도, 아밀로스)분석기	FOSS	대	1
쌀 성분 분석기(ICP)	JONIN YVON	대	1
쌀 신선도 판정기(화상판정기)	KET RN 820	대	1
쌀 외관분석기	FOSS	대	1
입형테스타	한눈금 0.02mm이하	대	1
조명등		개	1
체	(6½ : Sieve)	조	1
체	(6호 : Plate)	조	1
확대경		대	1
휴대용간이수분측정기	켓트 라이스타	대	1
합계	24종류		

나. 쌀 검사·표시 인증

(1) 쌀 가공공정 입회·확인

(가) 품위확인

- 포장작업을 시작하기 직전과 포장작업 도중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중량확인

- 다음과 같이 실시하되 계량 및 포장상태를 수시 확인한다.
 - 시료채취 : 매 30분마다 3대 이상

(2) 완제품 생산과정조사

(가) 조사항목

- 1) 제품수량, 2) 포장, 3) 중량, 4) 품위

(나) 생산과정조사

- 1) Lot 편성은 품종별, 산연별, 단량별, 포장자재별, 등급별로 더미를 쌓아야 한다.
- 2) 표시인증을 받고자 하는 RPC는 당해 쌀의 표시인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인원과 기자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 생산과정조사 방법

1) 완제품수량 등 확인

- 적재상태와 포장상태 등을 확인한 후 품종별 실 생산수량(대)을 확인한다.

2) 중량·품위·포장·표시 등에 대한 조사

- 품종별·가공일자별·단량별로 조사한다.

3) 포장 및 각종표시

- 포장자재·포장방법·표시상태 등을 달관 적으로 점검한 후 이상 품이 발견되면 정밀조사 한다.

4) 중량

가) 표본추출

- 다음 기준에 따라 무작위 추출하며 중량 부족품 혼입우려 또는 필요시에는 추출량을 증가한다.

- 40kg이상 포장품 : 점검대상 수량의 2%이상
- 40kg미만 포장품 : 1,000대 미만은 10대 이상, 1,000대~3,000대
미만은 1%이상, 3,000대 이상은 30대 이상

나) 계량방법

- 포장재의 무게가 균일한 것은 총 중량에서 포장재의 평균무게를 감하여 실 중량을 계량하고 포장재의 무게가 불균일한 것은 해장하여 실 중량을 계량한다.

다만, 외포장재로 포장한 것은 내 포장 단위별로 중량을 계량한다.

5) 품위

- 달관점검 및 항목별 점검 순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하되 위격품 혼입 우려 또는 필요시에는 그 추출량을 증가하여 점검한다.

가) 달관점검

- 계통추출 간색(看色)하여 품위를 달관 점검함으로써 도정도 등 전체품위를 파악한다.

- 40kg이상 포장품 : 점검대상 수량의 10%이상
- 40kg미만 포장품 : 1,000대 미만은 10대 이상, 1,000대~3,000대
미만은 1%이상, 3,000대 이상은 30대 이상

(3) 적격품 검정마크표시 및 출하

(가) 쌀 표시인증 번호부여

- 표시인증기관 지정번호(00) - 시·도별 지정번호(00) - RPC로 지정된 순위의 일련번호(00)를 결합하여 부여.

[표15] 도별 표시인증기관 지정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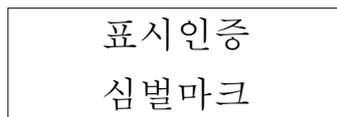
표시인증기관 지정번호				비고
경기도지사(01)	강원도지사(02)	충청북도지사(03)	충청남도지사(04)	
전라북도지사(05)	전라남도지사(06)	경상북도지사(07)	경상남도지사(08)	
제주도지사(09)				

[표16] 시·도별 지정번호

시·도별 지정번호				비고
서울특별시(01)	부산광역시(02)	대구광역시(03)	인천광역시(04)	
광주광역시(05)	대전광역시(06)	울산광역시(07)	경기도 (10)	
강원도 (11)	충청북도 (12)	충청남도 (13)	전라북도 (14)	
전라남도 (15)	경상북도 (16)	경상남도 (17)	제주도 (18)	

예) 경남지사에서 부산의 B라는 RPC에서 첫 번째로 표시인증을 받은 경우08-02-01

[그림7] 표시인증 표지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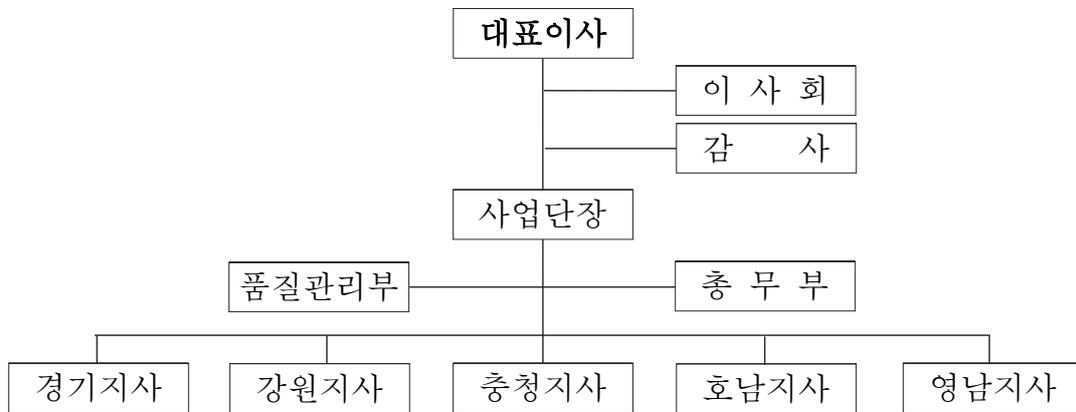
- ⇒ RPC에서 자체 수매한 원료 벼를 대상으로 하여 우선 표시인증제를 실시한 후
- ① 벼 재배약정농가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
 - 벼 재배 심사신청, 수수료, 심사, 시료채취 방법, 심사대상, 심사결과판정, 약정농가유효기간, 표시사항, 표시방법, 생산과정조사, 시료수거분석 등
 - ② 쌀 생산을 위한 RPC선정도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 생산자자질 및 가공시설 운영능력, 대외 유명도, 대외신용도, 생산 자재 및 시설, 생산기술 수준, 자체품질관리 수준 등

[제2안]

☞ 쌀 검사·표시인증, MMA쌀 검정, 친환경인증(3종류)업무를 전담하는 방안

- 본(안)의 쌀 표시인증방법은 제1안과 동일
- 친환경인증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승인을 받은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검토

1. 민간검정기관의 조직체계



2. 소요인력

가. 총괄

[표17] 소요인력 총괄표

(단위 : 명)

구분	중앙단위	시·도 지사(支社)단위	합계
관리자	5	5	10
실무인력	14	97	111
합계	19	102	121

※ MMA쌀 검정업무와 관련한 임시일용잡급 인부인원은 제외.

- 관리자
 - 중앙단위 : 제1안과 동일.
 - 시·도 지사단위 : 강원지사신설로 제1안에 비하여 관리자 1명 증가
- 실무인력 : 강원지사 신설 및 업무추가로 인력증가(35명)

나. 중앙 및 지역지사별 소요인력

[표18] 세부 소요인력

(단위 : 명)

구분	중앙단위	시·도 지사(支社)단위	합계
중앙	19	-	19
경기지사	-	25	25
강원지사	-	11	11
충청지사	-	16	16
호남지사	-	25	25
영남지사	-	25	25
합계	19	102	121

다. 단위기관별·업무별 소요인력

[표19] 업무별 세부 소요인력

(단위 : 명)

구분	관리자	인사,총무 등 업무관리	MMA쌀 검정	쌀 표시 인증	친환경인증	계
중앙	5	4	4	3	3	19
경기지사	1	3	9	6	6	25
강원지사	1	2	2	-	6	11
충청지사	1	3	-	6	6	16
호남지사	1	3	9	6	6	25
영남지사	1	3	9	6	6	25
합계	10	18	33	27	33	121

라. 업무별 세부 소요인력 산출결과

(1) MMA 쌀 검정

- 제1안과 동일

(2) 쌀 검사·표시인증

- 제1안과 동일

(3) 친환경 인증

< 1,000건 인증 및 1일 8시간 년240일 근무기준 >

□ 소요인력 : 33명(예상)

- 친환경인증 심사 및 인증

- 산출식 : $50\text{시간} \times 1,000\text{건} / 8\text{시간} / 240\text{일} = 26.1\text{명}$

- 인증농가 사후관리

- 산출식 : $7\text{시간} \times 1,000\text{건} / 8\text{시간} / 240\text{일} = 3.6\text{명}$

- 시판품조사

- 산출식 : $3\text{시간} \times 1,000\text{건} / 8\text{시간} / 240\text{일} = 1.6\text{명}$

- 친환경인증 컨설팅

- 산출식 : $3\text{시간} \times 1,000\text{건} / 8\text{시간} / 240\text{일} = 1.6\text{명}$

(4) 기타 행정관리부서 요원배치

□ 소요인력 : 28명(예상)

- 관리자 및 간부 : 10명(중앙5, 지사5)

- 일반 행정 직 : 18명(중앙4, 지사14)

3. 관할구역

가. 경기지사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

나. 강원지사 : 강원도 전역

다. 충청지사 : 제1안과 같음

라. 호남지사 : 제1안과 같음

마. 영남지사 : 제1안과 같음

4. 업무범위

- 제1안과 동일
- 다만 친환경인증업무를 추가

5. 업무담당계획

가. MMA 쌀 선적지검정

- 제1안과 동일

나. 쌀 검사·표시 인증

- 제1안과 동일

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1) 현황

- 관련법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및 제17조의2
 - 제17조 :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 제17조의2 : 인증기관의 지정
- 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기관 : 흙살림 등 21개 기관

[표20] 연도별 친환경인증실적

(단위/톤)

연도별	종류별	유기	전환기	무 농약	저 농약	계
2005	곡 류	8,022	8,783	34,050	42,799	93,654
	과실류	1,480	2,575	12,417	272,046	288,518
	채소류	26,634	16,268	115,876	167,242	326,020
	서 류	1,479	1,847	7,226	5,099	15,651
	특작류	387	519	72,254	402	73,562
	기 타	56	41	245	0	342
	계		38,058	30,033	242,068	487,588

2004	곡 류	3,032	3,769	27,788	11,391	45,980
	과실류	786	1,695	6,138	142,455	151,074
	채소류	18,505	6,571	73,835	100,248	199,159
	서 류	840	1,216	6,247	2,814	11,117
	특작류	14	4	9,468	13	9,499
	기 타	269	45	43,557	35	43,906
	계	23,446	13,300	167,033	256,956	460,735
2003	곡 류	3,211	3,665	15,262	7,395	29,533
	과실류	583	1,178	3,865	114,569	120,195
	채소류	19,845	3,639	64,916	86,114	174,514
	서 류	1,314	322	2,926	3,306	7,868
	특작류	389	45	33,193	173	33,800
	기 타			196	1	197
	계	25,342	8,849	120,358	211,558	366,107

◦ 업무내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림부장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유기, 전환기, 무 농약농산물 등)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 인증에 적합한 재배농가 및 농산물에 대해 인증을 실시

(2) 업무발생 예상량

[표21] 친환경업무발생 예상량(2005년도 기준/ 톤)

종류별	유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합계
곡 류	8,000	9,000	34,000	43,000	94,000
과실류	2,000	3,000	12,000	272,000	289,000
채소류	27,000	16,000	116,000	167,000	326,000
서 류	2,000	2,000	7,000	5,000	16,000
특작류	1,000	1,000	72,000	1,000	75,000
합계	40,000	31,000	241,000	488,000	800,000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친환경농산물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후 농관원에 인증기관신청을 하여 승인을 득할 경우 친환경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가능.

(3) 친환경인증기관의 업무범위

- 유기농립산물, 전환기유기농립산물, 무 농약농산물, 저 농약농산물

(4) 업무수행 방법

- ① 토양검정·농업용수 및 잔류농약분석 등은 전문시험연구기관과 제휴하여 시행
- ② 친환경인증 절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인증 절차를 준용
- ③ 농산물의 종류별 인증수준을 설정하여 시행
(예시)
 - 유기 및 전환기농립산물 인증 : 엽채류 및 근채류, 곡류(쌀, 보리), 두류 등
 - 무 농약농산물 인증 : 과채류
 - 저 농약농산물 인증 : 과실류 및 과채류 일부
- ④ 인증농가의 사후관리를 위한 인증농가의 농약안전사용요령 교육 등 인증농가에 대한 친환경인증 컨설팅업무 병행
- ⑤ KOLAS(韓國矯正試驗技官認定機構: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인증 취득, 생산이력제 및 리콜제 도입, 홍보 등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6. 품질관리실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

- 제1안과 동일

[제3안]

☞ 쌀 검사·표시인증, MMA쌀 검정, 친환경인증, RPC산물검정, 쌀 브랜드평가(품종 및 식미평가 포함)업무를 전담하는 방안

- 본(안)은 쌀 표시인증에 있어서는 1안~2안과는 달리 곡물검정소가 생산자·품종·포장을 사전에 엄선하고 재배표준화에 의한 비배관리, 수확·저장·관리가공·사후관리 등 표시인증 쌀 생산 전 과정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방안임.
- 친환경인증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본사 정밀분석실에서 안전성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

1. 민간검정기관의 조직체계

- 제 2안과 동일함

2. 소요인력

가. 총괄

[표22] 소요인력 총괄표

(단위 : 명)

구 분	중앙단위	시·도 지사(支社)단위	합 계
관리자	5	5	10
실무인력	24	140	164
합계	29	145	174

※ MMA쌀 검정업무와 관련한 임시일용잡급 인부인원은 제외.

◦ 관리자

- 중앙단위 : 제 2안과 동일.
- 시·도 지사단위 : 제 2안과 동일.

② 실무인력 : RPC산물검정 및 쌀 브랜드 평가업무(품종 및 식미평가 업무 포함) 추가로 제2안에 비해 실무인력 53명 증가 (중앙단위10, 시·도지사단위43)

나. 중앙 및 지역지사별 소요인력

[표23] 세부 소요인력

(단위 : 명)

구 분	중앙단위	시·도 지사(支社)단위	합 계
중앙	29	-	29
경기지사	-	34	34
강원지사	-	11	11
충청지사	-	26	26
호남지사	-	37	37
영남지사	-	37	37
합계	29	145	174

다. 단위기관별·업무별 소요인력

[표24] 업무별 세부 소요인력

(단위 : 명)

구분	관리자	인사총무등 업무관리	MMA 쌀검정	쌀 표시 인증	친환경 인증	RPC 산물검정	쌀브랜드 평가	합계
중앙	5	4	4	3	5	3	5	29
경기지사	1	3	9	6	6	3	6	34
강원지사	1	2	2	-	6	-	-	11
충청지사	1	3	-	6	6	4	6	26
호남지사	1	3	9	6	6	6	6	37
영남지사	1	3	9	6	6	6	6	37
합계	10	18	33	27	35	22	29	174

라. 업무별 세부 소요인력 산출결과

(1) MMA 쌀 검정

- 제2안과 동일

(2) 쌀 검사·표시인증

- 제2안과 동일

(3) 친환경 인증

< 1,000건 인증 및 1일 8시간 년240일 근무기준 >

□ 소요인력 : 35명(예상)

- 친환경인증 심사 및 인증 : (제2안과 동일)26.1명
- 인증농가 사후관리 : (제2안과 동일) 3.6명
- 시판품조사 : (제2안과 동일) 1.6명
- 친환경인증 컨설팅 : (제2안과 동일) 1.6명
- 안전성 분석

- 산출식 : 3시간 × 1,000건/ 8시간 /240일 = 1.6명

(4) RPC 산물검정

<RPC, 위성시설, DSC에 대하여 1일8시간 년240일 근무기준>

□ 소요인력 : 22명(예상)

<RPC, 위성시설, DSC에 대하여 1일8시간 년240일 근무기준>

- 산물 벼 검정

- 4시간 × 287개소 × 30일 / 8시간 / 240일 = 17.9명

- 산물 보리 검정

- 2시간 × 287개소 × 15일 / 8시간 / 240일 = 4.5명

(5) 쌀 브랜드 평가

<정부 및 민간 브랜드 쌀 1,000점 평가, 1일 8시간 240일 근무기준>

□ 소요인력 : 29명(예상)

- 품질평가표본선정을 위한 현지출동·중량 및 표시검토·시료추출 등

- 산출식 : 4시간 × 1,000점 / 8시간 / 240일 = 2.1명

- 품위계측을 위한 시료균분 등 전처리

- 산출식 : 4시간 × 1,000점 × 3반복 / 8시간 / 240일 = 6.3명

- 품위계측

- 산출식 : 8시간 × 1,000점 × 3반복 / 8시간 / 240일 = 12.5명

- 도정도 등 관능검정

- 산출식 : 3시간 × 1,000점 × 3반복 / 8시간 / 240일 = 4.7명

- 품종감정 및 식미평가

- 산출식 : 1,000점 / 10점 × 4일 / 240일 = 1.7명

- 자료정리, 평가보고서작성 등

- 산출식 : 3시간 × 1,000점 / 8시간 / 240일 = 1.6명

(6) 기타 행정관리부서 요원배치

- 제2안과 동일

3. 관할구역

- 제2안과 동일

4. 업무범위

- 제1안 및 제2안과 동일

- 다만 RPC산물검정 및 쌀 브랜드(품종, 식미평가포함)평가업무를 추가

5. 업무담당 계획

가. MMA 쌀 선적지검정

- 제2안과 동일

나. 쌀 검사·표시 인증

- 제2안과 동일

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 제2안과 동일

다만 토양농업용수 및 잔류농약분석 등을 곡물검정소 정밀분석실에서 수행
라. RPC 산물 검정

(1) 현황

- 1994 : 농협 RPC(21개소)에서 산물벼 수매실시
- 1999 : 농협 및 민간 RPC에서 산물보리 수매
- 농협, 곡협, 가협 등에서 각 단체에 속하는 산물 벼 및 보리를 스스로 검사하게 되는 모순발생 및 농업인들에 대한 신뢰도 저하
- 농촌인력의 노령화 가속으로 산물수매량은 계속증가예상

[표25] 사업주체별 수매대상 및 참여 RPC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대상 RPC 수					수매 참여 RPC 수				
		계	농협	곡물협	가공협	기타	계	농협	곡물협	가공협	기타
'04	RPC	330	199	74	55	2	318	199	72	47	-
	위성시설	76	49	11	12	4	50	28	11	11	-
	DSC	81	66	3	11	1	73	60	3	10	-
	계	487	314	88	78	7	441	287	86	68	0

- 수매참여 업체는 441개 업체로 '03년도 444개소보다 3개소가 감소
- 대상업체 중 46개업체(RPC 12, 위성 26, DSC 8)는 담보부족, 시설 미완공, 부도 등으로 수매에 참여하지 못함

[표26] 검사주체별 RPC수(2004현재)

검사주체 소속RPC	농관원	지정검사기관별			농관원 퇴직자담당	합계
		농협	곡물협	가공협		
농협	- 개소	266개소	-개소	-개소	21개소	287개소
곡물협	1	-	66	-	19	86
가공협	-	-	-	62	6	68
합계	1	266	66	62	46	441

- 수매규격 개정 및 품종별 제한수매 시행 등으로 검사의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농관원 퇴직자들의 검사장소수가 점진적으로 증가
- 퇴직자 검사장소수 : ('02년) 33개소 → ('03년) 45개소 → ('04년) 46개소

[표27] 연산별·기관별 산물 벼 검사현황

연도별	검사주체 (개소)	참여RPC (개소)	수매 구분	검사계획 량 (톤)	검사실적 (톤)	진 도 (%)	등급 비율 (%)			
							특등	1등	2등	3등 (등외)
'00	농관원 (12)	-	농협차액	10,471	10,471	100.0		90.6	9.1	0.3
	농 협(230)	234	"	314,930	312,296	99.2		88.5	10.6	0.9
	곡물협 (79)	81	"	120,670	119,867	99.3		86.0	13.1	0.9
	가공협 (34)	40	"	50,242	49,656	98.8		86.7	12.1	1.2
	계 (355)	355		496,313	492,290	99.2		87.8	11.3	0.9
'01	농 관 원 (8)	-	농협차액	7,633	7,146	93.6		96.8	3.2	0.0
	농 협(266)	268	"	289,957	273,441	94.3		97.5	2.4	0.1
	곡물협 (71)	73	"	102,761	100,939	98.2		95.2	4.7	0.1
	가공협 (53)	57	"	68,365	65,633	96.0		96.3	3.6	0.1
	계 (398)	398		500,000	447,159	95.4		96.8	3.1	0.1
'02	농 관 원(1)	-	농협차액	548	548	100.0	16.0	69.7	12.2	2.1
	농 협(269)	269	"	246,375	242,357	98.4	12.5	78.3	8.5	0.7
	곡물협 (79)	75	"	87,416	85,542	97.9	9.7	78.2	10.9	1.1
	가공협 (56)	63	"	64,753	64,406	99.5	11.5	78.8	8.9	0.9
	계 (405)	405		400,000	392,853	98.2	11.7	78.4	9.1	0.8
'03	농 관 원(3)	-	농협차액	2,205	1,750	79.4	7.7	78.1	12.9	1.3
	농 협(281)	281	"	229,873	222,293	97.1	12.1	74.8	11.3	1.8
	곡물협 (83)	84	"	88,095	85,446	97.0	11.2	72.6	14.3	2.0
	가공협 (77)	79	"	66,827	66,068	98.9	13.5	75.4	9.9	1.2
	계 (444)	444		387,000	376,557	97.3	12.1	74.4	11.7	1.7
'04	농 관 원(1)	-	농협차액	866	866	100	15.8	79.3	4.9	0.0
	농 협(287)	287	"	193,071	193,071	100	32.8	64.0	3.0	0.2
	곡물협 (85)	86	"	74,366	74,319	99.9	30.6	65.0	4.2	0.2
	가공협 (68)	68	"	51,697	50,824	98.3	30.5	66.0	3.4	0.2
	계 (441)	441		320,000	319,080	99.7	31.9	64.6	3.3	0.2

※ '98년부터 DSC에서도 산물검사 실시(총수량에 포함된 실적임)

- DSC검사실적: ('00)34→ ('01)34→ ('02)→57 ('03)→ 64 ('04)→ 73

[표28] 2005산물 보리 검사현황

(단위 : 톤)

구분	합계	농협	민간	곡종별		
				합계	겉보리	쌀보리
실적	3,684	2,690	994	3,684	89	3,595

(2) 업무량 발생예상

[표29] 벼 산물검정

연도별	주체별 수매예상 (톤)			
	농협	곡협	가공협	합계
2006	157,000	60,000	41,000	258,000
2007	141,000	54,000	37,000	232,000
2008	127,000	49,000	33,000	209,000
2009	114,000	44,000	30,000	188,000
2010	103,000	40,000	27,000	170,000

(주) 2005년도 주체별 수매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10%씩 감소한 물량을 산정

[표30] 보리 산물검정

연도별	주체별 수매예상 (톤)			
	농협	곡협	가공협	합계
2006	2,420	896		3,316
2007	2,180	805		2,985
2008	1,960	727		2,687
2009	1,760	659		2,419
2010	1,580	597		2,177

(주) 2005년도 주체별 수매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10%씩 감소한 물량을 산정

(3) 업무범위

- 정부에서 구매하는 산물 벼 검정
- 농협에서 자체 매입하는 산물수매 벼 검정
- 농협에서 약정 수매하는 산물보리 검정

(4) 업무수행방법

가) 산물 벼 및 보리의 검정 품위기준

- 1) 국내산 일반 벼 품위기준적용
- 2) 국내산 겉보리 및 쌀보리 품위기준 적용

나) 산물 벼·보리의 검정 및 검정결과 처리방법

1) 용어의 정의

- 물벼·물보리 등
 - 벼·보리 등의 수분함량이 인수자가 정한 건조목표 수분치를 초과한 농산물을 말한다.
- 건조 벼·건조 보리 등
 - 벼·보리 등의 수분함량이 인수자가 정한 건조 목표 수분치 이내의 농산물을 말한다.

2) 검정단위

- 출하자별 또는 작목반별, 품종별로 1개 단위를 편성한다.

3) 검정방법

① 품종

- 원료 농산물을 반입할 시에 계약재배약정서 또는 출하일정협약서 등을 참고하고 견본품종과 비교하여 육안식별 확인한다.
- 품종확인 후 품종별로 입고, 건조, 저장하는데 참고한다.

② 수분

- 호퍼스케일에서 벌크방식으로 측정하되 담당검정원은 측정기기의 정확성 여부를 수시 점검한다.
- 벌크방식 수분측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샘플을 채취하여 농산물 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농관원 고시)에 따라 단립식 또는 적외선 수분측정기로 측정할 수 있다.
- 수분을 측정할 때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대리인(이하 “생산자”라 한다)과 인수자가 상호 입회 확인토록 한다.

③ 중량

검정단위별로 원료 정선기를 통과한 농산물을 자동계량기(호퍼스케일)로 계량하되 생산자와 인수자가 상호 입회 확인토록 하고 검사원은 자동계량기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 확인한다.

◦ 산물상태의 건조중량 환산 방법

- 원료농산물의 중량계량치 및 수분측정치를 건조중량 산출식에 대입하여 건조 중량으로 환산 산출한다.

< 건조중량 산출식 >

건조 중량 = 원료 중량×중량지수

$$\text{중량지수} = \frac{100 - \text{당초수분}\%}{100 - \text{건조후의수분}\%}$$

◦ 건조 중량 산출은 자동계량기(호퍼스케일)의 계량중량으로 한다.

다만 자동계량기로 계량이 불가능 할 때에는 판수동저울 또는 지중판저울을 이용하여 중량을 계량할 수 있다.

④ 품위검정

◦ 검사용 시료채취

- 정선 및 계량 후 검정단위 중량의 1,000분의 1 이상의 시료를 자동 시료채취기 등을 이용하여 골고루 채취하되 자동 시료채취 시설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 경시 경량적으로 시료를 채취한다.

◦ 검사시료의 취급

- 채취한 시료는 계측 및 감정방법의 표준시료 축분법으로 축분하여 합성건본 약 1kg을 작성하여 시험용 건조기 등으로 곡종별 수분 규격치 이내로 건조시킨 후 시료로 사용
- 건조시료 약 300g은 품위계측용으로 사용하고, 약 200g은 재심 건본용으로 활용하며 나머지는 밀봉 봉인하여 검정증명서 교부일로부터 10일간 보관한 후 관계자의 이의신청이 없을 때는 인수자에게 반환

- 품위 검사방법
 - 포장품의 품위 검정방법 중 견본의 계측 및 감정방법(수분 항목은 제외)에 의거 검사한 후 등급을 판정
- ⑤ 검정증명서 교부
 - 검정증명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3부 작성하여 담당검정원이 날인(서명)하고 생산자 및 인수자에게 각각 1부씩 교부
- ⑥ 검정부 작성 및 검정견본 처리
 - 검정부
 - 소정의 서식을 사용
 - 검정견본 채취 및 처리

▷ 견본채취

- ① 당일 검정품 중에서 종목별, 등급별로 합성견본 200g(착항 검정 시에는 1,000g)을 채취
- ② 종목별, 등급별로 현저히 품위차가 있을 때에는 상·하품별로 매개 견본을 별도 채취
- ③ 1일 1개 장소 이상을 검정하거나 체재 순회검정 시에는 최종(일) 검정장소의 견본만을 채취
- ④ 점검·확인 시 품위 내용이 균일할 때에는 종류별, 수검자별(생산자별, 공장별), 검정 일자별(생산 및 가공일자별) 등으로 구분 채취하여 확인
- ⑤ 재심업무 수행시에 위격품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적격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상기 ④와 같이 채취하되, 적격품으로 판단될 때에는 견본 채취를 생략
- ⑥ 점검확인 및 재심 시 견본채취로 인하여 유통 상 지장이 있거나 견본을 채취하지 않고서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은 견본채취를 생략

⑦ 상기 ④및⑤의 견본채취량은 업무수행 상 필요한 최소량의 견본을 채취

▷ 견본재심

관할 검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항목의 계측치를 견본봉투의 비고란에 기재하게 하고 제출된 견본을 재심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날인(서명)

▷ 재심결과 조치

- ① 재심결과 부적격검정 견본에 대하여는 관할 검정기관의 장이 현지 확인하여 검정품과 대사
- ② 검정견본과 점검·확인 및 재심업무 수행과정에서 채취한 견본의 부적격 품은 지도·감독요강(금후 별도로 마련)에 의거 감정·처리

▷ 견본보관 및 폐기

- ① 견본은 목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견본봉투에 관련번호를 부여 하고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하여 검정유효기간까지 보관
- ② 상기 ①의 보관기간이 경과한 견본은 폐기

▷ 폐기견본 처리

폐기된 견본은 곡종별, 품위별로 분류하여 폐기처분하고 그 대금은 세입조치

마. 쌀 브랜드 평가

(1) 현황

- 농림부에서 2003년부터 시중유통 쌀에 대한 평가를 매년 3~9월 사이에 실시
 - 평가주관기관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기관단체별로 할당 추천된 총 51개의 브랜드 쌀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
 - 도(농협 및 민간 RPC, 일반 도정공장) : 44개
 - 경기 5, 강원 2, 충북 3, 충남 8, 전북 7, 전남 9, 경북 6, 경남 4
- * 인근 광역시 포함 : 경기(인천), 충남(대전),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 울산)

- 농협중앙회(광역시 소재 농협RPC) : 1개
- 대한곡물협회(전국 회원업체 RPC) : 3개
- RPC 협의회(전국 회원업체 RPC) : 2개
- 양곡가공협회(RPC 부문 회원업체) : 1개
- 시·도 등이 추천한 브랜드 쌀을 평가하여 12개의 우수 브랜드를 선정

(2) 업무내용

- 브랜드추천은 종자산업 법에 의해 국가품종등록이 되어 있는 브랜드로서 1업체당 1개 브랜드로 한정
- 브랜드 쌀 평가를 위한 참여기관별 업무담당영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쌀의 외관상 품위평가
 - 계측항목(11개) : 수분, 착색립, 분상질립, 피해립, 완전립, 싸라기, 누, 협잡물, 돌, 해충, 찹쌀혼입율.
 - 관능감정항목(4개) : 도정도, 투명도, 변색, 이취
 - 한국식품연구원 : 전문패널에 의한 밥의 관능적 품질평가
 - 관능적 품질 : 전반적인 품질 및 향, 외관, 맛, 저작감
 - 특성강도: 윤기, 색, 밥특유의 향, 낱알 표면의 거칠음성, 경도, 탄력성, 응집성, 부착성
 -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 DNA 분석에 의한 품종 혼합비율 판별
 - 포장재에 표시된 품종과 일치여부를 판별하고 품종 혼합비율에 따라 감점
 - ※ 비의도적 혼입비율 인정기준 : (단일품종) 10%, (혼합미) 5%
 - 소비자단체 : 일반 소비자패널(90명내외)에 의한 만족도 평가
 - 맛, 냄새, 겉모양 및 저작감을 종합한 전반적인 기호도를 주관적으로 평가
- 부문별 평가횟수
 - 품위·식미· 품종혼입율은 각각 3회, 소비자만족도는 2회
 - 품위·식미· 품종혼입율은 51개 브랜드 전체에 대하여 평가
 - 소비자만족도는 품위·식미· 품종혼입율 부문 종합점수 12위까지 평가

(3) 검정업체의 역할 및 전망

- 브랜드 쌀 품위평가 참여로 농산물검정업체의 특성을 살리고 농산물 품위평가의 민간자율평가체제 정착도모
- 업무범위 및 업무량
 - 농림부의 브랜드 쌀 평가사업 업무 중 현재 농관원 시험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정도, 피해립, 싸라기, 누, 돌, 해충 등 15개 항목에 대하여 품위평가업무를 수행
 - '06년도 업무량 : 51점 × 3회 평가
- 브랜드 쌀 평가 전망
 -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의 강한 욕구를 감안할 때 민간단체가 소비자들에게 옳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
 - 민간이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경우 2,000여개의 브랜드 중에서 10%정도인 200여개의 브랜드에 대하여 평가가능

(4) 업무 수행방법

- 정부추진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
 - “브랜드 쌀 평가 추진계획” 수립시 쌀 외관평가에 대한 평가업무를 검정업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거마련
 - 품위평가는 현행 평가항목, 배점기준, 평가방법을 적용
 - 계측감정(13개 항목) : 수분, 열손립, 분상질립, 피해립, 완전립, 싸라기, 찹쌀, 누, 헝잡물, 돌, 해충, 품종, 식미
 - 관능감정(4개 항목) : 도정도(시약처리 병행), 투명도, 변색, 이취
- 소비자 인지도 조사와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평가대상을 선정
- 평가결과를 소비자단체에 제공 및 언론발표 등 추진
- 우수 브랜드 전시 및 판매촉진지원
- 우수 브랜드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상설전시추진

6. 품질관리실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

- 제1안과 동일

5절 업무별 예상수입 및 소요액 검토

[제1안]

☞ 안전성분석업무는 outsourcing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검토

1. 수입액

가. 총괄

[표31] 업무별 수입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MMA쌀 검정	쌀 표시인증	합 계
수입('09설립)	1,780	375	2,155

나. 세부내역

(1) MMA 쌀 검정

□ 수수료 등 수입 : ('08) 1,622백만원 ~ ('14) 2,370

◦ 검정물량 및 수수료적용 방침

- 검정물량 : '05년 쌀 협상결과 관세화를 10년간 유예하는 대신에 '14년까지 수입증량계획에 의한 수입확정물량 임
- 수수료 : 2004년도 중국산을 기준<톤당5.8 \$>하여 적용(중국산이 143,000톤으로서 가장 많았음)

[표32] 연도별 MMA쌀 검정수수료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총물량(톤)	225,575	245,922	266,270	286,617	306,964	327,311	347,658	368,006	388,353	408,700
톤당 평균 수수료(원)	-	-	-	5,800	5,800	5,800	5,800	5,800	5,800	5,800
수수료합계 (백만원)	-	-	-	1,662	1,780	1,898	2,016	2,134	2,252	2,370

※ 2004년도 현미 톤당 국가별 검정료 : 미국(5-8\$), 중국(7-9.5\$), 태국(0.5-0.9\$)호주(1.0\$)

(2) 쌀 검사·표시인증

□ 수수료 등 수입 : ('09) 375백만 원 ~ ('13) 2,625

◦ 표시인증물량 및 수수료적용 방침

- 표시인증물량 : 연간 전체수확량 약5백만 톤을 기준으로 처음 표시인증시작 당년도인 2009년도 1%수준인 50천 톤을 표시인증 후 4년째에는 3%인 150천 톤(7,500천대)을 표시인증

- 수수료 : 곡물검정소 설립 당년도인 2009년도에 쌀 20Kg들이 1포대 당 150원을 시작으로 표시인증물량목표150천톤(20Kg들이 7,500천대)이 달성되는 2013년도 350원이 될 때까지 20Kg들이 1포대 당 매년50원씩 인상하는 것을 목표

[표33] 쌀 검사·표시인증 수수료

구분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표시인증 물량 (20Kg들이 포대수량)		25천톤 (1,250천대)	50 (2,500)	75 (3,750)	100 (5,000)	125 (6,250)	150 (7,500)	150 (7,500)
20Kg 1포대당수수료		100원	150	200	250	300	350	350
수수료합계(백만원)		125	375	750	1,250	1,875	2,625	2,625

◦ 따라서 가칭 곡물검정소가 2009년도에 설립된다고 가정할 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시기는 기관설립 2년 후인 2011년도가 될 것으로 예상.

※ 전담업무별 연도별 발생예상 수수료

(단위 : 백만 원)

구분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MMA쌀 검정수수료		1,662	1,780	1,898	2,016	2,134	2,252	2,370
쌀 표시인증 수수료		125	375	750	1,250	1,875	2,625	2,625
계		1,787	2,155	2,648	3,266	4,009	4,877	4,995

※ 장기적으로는 거래가격의 0.5%정도까지 수수료 부담가능

(예) : 표시인증 쌀 20Kg들이의 가격이 80천원이라고 가정할 시 1포대 당 400원 부담

2. 소요액

가. 총괄

[표34] 소요액 총괄표

(단위 : 백만 원)

구분	MMA쌀 검정	쌀 표시인증	사무실운영	합 계
인건비	990	810	858	2,658
여비(국·내외)	315	27		342
자산취득비 (품질관리실, 전산장비)			2,919	2,919
임차료			1,700	1,700
안전성 분석의뢰 등 경상경비	5	10	60	75
합계	1,310	847	5,537	7,694

◦ 검정기관설립 당년도에는 사무실임차, 전산장비 및 사무실집기 등 구입, 품질관리실 장비구입, 최소한의 관리요원사역 등 기초적인 요소를 갖추기 위한 비용 약 77억 원 정도가 소요

◦ 검정기관을 설립한 후에는 인건비와 출장여비가 대부분으로서 약31억 원정도가 소요

※ 검정기관설립당년 이후부터는 자산취득비 및 임차료에 대해서는 계상 불필요

나. 세부내역

(1) MMA 쌀 검정

□ 소요액 : 1,310,000천원(예상)

◦ 급여 : 990,000천원

- 산출식 : 2,500천원(1인당 평균월액)×33명×12월=990,000천원

- 출장여비 등 일반경비 : 315,000천원
 - 산출식
 - 미국 : 3,000천원(7박8일)× 2명× 2개소 = 12,000천원
 - 태국 : 1,500천원(7박8일)× 2명× 2개소 = 6,000천원
 - 중국 : 1,800천원(7박8일)×11명×15개소 = 297,000천원
- 안전성분석의뢰 등 일반경비 : 5,000천원
 - 산출식
 - 100천원×5종×10점 = 5,000천원

(2) 쌀 검사·표시인증

□ 소요액 : 847,000천원(예상)

- 급여 : 810,000천원
 - 산출식 : 2,500천원(1인당 평균월액)×27명×12월 = 810,000천원
- 출장여비 등 일반경비 : 27,000천원
 - 산출식
 - 50천원×20건×27명 = 27,000천원
- 안전성분석의뢰 등 일반경비 : 10,000천원
 - 산출식
 - 100천원×100점 =10,000천원

(3) 농산물 품질관리실 설치운영

<단위 사무실(중앙 및 지사)별 품질관리실 설치 및 기자재 비치기준(1세트)>

□ 소요액 : 1,418,755천원(예상)

- 품질관리실 설치운영 : 1,418,755천원
 - 산출식 : 283,751천원×5개소(본사1, 지사4) =1,418,755천원

[표35] 1개소 당 기자재별 소요액 세부내역

시설기자재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비고
품질관리실(전기,수도포함)	건평2평이상	실	1	30,000	
KSA5101표준체(방안체)	1.4, 1.7mm, Pan & Cover	조	1	80	
U/V 분광광도기	메카시스	대	1	6,270	
감정대	40cm×100cm	대	1	500	
감정접시	4각	개	20(개당900원)	18	
감정접시	원형	개	20(개당1000원)	20	
곡온계(철케이스 포함)		개	1	3	
도정도 감정기구	1회 4점이상 동시처리(10홀)	조	1	90	
소형저울(디지털)	외산 0.01g-810g	대	1	690	
소형저울(수동식)	국산 0.1g-2610g	대	1	100	
수분측정기	곡물측정용(모툼코형)	신대	1	500	
시료균분기	소형(전동식)	대	1	1,600	
시료균분기	대형(보너스식)	대	1	600	
쌀 단백질 분석기	FOSS	대	1	29,500	
쌀 성분 분석기(ICP)	JONIN YVON	대	1	126,000	
쌀 신선도 판정기(화상판정기)	KET RN 820	대	1	6,500	
쌀 외관분석기	FOSS	대	1	40,000	
쌀비과괴성분(수분,단백질,지방산도,아밀로스)분석기	FOSS	대	1	40,000	
입형테스타	한눈금 0.02mm이하	대	1	80	
조명등		개	1	500	
체	(6½ : Sieve)	조	1	200	
체	(6호 : Plate)	조	1	200	
확대경		대	1	120	
휴대용간이수분측정기	켓트 라이스타	대	1	180	
합계	24종류			283,751	

(4) 기타 행정관리부서 요원배치

□ 소요액 : 858,000천원(예상)

◦ 급여 : 858,000천원

- 관리자 및 간부 : 3,500천원(1인당 평균월액)×9명×12월=378,000천원

- 일반직원 : 2,500천원(1인당 평균월액)×16명×12월=480,000천원

(5) 사무실운영

<본사1, 지사4개소 운영>

□ 소요액 : 3,260,000천원(예상)

◦ 사무실 임차 : 1,700,000천원

- 산출식 : 본사 500,000천원+(지사300,000천원×4개소)= 1,700,000천원

◦ 사무실 전산장비 및 집기 등 구입 : 1,500,000천원

- 산출식 : 본사 500,000천원+(지사250,000천원×4개소)= 1,500,000천원

◦ 사무실운영비

-산출식 : 12,000천원/년간×5개소(본사1,지사4) = 60,000천원

[제2안]

☞ 안전성분석업무는 outsourcing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검토

1. 수입액

가. 총괄

[표36] 업무별 수입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MMA쌀 검정	쌀 표시인증	친환경인증	합 계
수입('09설립)	1,780	375	430	2,585

※ 검정기관설립 당년도에 약26억 원의 수입을 예상(본 예상 수입액은 각각의 사업별 신청이 계획대로 이루어 졌을 경우를 가정한 산출결과임)

나. 세부내역

(1) MMA 쌀 검정

- 제1안과 동일

(2) 쌀 검사·표시인증

- 제1안과 동일

(3) 친환경 인증

□ 수입 : ('09) 430백만원 ~ ('14) 438

◦ 인증물량 및 수수료적용

- 인증물량 : 검정기관설립 당년도인 2009년도에 1,000건을 시작으로 매년 50건씩 인증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목표
- 수수료 : 현행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1건 당 30천원)를 그대로 적용
- 심사여비 : 1일 100천원으로 적용

[표37] 친환경 인증 수수료

구분	'08	'09	'10	'11	'12	'13	'14
총물량(점)	950	1,000	1,050	1,100	1,150	1,200	1,250
1점당수수료(천원)	30	30	30	30	30	30	30
1건당심사여비 (100천원×2일×2명)	400	400	400	400	400	400	400
수수료합계 (백만원)	409	430	452	473	495	516	538

- ※ 현행 친환경인증규정에 “인증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인증기관의 운영 실비를 인증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 따라서 가칭 곡물검정소가 2009년도에 설립된다고 가정할 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시기는 기관설립 4년 후인 2013년도가 될 것으로 예상.

※ 전담업무별 연도별 발생예상 수수료

(단위 : 백만 원)

구분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MMA쌀 검정수수료	1,662	1,780	1,898	2,016	2,134	2,252	2,370
쌀 표시인증 수수료	125	375	750	1,250	1,875	2,625	2,625
친환경 인증 수수료	409	430	452	473	495	516	538
계	2,196	2,585	3,100	3,739	4,504	5,393	5,533

2. 소요액

가. 총괄

[표38] 소요액 총괄표

(단위 : 백만 원)

구분	MMA쌀 검정	쌀 표시인증	친환경인증	사무실운영	합계
인건비	990	810	990	960	3,750
여비(국·내외)	315	27	400		742
자산취득비 (전산장비, 품질관리실)				3,452	3,452
임차료				2,000	2,000
안전성 분석의뢰 등 경상경비	5	10	210	72	297
합계	1,310	847	1,600	6,484	10,241

- 검정기관설립 당년도에는 사무실임차, 전산장비 및 사무실집기 등 구입, 품질관리실 장비구입, 최소한의 관리요원사역 등 기초적인 요소를 갖추기 위한 비용 약 102억 원 정도가 소요
- 검정기관을 설립한 후에는 인건비와 출장여비가 대부분으로서 약48억 원정도가 소요

※ 검정기관설립 당년 이후부터는 자산취득비 및 임차료에 대해서는 계상 불필요

나. 세부내역

(1) MMA 쌀 검정

- 제1안과 동일

(2) 쌀 검사·표시인증

- 제1안과 동일

(3) 친환경 인증

□ 소요액 : 1,600,000천원(예상)

- 급여 : 990,000천원

- 산출식 : 2,500천원(1인당 평균월액)×35명×12월 =990,000천원

- 출장여비, 시료구입비 등 일반경상경비 : 410,000천원

- 심사를 위한 여비 : 100천원×2명×2일×1,000 건 =400,000천원

- 사후관리를 위한 시료구입비 : 1,000건×2회×5,000원 = 10,000천원

- 안전성분석의뢰 : 200,000천원

-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의뢰 : 50천원×1,000건×4회 =200,000천원

(4) 농산물 품질관리실 설치운영

<단위 사무실(중앙 및 지사)별 품질관리실 설치 및 기자재 비치기준(1세트)>

□ 소요액 : 1,702,506천원(예상)

- 품질관리실 설치운영 : 1,702,506천원

- 산출식 : 283,751천원×6개소(본사1, 지사5) = 1,702,506천원

(5) 기타 행정관리부서 요원배치

□ 소요액 : 960,000천원(예상)

- 급여 : 960,000천원

- 관리자 및 간부 : 3,500천원(1인당 평균월액)×10명×12월 = 420,000천원

- 일반직원 : 2,500천원(1인당 평균월액)×18명×12월 = 540,000천원

(6) 사무실운영

<본사1, 지사5개소 운영>

□ 소요액 : 3,822,000천원(예상)

◦ 사무실 임차 : 2,000,000천원

- 산출식 : 본사 500,000천원+(지사300,000천원×5개소)=2,000,000천원

◦ 사무실 전산장비 및 집기 등 구입 : 1,750,000천원

- 산출식 : 본사 500,000천원+(지사250,000천원×5개소)=1,750,000천원

◦ 사무실운영비 : 72,000천원

-산출식 : 12,000천원/년간×6개소(본사1,지사5) = 72,000천원

[제3안]

☞ 안전성분석업무는 제1안 및 제2안과는 달리 검정기관이 분석실을 설치,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검토

1. 수입액

가. 총괄

[표39] 업무별 수입 총괄표

(단위 : 백만 원)

구분	MMA쌀 검정	쌀 표시인증	친환경인증	RPC 산물검정	브랜드 쌀 품위평가	합 계
수입 (’09설립)	1,780	375	430	116	50	2,751

※ 검정기관설립 당년도에 약28억 원의 수입을 예상(본 예상 수입액은 각각의 사업별 신청이 계획대로 이루어 졌을 경우를 가정한 산출결과임)

나. 세부내역

(1) MMA 쌀 검정

◦ 제2안과 동일

(2) 쌀 검사·표시인증

◦ 제2안과 동일

(3) 친환경인증

- 제2안과 동일

(4) RPC 산물검정

□ 수수료 등 수입 : ('09) 116백만원 ~('14) 104

- 산물검정물량 및 수수료적용 방침

- 벼 산물검정물량 : 2004년도의 농협수매실적(193천톤)을 토대로 매년 10%씩 감소되는 물량을 기준

- 수수료 : 곡물검정소 설립 당년도인 2009년도에 톤당1,000원을 시작으로 매년 100원씩 상향조정하는 것을 목표

[표40] RPC산물 벼 검정 수수료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총물량(톤)	174,000	157,000	141,000	127,000	114,000	103,000	93,000	84,000	76,000	68,000
톤당수수료 (원)	-	-	-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수수료합계 (백만원)	-	-	-	114	114	113	112	109	106	102

- 보리 산물검정물량 : 2004년도의 수매실적(2,990톤)을 토대로 매년 10%씩 감소되는 물량을 기준

- 수수료 : 곡물검정소 설립 당년도인 2009년도에 톤당1,000원을 시작으로 매년 100원씩 상향조정하는 것을 목표

[표41] RPC산물 보리 검정 수수료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총물량(톤)	2,690	2,420	2,180	1,960	1,760	1,580	1,420	1,280	1,150	1,040
톤당수수료 (원)	-	-	-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수수료합계 (백만원)	-	-	-	2	2	2	2	2	2	2

※ 현행규정상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음.

(5) 브랜드 쌀 품위평가

□ 수수료 등 수입 : ('09) 50백만 원 ~ ('14)100

◦ 브랜드 쌀 평가물량 및 수수료적용 방침

- 평가물량 : 정부 및 민간단체의 연간 브랜드 쌀 품위평가 의뢰건수 1,000점을 평가
- 수수료 : 곡물검정소 설립 당년도인 2009년도에 시료 1점당 50천 원을 시작으로 1점당 100천원이 될 때까지 매년 10천 원씩 상향조정하는 것을 목표

[표42] 브랜드 쌀 평가수수료

구분	'08	'09	'10	'11	'12	'13	'14
총물량(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점당 수수료(천원)	40	50	60	70	80	90	100
수수료합계(백만원)	40	50	60	70	80	90	100

- 가칭 곡물검정소가 2009년도에 설립된다고 가정할 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시기는 기관설립 6~7년 후인 2015~2016년도가 될 것으로 예상.
- 2015~2016년경 자생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곡물검정소가 담당하는 업무 중 특히 표시인증 쌀에 있어 현재는 20Kg들이의 쌀이 주로 유통되고 있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소비자들의 핵가족화 및 식생활패턴이 바뀌어 감에 따라 1, 3, 5, 10Kg 등 소포장화로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검정기관설립 후 6~7년 정도 경과할 시 소포장품유통이 최소한 30~40%정도 증가할 것이므로 표시인증 수수료 또한 증가예상

※ 소포장품 증가(30~40%)에 따른 수수료 변동예상액 : ('13) 2,625백만 원 → ('15~'16) 3,413~3,675

따라서 쌀 표시인증수수료를 제외한 여타 업무의 수수료가 2013년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여도 수수료총액이 70억 원 내외가 될 것이므로 자생력이 생길 것으로 여겨짐.

[표43] 전담업무별 연도별 발생예상 수수료

(단위 : 백만 원)

구분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MMA쌀 검정		1,662	1,780	1,898	2,016	2,134	2,252	2,370
쌀 표시인증		125	375	750	1,250	1,875	2,625	2,625
친환경 인증		409	430	452	473	495	516	538
RPC 산물검정		116	116	115	114	111	108	104
브랜드 쌀 평가		40	50	60	70	80	90	100
계		2,352	2,751	3,275	3,923	4,695	5,591	5,737

2. 소요액

가. 총괄

[표44] 소요액 총괄표

(단위 : 백만 원)

구분	MMA쌀 검정	쌀 표시 인증	친환경 인증	RPC 산물검정	브랜드 쌀 평가	사무실 운영	합 계
인건비	990	810	1,050	1,008	870	960	5,688
여비(국·내외)	315	27	400		6		748
자산취득비						6,364	6,364
임차료						2,000	2,000
안전성분석 등 경상경비			10		27	958	995
합계	1,305	837	1,460	1,008	903	10,282	15,795

- 검정기관설립 당년도에는 사무실임차, 전산장비 및 사무실집기 등 구입, 품질관리실 장비구입, 최소한의 관리요원사역 등 기초적인 요소를 갖추기 위한 비용 약 158억 원 정도가 소요
- 그 이후부터는 인건비와 출장여비가 대부분으로서 약74억 원이 소요
- ※ 검정기관설립당년 이후부터는 자산취득비 및 임차료에 대해서는 계상 불필요

나. 세부내역

(1) MMA 쌀 검정

- 제2안과 동일하나 안전성분석의뢰 비용 제외

(2) 쌀 검사·표시인증

- 제2안과 동일하나 안전성분석의뢰 비용 제외

(3) 친환경 인증

- 제2안과 동일하나 안전성분석의뢰 비용 제외
- 정밀분석실 운영에 따른 증원요원 급여

$$2500\text{천원} \times 35\text{명} \times 12\text{월} = 1,050,000\text{천원}$$

(4) RPC 산물검정

□ 소요액 : 1,008,000천원(예상)

◦ 급여 : 660,000천원

- 산출식 : 2,500천원(1인당 평균월액)×22명×12월= 660,000천원

◦ 일용직고용 인건비 : 348,000천원

- 추곡 : 1일 100천원 × 200개소 × 15일 = 300,000천원

(사업대상 장소와 고용일수를 각각1/2씩을 적용하여 산출)

- 하곡 : 1일 100천원 × 60개소 × 8일 = 48,000천원

(사업대상 장소와 고용일수를 각각1/2씩을 적용하여 산출)

(5) 브랜드 쌀 평가

□ 소요액 : 902,600천원

◦ 급여 : 870,000천원

- 산출식 : 2,500천원(1인당 평균월액)×29명×12월 = 870,000천원

◦ 출장여비 : 5,600천원

- 시료표본추출을 위한 여비 : 70천원×2인×10일×4회= 5,600천원
- 시료구입비 등 일반경상경비 : 27,000천원
- 시료구입비 : 25천원/10Kg × 1,000점 = 25,000천원
- 품질평가를 위한 운영비 : 500천원 × 4회 = 2,000천원
- (6) 농산물 품질관리실 설치운영
 - 제2안과 동일
- (7) 기타 행정관리부서 요원배치
 - 제2안과 동일
- (8) 사무실운영
 - 제2안과 동일
- (9) 안전성분석실 설치운영
 - (가) 본사 정밀분석실 소요 세부장비내역
 - 소요액 : 1,804,569천원(예상)
 - 정밀분석실 설치운영 : 1,804,569천원

[표45] 기기별 소요액 세부내역

기자재명	단가(천원)	소요대수	금액(천원)	비고
AAS(일반)	12,000	1대	12,000	안전성분석장비
AflaScan(Kit)	5,808	1대	5,808	”
AutoPrep(자동)	5,500	1대	5,500	”
CHARM(참테스트)	3,500	1대	3,500	”
GC(일반)	65,000	1대	65,000	”
GC(SPME용)	70,000	1대	70,000	”
GC/MS(일반)	120,000	1대	120,000	”
HPLC(중형일반)	110,000	1대	110,000	”
HPLC(소형일반)	95,000	1대	95,000	”
HPLC(LC/MS용)	150,000	1대	150,000	”
IC(이온크로로)	65,000	1대	65,000	”
ICP/AES(중금속)	140,000	1대	140,000	”

LC/MS(HPLC-용)	100,000	1대	100,000	”
PH측정기)	1,898	1대	1,898	”
Rapid Kit(래피드키트)	14,643	1대	14,643	”
UV/vis(일반)	14,296	1대	14,296	”
가스용기(액체)	4,850	1대	4,850	”
건조기(전기데시케이터)	1,210	2대	2,420	”
건조대(초자기구)	509	2대	1,018	”
계수기(colony counter)	462	1대	462	”
교반기(시험관)	1,834	1대	1,834	”
교반기(자석)	556	1대	556	”
교반기(hot plate/다단)	2,293	1대	2,293	”
균질기(미생물)	3,000	1대	3,000	”
균질기(봉형)	8,657	1대	8,657	”
균질기(컵형)	2,660	1대	2,660	”
난방기(일반)	880	1대	880	”
냉각장치(냉각순환)	11,770	1조	11,770	”
냉난방기(황온항습)	3,472	1대	3,472	”
냉방기(일반)	1,789	2대	3,578	”
냉장고(가정용)	1,200	1대	1,200	”
냉장고(업소용)	1,238	1대	1,238	”
냉장고(초저온)	6,500	2대	13,000	”
냉장고(크로마토그래피)	8,470	1대	8,470	”
농축기(진공회전)	12,000	1대	12,000	”
농축기(질소미세)	2,640	1대	2,640	”
마이크로피펫(single)	1,257	1대	1,257	”
멸균기(고압)	3,740	1대	3,740	”
무균대(clean bench)	3,960	1대	3,960	”
미생물동정장비(자동)	55,000	1대	55,000	”

방사선측정기	5,555	1조	5,555	”
배기함(테이블)	2,913	2대	5,826	”
배기함(Hood)	5,720	1조	5,720	”
배양기(세균/incubator)	5,830	1대	5,830	”
분쇄기(일반)	4,835	2대	9,670	”
분주기(회석분주)	6,930	1대	6,930	”
분해기(Microwave)	26,401	3대	79,203	”
세척기(초음파)	6,380	1대	6,380	”
세척기(초자기구)	8,253	1대	8,253	”
세척기(피펫)	1,870	1대	1,870	”
수은분석기(자동)	22,500	1대	22,500	”
시료봉합기(대장균)	8,638	1대	8,638	”
시약대(일반)	445	2대	890	”
실험대(기타)	1,695	2조	3,390	”
실험대(벽면)	492	10조	4,920	”
실험대(중앙)	3,871	2조	7,742	”
실험대(코너)	284	4조	1,136	”
싱크대(일반)	838	2조	1,676	”
열풍순환건조기(Dry Oven)	2,497	1대	2,497	”
원심분리기(냉장)	1,595	1대	1,595	”
원심분리기(일반)	9,130	1대	9,130	”
저울(Analytical)	916	1대	916	”
저울(Precision)	2,310	2대	4,620	”
적정기(자동)	8,800	1대	8,800	”
전산H/W/PDA	630	1대	630	”
전산H/W/노트북	2,159	1대	2,159	”
전산H/W/디지털복합기	2,929	1대	2,929	”

전산H/W/디지털카메라	980	1대	980	”
전산H/W/바코드리더	250	1대	250	”
전산H/W/바코드프린터	2,500	1대	2,500	”
전산H/W/프린터(레이저/칼라)	1,276	1대	1,276	”
전산H/W/프린터(레이저/흑백)	978	1대	978	”
전산H/W/프린터(잉크젯/칼라)	205	1대	205	”
전산H/W/PC(일반)	1,300	5대	6,500	”
전산H/W/PC(Workstation)	1,300	2대	2,600	”
전원장치(무정전/UPS)	25,000	1대	25,000	”
전원장치(전압조정/AVR)	2,640	1대	2,640	”
절단기(시료)	2,785	1대	2,785	”
제조기(순간온수)	300	1대	300	”
제조기(압축공기)	11,589	1조	11,589	”
제조기(증류수)	4,400	1대	4,400	”
제조기(초순수)	7,260	1대	7,260	”
조제기(시료/믹서)	8,250	1대	8,250	”
진열장(일반)	472	3대	1,416	”
진탕기(분액여두)	2,060	1대	2,060	”
진탕기(플라스크)	1,839	1대	1,839	”
질소미세농축기	8,470	1대	8,470	”
추출기(진공수동/Manifold)	1,710	1대	1,710	”
추출기(SFX/초임계유체)	63,950	1대	63,950	”
추출기(SPE/자동고상)	25,000	1대	25,000	”
펌프(진공)	868	2대	1,736	”
폐기물수집조	3,850	1조	3,850	”
항온수조(진탕)	3,410	1대	3,410	”
회화로	4,290	1대	4,290	”

건조기(Vision VS-1202D4)	3,500	1대	3,500	품종감정장비
냉온풍기(캐리어 CP-180H)	2,000	4대	8,000	”
냉장고(LG전자,R-B635GM, 634L)	1,000	2대	2,000	”
냉장원심분리기(TOMY MX-301)	12,440	1대	12,440	”
멸균건조기(Vision VS-905L)	5,000	1대	5,000	”
무균청정대(우주 CB-VB-S)	3,800	2대	7,600	”
미량원심분리기(한일 Micro-12)	400	4대	1,600	”
분광광도계(Beckman DU-530)	12,650	1대	11,000	”
사진자료분석기(BIO-RAD, Gel-Doc XR)	17,250	1대	17,250	”
순간온수기(린나이 REW-S30)	300	2대	600	”
실험대(썩크대:주문제작)	10,000	1대	10,000	”
유전자증폭기(ABI-9700)	7,200	3대	21,600	”
저울(Ohaus N14120)	3,000	3대	9,000	”
전기영동장치(Mupid-2-plus)	300	4대	1,200	”
전자레인지(LG MM-M301)	230	1대	230	”
제빙기(일신 IF300-150)	4,000	1대	4,000	”
진공청소기(한국시코,KC-132CD)	350	2대	700	”
크로마토그래피냉장고(Sanyo,MPR-702)	8,800	1대	8,800	”
크린박스(Three-Shine(주문제작))	4,800	2대	9,600	”
향온수조(Vision KMC-1205W)	700	2대	1,400	”
혼합기(Thermolyne, Maxi Mix 2)	450	4대	1,800	”
미도메타(Toyo)	130,000	1대	130,000	식미테스트장비
합계			1,804,569	

(나) 지사별 거점분석실 설치운영

□ 소요액 : 1,106,995천원(예상)

◦ 거점분석실 설치운영 : 1,106,995천원

- 산출식 : 221,399천원×5개소(지사)=1,106,995천원

[표46] 기기별 소요액 세부내역

기기분류	구분	기기명	예상단가 (천원)	비고
분석장비		GC(SPME용)	62,500	
분석장비	정밀	가스용기(액체)	2,500	
분석장비	정밀	건조기(열풍순환/Dry Oven)	2,497	
분석장비		건조대(초자기구)	638	
분석장비		교반기(시험관)	363	
분석장비		교반기(hot plate/다단)	1,320	
분석장비		균질기(시료/봉형)	8,657	
분석장비		냉난방기(일반/향온향습제외)	1,787	
분석장비		냉난방기(일반/향온향습제외)	2,900	
분석장비		냉방기(중형일반)	2,600	
분석장비		냉방기(소형일반)	1,800	
분석장비		냉장고(가정용)	1,200	
분석장비		냉장고(초저온)	6,270	
분석장비		농축기(진공회전)	21,043	
분석장비		농축기(질소미세)	8,470	
분석장비		배기함(일반/Hood)	5,720	
분석장비		분쇄기(시료/일반)	6,270	
분석장비		세척기(초음파)	1,944	
분석장비		실험대(기타)	1,060	
분석장비		실험대(벽면)	745	
분석장비		실험대(작업대)	850	
분석장비		실험대(중앙)	3,150	
분석장비		실험대(코너)	350	
분석장비		싱크대(일반)	760	

분석장비		원심분리기(일반)	7,700
분석장비		일반물품/가스용기(기체)	700
일반물품	정밀	일반물품/마이크로피펫(single)	1,950
일반물품		일반물품/시약장(일반)	1,360
일반물품		일반물품/의자(분석용)	60
일반물품		일반물품/의자(사무용)	120
일반물품		일반물품/전화기(유선)	300
일반물품		일반물품/전화기(일반)	90
일반물품		일반물품/책상(사무용)	300
일반물품		일반물품/책상(일반)	350
일반물품		일반물품/청소기(진공)	363
일반물품		일반물품/케비넷(일반)	3
일반물품	정밀	일반물품/폐기물 수집조	3,850
분석장비		장고(업소용)	1,400
분석장비		저울(Analytical)	3,850
분석장비		저울(Precision)	2,310
전산장비	정밀	전산H/W/디지털복합기	2,926
전산장비		전산H/W/디지털카메라	649
전산장비		전산H/W/프린터(레이저/흑백)	748
전산장비		전산H/W/프린터(잉크젯/칼라)	198
전산장비		전산H/W/PC(일반)	3
분석장비		전원장치(무정전/UPS)	20,000
분석장비		제조기(압축공기)	2,500
분석장비		제조기(증류수)	330
분석장비		제조기(초순수)	12,210
분석장비		조제기(시료/믹서)	5,600
분석장비		진탕기(분액여두)	2,060
분석장비		진탕기(플라스크)	1,320
분석장비		펌프(진공)	695
분석장비		향온수조(진탕)	2,060
합계			221,399

(다) 분석실운영 경상경비 : 886,250천원

- MMA쌀 안전성분석 등 일반경상경비 : 8,750천원
 - 산출식 : $175\text{천원} \times 5\text{종} \times 10\text{점} = 8,750\text{천원}$
- 표시인증 쌀 안전성분석 등 일반경상경비 : 17,500천원
 - 산출식 : $175\text{천원} \times 100\text{점} = 17,500\text{천원}$
- 친환경인증 쌀 안전성분석 등 일반경상경비 : 700,000천원
 - 산출식 : $175\text{천원} \times 1,000\text{건} \times 4\text{회} = 700,000\text{천원}$
- 품종감정 일반 경상경비 : 160,000천원
 - 산출식 : $160\text{천원/점당} \times 1000\text{점} = 160,000\text{천원}$

【 제 1, 제 2, 제 3안에 대한 장점과 단점 비교 】

□ 제 1안

<장점>

- ▶ 85명의 적은 인력으로 MMA쌀 검정, 쌀 검사 및 표시인증 등 2종류의 업무 추진이 가능
- ▶ 업무발생량에 있어서는 특히 MMA쌀의 경우, 향후 8-9년간의 검정물량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 있으며 쌀 표시인증에 있어서도 쌀 소비패턴이 소포장화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수입원의 확보가 용이
- ▶ 안전성분석에 있어서는 outsourcing체제를 유지하면서도 outsourcing 기관 및 분석결과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가능하여 중앙 및 지방단위의 분석실설치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약 29억원)대폭 절감가능
- ▶ 담당업무가 단순함에 따라 농관원, 한식연,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영역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내재
- ▶ 검정기관운영을 위한 인력(85명) 및 예산(약77억여 원)이 가장 적게 소요되어 검정기관의 신규설립이 용이

<단점>

- ▶ 최소한의 관리인력(85명)을 확보하여 운영함에 따라 제 3안과 같은 체제로의 관리 및 운영은 불가능하여 완전미를 생산하였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대한 신뢰도 미흡우려
- ▶ 중앙단위기관의 안전성분석실설치운영, 그리고 지방단위기관의 거점 분석실설치를 배제함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outsourcing 등 간접적인 관리에 따른 시간의 과다소요, 절차의 번거로움, 능동적 관리 불가능 등 안전성업무추진애로 및 소비자에게 대한 신뢰확보 미흡우려
- ▶ 담당업무가 단순함에 따라 검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내지 못하여 위상정립 미흡우려

□ 제 2안

<장점>

- ▶ MMA쌀 검정, 쌀 검사 및 표시인증, 친환경인증 등 3종류의 업무를 담당할 때 121여명의 최소한의 인력으로도 업무추진이 가능
- ▶ 최소한의 인력(121여명) 및 예산(약102억여 원)으로도 검정기관의 신규 설립운영이 가능할 뿐 아니라 업무추진도 용이 (위 제1안보다는 검정기관 설립용이성이 다소 낮은 편)
- ▶ 안전성분석에 따른 장점은 위 제1안과 동일
- ▶ 업무영역에 대한 관계기관간의 갈등문제에 대한 장점도 위 제1안과 유사

<단점>

- ▶ 소비자에게 대한 신뢰도, 안전성, 검정기관의 위상정립 등에 대한 단점은 위 제1안과 동일

□ 제 3안

<장점>

- ▶ 검정기관이 전문성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여 생산자·종자·포장선정 및 재배표준화에 의한 비배관리, 수확·저장·관리·가공·사후관리 등 완전미 생산 전 과정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명실상부한 완전미 생산으로 우리 쌀에 대한 대외경쟁력 확보 가능

<단점>

- ▶ 인력의 과다소요(174명) 및 중앙단위기관의 안전성분석실설치운영, 그리고 지방단위기관의 거점분석실설치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과중(약 38억 원)과 검정기관설립을 위한 총 예상소요 예산이 약 158억 원이나 되어 당해 기관의 신규설립에 부담으로 작용

제5장 외국의 쌀 검사(검정) 제도

1. 일본

(1) 일본의 쌀 유통제도

- 50년간 정부가 통제하던 쌀의 유통을 2001. 4부터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유통활성화 추진
 -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쌀 가격 관리, 계획 외 유통 미(자유 미)의 법제화
- 정부비축미는 흉작 시 쌀의 수급을 대체할 수 있는 최소물량비축(150만 톤)
 - 정부미는 정부가 전량 보관하지 않고 민간위탁보관하며 보관료 및 금리는 국가에서 부담
 - 정부미는 1년간 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중 쌀값의 하락으로 판매를 제한하여 장기(4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도 있음.
- 쌀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비축미 외 자주유통미 일부를 조정보관(정부보관료 지원)

- 수입쌀에 대한 관세화는 99년 10월부터 실시(조기 관세화로 MMA물량 축소가능)
- 현미는 국가에서 품위검사, 유통 쌀은 산지·품종·산년 등 표시 관리이행
- 계획유통미(정부미, 자주유통미)와 계획 외 유통미의 유통경로
 - 정부미 : 생산자 → 제1종 등록출하취급업자 → 제2종 등록출하취급업자 → 자주유통법인 → 정부(비축) → 등록도매업자 → 등록 소매업자 → 소비자
 - 자주유통미 : 생산자 → 제1종 등록출하취급업자 → 제2종 등록출하취급업자 → 자주유통법인 → 자주미 가격형성센터(가격형성) → 등록도매업자 → 등록 소매업자 → 소비자
 - 계획 외 유통미 : 생산자 → 소비자
- 계획유통미(정부미, 자주유통미)는 등록 출하업자만 취급
 - 제1종 등록 출하취급업자 : 단위농협, 전 수집업자(2,520개소)
 - 제2종 등록 출하취급업자 : 현 단위별 농협, 전 수집업자(86개소)
 - 자주 유통법인 → 전농(중앙농협)
 - 등록도매업자(369명), 등록 소매업자(94,615명)
 - ※ 취급 량 : 농협(전농) 95%, 전 수련 5%정도
 - 생산자와 제 1종 출하취급업자는 사전 출하계약 → 6월중실시
 - 제 1종, 제 2종 출하취급업자는 자주유통법인 또는 정부와 계약→ 12월 - 2월 실시
- 자주유통법인은 전국의 자주유통미의 유통량을 관리
 - 유통량은 4개월 단위로 도도부현 별로 조정(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 정부미 및 자주유통미는 현미 검사를 받아야만 유통이 가능
 - 검사는 2001. 4월부터 식량검사소와 등록된 민간검사기관이 병행하고 있으며 5년 후(2007년)에는 민간 검사기관으로 완전 이양계획
 - ※ 일본은 생산되는 쌀이 거의 완전미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미 생산을 위한 정부차원의 별도규격 및 관리방법 규정제정 불필요.

(2) 농산물검사 제도

- 농산물 검사제도 : 1950년 검사법제정, 2000년 개정, 2001년 4월부터 시행
- 검사목적 : 공정원활한 거래, 품질개선, 농가경제의 발전, 소비의 합리화
- 검사대상 품목
 - 농림수산성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결정
 - 의무검사 대상품목 : 쌀, 보리, 밀
 - 임의검사 품목 : 현미(쌀), 보리, 밀, 콩, 절간고구마, 전분, 팥, 강낭콩, 메밀
 - 종류별, 명표별로 규격설정
 - 등급 : 1, 2, 3등
- 검사 실시 기관
 - 법률개정 전까지는 국가기관이, 2001년 4월부터는 민간이양 추진, 5년간 병행 실시 후 완전이양
- 민간검사기관은 농림수산성에 등록
 - 민간검사기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은 갖추어야 함
 - 검사원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받아야 함
- 국정검사
 - 포장물 검사 : 매개검사, 추출검사 실시
 - ※ 추출검사는 품종, 품질별로 Lot를 구성한 후 Lot별 일정수량(약 10% 정도)을 추출하여 육안검사 한 후 Lot별 전체물량에 대한 검사 실시
 - 산물검사(산물 또는 flagon bag에 담아 출하) : Lot별로 sample을 채취하여 실내검사 후 등급 판정
 - ※ 추출량 : 검사대상 수량의 1/1000/이상(1톤 중 100g)추출
- 자체검사
 - 생산자가 컨트리엘리베이터에 출하한 건별로 벼의 수분, 중량을 계측하고 품위를 구분(상, 중, 하)하는 검사(검사품은 품종별, 품위별로 보관)

- 수분검수는 수분측정기로 측정
 - 생산자의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비, 농가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보관
 - 구매대금은 컨트리엘리베이터 자체검사(검수)후 60%정도 지급하고 검사완료 후 잔액을 지불
- 품위검사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의심이 가면 기기계측검사 실시
- 수치화가 불가능한 것은 표준품 대비 검사
 - 등급결정은 검사항목 중 가장 낮은 품위 항목의 계측치를 적용
 - 농산물검사법을 개정하여 2001년 4월부터 시행
 - 2001년 4월부터 농산물 검사를 민간검사기관에 이양, 2007년에는 완전 이양
 - 민간검사기관은 농림수산성에 등록
 - ▷ 민간기관(법인)은, 농림수산성에 등록을 한 다음 검사 업무를 실시.
 - 검사원, 기계기구, 자력신용, 조직체제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 검사를 적정하고 확실히 실시할 수 있는 법인인지를 심사.
 - ▷ 검사는 등록검사기관이 하며 국가는 규격설정 등의 기본법율의 제정, 등록검사기관에 대한 개선명령, 등록취소 등의 지도 감독을 실시.

【등록격부기관의 등록기준에 관한 근거법령】

 - 정부미와 자주유통미는 현미상태에서 검사를 받은 후 등록출하 업체, 자주유통법인, 정부를 통하여 등록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판매
 - 생산자가 컨트리 엘리베이터에 출하한 벼는 수분, 중량, 품위를 검사한 후 sample을 채취, 현미 정립율을 계측하여 최종등급 판정
- 구매 절차 및 검사순서 (정부미, 자주유통미)
- 검사신청 → 검사 → 검사품배열 → 수량 확인 → 중량, 포장상태검사 → 시료채취 → 종류, 연산, 품종, 품위검사 → 검사증명(등급증인, 검사인 날인) → 검사결과확인·기록 → 입고

□ 정부 비축현미는 전량 저온저장

- 보관창고온도 : 14~15℃, 습도 : 70%, 저장 곡물수분 : 13~14.5%로 유지관리
- 3년간은 품위변화가 전혀 없고 5년까지 안전보관가능
- 출하 시 결로 및 수분 흡습을 방지하기 위해 출고 전 곡물의 온도가 상온과 같도록 별도의 시설(창고 또는 빈)에서 템퍼링 실시

(3) 쌀 표시제도

□ 쌀 판매자는 JAS법에 따라 명칭, 원료현미 내용(산지, 품종, 산연, 사용비율), 실중량, 도정 연.월.일, 판매자(정미업자)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식량사무소는 적합성여부를 관리

- 의무표시사항 : 명칭<현미(찰 현미포함), 쌀, 찹쌀, 배아미>, 원료현미(산지, 품종, 산연, 사용비율), 내용량(중량), 도정연월일, 판매자(정미업자)

- 원료 현미의 기재방법에서 산지, 품종, 연산을 증명할 수 없으면 기재할 수 없음(증명 : 국산품은 검사법에 의한 증명, 수입품은 수입국의 공적 증명)

- 산지표시에서 국산품은 도도부현 명, 시정촌명, 알려진 지명을, 수입품은 원산지 국명 또는 원산지국의 지명을 기재

※ 지정된 표시란에 표시하되 산연, 가공월일은란 외에 별도 표시가능.

- 임의 표시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표시가능.
- 브랜드 미(복수원료 미)는 산지, 품종, 산연을 사용비율과 병행 기재(사용비율이 많은 순으로)하되 국내산, 또는 수입국명, 사용비율만 기재가능
- “新米”표시는 생산 당해 연도에 가공한 쌀에만 표시
- 유통 쌀 표시 중에서 특별표시사항은 유기재배 표시.

□ 표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모두 판매업자(정미업자)에게 있음.

□ 쌀 표시 관리는 식량사무소 등이 순회 모니터링에 의한 감시를 하며 부적정한 표시를 한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지시, 공표, 명령, 벌칙 등 조치.

- 지도(국, 도도부 현)→ 지시(농림수산대신, 지사) → 공표(농림수산성)
→ 개선명령(농림수산성) → 벌칙(50만 엔 이하)
- 산지, 품종, 산연 표시위반 시 과학적인 감정방법으로 조사가 가능하나
분석비용이 많이 들고 정확도가 떨어져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통
과정조사 등으로 단속을 함. (단 품종은 DNA분석으로 식별가능)
- 단백질함량 등 식미 표시는 임의로 표시한 경우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으면 국가에서 규제하지 않음.
- 허위표시는 관리규정에 따라 엄격히 단속하나 식미(단백질함량 등)에
대한 의무적 표시규정은 없음.
- ※ 특정 성분만의 성분표시는 위생성법에 저촉되므로 성분에 대해
서는 모든 성분을 표시하여야 함.

(4) 쌀 성분 및 식미검정 제도

- 쌀의 단백질, 아미로스, 수분을 분석하고 있으나 검사에 적용은 하지
않으며 분석의뢰 시 단백질 등 분석결과를 통보 (2001년 쌀 성분 분석
건수는 2,000건으로서 대부분 생산자가 의뢰)
- 현재 쌀 식미검사는 연구단계이며 앞으로 검사기준이 통일되면 검사에
적용검토(식미기 제작회사들이 공동으로 검량선 표준화작업 추진 중)
- 식미검사는 생산자, 유통업자 등이 의뢰할 경우 식량청이 검정결과를
통보(의무검사는 아님)
- ※ 2003년부터 등록된 민간검정기관에서도 검정이 가능 (곡물협회, 농협 등)
- 통일된 식미의 검정 검량선은 없으며 식미검정 결과를 공식적으로 활용
하지는 않음
- 일반적으로 단백질함량과 아미로스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은 경향
이나, 일부는 관능적인 식미치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검사항목으로 적용
하거나 표시를 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음.
- 금후 단백질함량은 표시할 것임(현재는 미질개선 및 현미. 쌀 유통 시
가격결정에 활용하는 추세)

- 쌀 성분 분석기(AN-800) 검량선 작성은
 - 20~30품종 100점의 공시료를 10℃, 20℃, 30℃에서 분석기와 함께 각각 일정기간 두어 시료의 분석기의 온도를 목적온도까지 평형화시킨 후 항온·항습 실(20℃, 60%)에서 검량선을 입력하고 있음
 - 단백질은 “켈달”분석치를, 아미로스는 “쥬리아나” 분석치를 검량선 작성에 적용
 - ※ 아미로스는 분석이 어렵고 분석오차가 크므로 곡물검정협회 분석치를 검량선 작성에 활용하고 자사 분석치는 지표로 활용.
 - 아미로스는 함량이 낮을수록 밥의 끈기는 있으나 쌀의 식미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기기분석 시 식미치 반영 비중이 적고 주로 단백질과 수분을 식미평가에 적용
 - ※ 단백질함량이 현미는 7%이하, 쌀은 5%이하를 양질미로 구분(동일 시료의 경우에도 단백질함량은 현미가 쌀보다 일반적으로 1%정도 높음)
- 수분측정기의 정도관리는 연1회 실시하며 실시방법은
 - 원기(식량청 품질관리실) → 식량사무소 기준기 정도관리
 - 기준기(식량사무소) → 등록검사기관의 대표기 정도관리
 - 대표기(등록기관 : Kett, 농협) → 검사실기의 정도관리
- 수분측정기 법정 허용오차 : ± 0.5 (Kett는 기계제작시 ± 0.1 , 사용 시 ± 0.2 까지 허용오차 인정)
- 호퍼스케일 수분측정결과는 검사에 적용하지 않으며 통과한 시료를 채취 단립식 측정기로 측정(호퍼스케일 점검은 하지 않음)

[(財)일본곡물검정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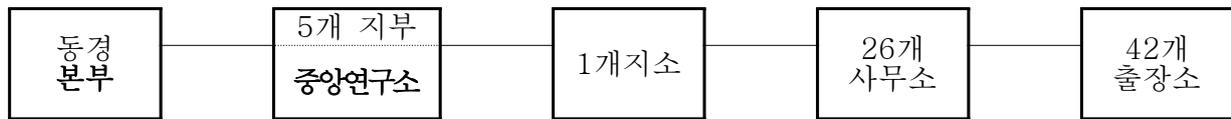
가. 설립 목적

- 1951년4월에 식량배급공단에 의한 미곡의 배급제도가 폐지되고 민영업자의 소매에 의한 판매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미곡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정부와 민간(업자)사이의 거래에 공정한 제 삼자 검정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재단법인 일본 곡물검정협회(穀檢)가 설립되었음.

- 미맥 등의 곡물을 시작으로 농작물 식품 등의 유통 과정에 대한 제삼자
검정기관으로서 품질, 안전성, 공정한 검사·검정을 실시해 유통의 원활화
· 품질향상을 도모해 소비 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

나. 조직 및 인원

- (1) 조직 (1955. 8. 31일 농림성지령30 식량 제4175호에 의거 설립인가)
[그림8] 조직도(03. 4. 1 현재)



- (2)인 원 (03.4.1현재) : 581명(임원11, 고문5, 직원377, 준 직원188)

다. 주요 사업

- (1) 소비지에 도착하는 정부미나 자주유통미에 대해 입·출고의 시점에서
품질, 수량 등의 검정을 실시.
- (2) 쌀 가운데 산지·품종·산연이 표시되고 있는 소포장 쌀에 대해서 표시와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인증하고 있음.
- (3) 주된 산지 품종의 쌀에 대해 매년 식미시험을 실시해 그 결과를 순위
매김 해 식미 랭킹으로 공표하고 있음.
- (4) 수입식량이나 수입 사료용 곡물 등에 대하여 품질·수량의 검정 및 사료용
곡물의 가공 상황확인
- (5) 연구소에서는 곡물사료 및 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등의 검사, 이화학
분석(영양분석·성분분석·위생시험) 등을 실시.
- (6) 적정 계량 관리 사업소의 지정을 받아 계량증명 사업자로서 위탁을 받은
사일로나 정미공장의 계량기에 대해 점검 등 관리.

라. 농산물검사. 검정

곡물검정협회는 농산물검사법에 근거하는 등록 검사기관으로서 농림
수산성에 등록된 검사원이 농산물을 검사.

(1) 외국산 농산물 검사

- 가) 수입업자로부터의 검사청구에 의해 수입항에 검사원을 배치하여 품위 검사 및 검량 업무를 실시.
- 나) 정부가 수입하는 쌀·보리의 품위검사·검량을 실시.

(2) 국내산 농산물 검사

-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검사기관으로서 생산자 및 매매거래 업자 등으로 부터의 검사 청구에 응해 전국에서 벼·보리 및 잡곡류 등의 품 위 등 검사를 실시.

(3) 성분 검사

- 수입업자, 생산자 및 매매거래업자 등으로부터 검사 청구를 받아 전국의 각 분석 센터에서 미맥에 대한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으로 정한 등록검사기관으로서 잔류농약의 분석 등 안전성검사, DNA 분석에 의한 쌀의 품종판별, 대두의 유전자 재조합 검사 등을 실시.

(4) 미곡검정

- 전국 집하단체 및 미곡판매업자로부터 의뢰에 의해 미곡인수도 시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인수도 시 입회하여 수량·품질·중량 등에 대한 검정실시.

마. 이·화학 분석

- 쌀에 대한 품종DNA감정, 안전성과 관련되는 잔류농약 분석 등 이화학 분석의 요청이 높아지고 있어 각종 이화학 분석을 준비
- 후생노동성의 식품위생법에 등록 검사기관으로서 GLP(Good Laboratory Practice)와 농림수산성이 정한 GAP(Good Agriculture Practice)를 도입 해 검사시설설비, 시약 등의 적정 보관·관리, 검사항목마다 표준작업 순서 및 검사정도 관리, 검사증명서 발행의 적정관리 등을 실시.
- 분석·검사 항목 : 쌀에 대한 품종(DNA)감정, 잔류농약·곰팡이독소·중금 속·미생물·성분·사당 등의 분석, 규격·품질성상·유전자 조환체 시험, 쌀의 선도판정, 미맥의 성분검사 등

바. 식미 평가 사업

- 쌀의 맛에 관한 이화학시험 및 관능시험에 의한 평가를 실시.

(1) 이화학 시험

- 선도 판정·아밀로스·단백질·요-드 정색도 및 물성시험으로서 쌀의 점탄성특성을 조사하는 아미로그래프, 딱딱함 등을 조사하는 텍스추럴 메이타 시험 등을 함

(2) 관능 시험

- 전문 패널리스트에 의한 맛 시험을 실시.
- 음식 맛에 대한 관능시험은 전문 패널에 의해 공시품과 협회가 정한 기준 쌀에 대하여 외관·향기·맛·끈기·딱딱함·종합평가 등 6개 항목을 비교하여 상대평가. (공시 샘플 1점당 현미2kg)

사. 쌀의 정보제공 시스템

- 쌀에 대한 맛·종목·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여 제공.

아. 기타 서비스 사업

(1) 증명업무

(2) 계량업무

(3) 국제협력사업

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연수 「벼의 수확 후처리 기술Ⅱ」 코스

- 1973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협회에서는 1988년부터 관여.
- 본 코스는 개발도상국에서 벼의 수확으로부터 유통에 이르는 다양한 처리기술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하여 실시.
- 주요 참여국 :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우간다,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마다가스카르, 시에라리온, 파푸아뉴기니, 볼리비아 등

- JICA연수에 관련하는 정보지 「KOKKEN &The World」를 발행하여 연수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교환에 이용.

다) 중국검험검역총국(AQSIQ: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 Quarantine)과의 기술 교류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전 중국상검총국)과는 20년 이상 기술교류를 실시.

라) ODA(Official Development Association) 사업

- 농림수산성의 위탁을 받아 1989년부터 국제 협력의 일환으로 ODA 사업에 공헌.
- 동남아시아제국,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많은 지역에 출판물만도 20종 이상이 되고 사업내용은 일관해서 「곡물의 수확 후 처리기술 협력 추진」을 테마로 하여 추진.

자. 중앙 연구소의 주요업무

- 농산물, 식품, 사료단백질, 지질, 당질 등 기초성분이나 무기성분, 비타민류 등 분석.
- 국내산 밀의 품질성상조사, 정맥용 원료, 보리 품질조사, 학교급식용 밀가루 가공적성시험.
-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지정검사기관으로 농산물, 식품 등의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이나 식품첨가물과 사료, 식품중의 세균검사나 곰팡이 발생률 등에 대한 미생물검사.
- 농산물검사법의 지정검사기관으로서 미맥의 성분검사 및 일본농림규격(JAS)의 등록격부기관으로서 식품검사와 사료안전법규격에 의거 배합사료 등의 규격검사.
- 분석방법의 개량·개발 및 쌀의 신선도 및 품종판별 등 농산물품질에 관한 조사연구.

[사)米穀安全供給確保支援機構：일본 全國米穀協會]

1. 設立趣旨

- 전국미곡협회는 1981년 12월에 농림수산성으로부터 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아 「쌀의 소비확대에 관한사업」, 「미곡의 정보제공에 관한사업」 「경영 기반강화에 관한사업」 등을 이행할 목적으로 설립
- 2004년 4월 식량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전국식량신용협회를 모체로서 재단법인 전국미곡협회, 사단법인 전국미맥개량 협회, 자주유통 법인의 조직과 업무를 재편 통합하여 「社団法人 米穀安定供給確保支援機構」로 발족과 함께 「경영기반강화에 관한사업」 「쌀의 Traceability System에 관한 사업」을 추진.

2. 主된 事業

- 신용보증 사업
- 집하 원활화 사업
- 미곡 안정공급 지원 사업
- 참쌀 수급 안정 대책
- 소비 확대 사업
- 정보 제공 사업

가. 경영 기반 강화에 관한 사업

(1) Lease사업의 운영

- 1996년부터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 지금까지 Lease사업을 계속하여 관리·운영.

(2) Traceability 실시에 의한 사 경영의 효과 등의 추적 조사

- Traceability의 실적 및 Traceability가 경영에 주는 효과 등에 대해 1년간에 걸쳐 추적조사 해 그 결과를 집계 분석하여 시스템의 개선 및 보급에 이바지.

나. 쌀 Traceability에 관한 사업

- 2003~2004연도는 국가차원에서 Traceability System을 도입(쌀 생산유통 이력정보시스템 도입지원 사업)하여 시행.
- 국가사업에 의하여 Traceability에 대한 효과가 발휘되는 것으로 경영의 발전과 쌀 소비 확대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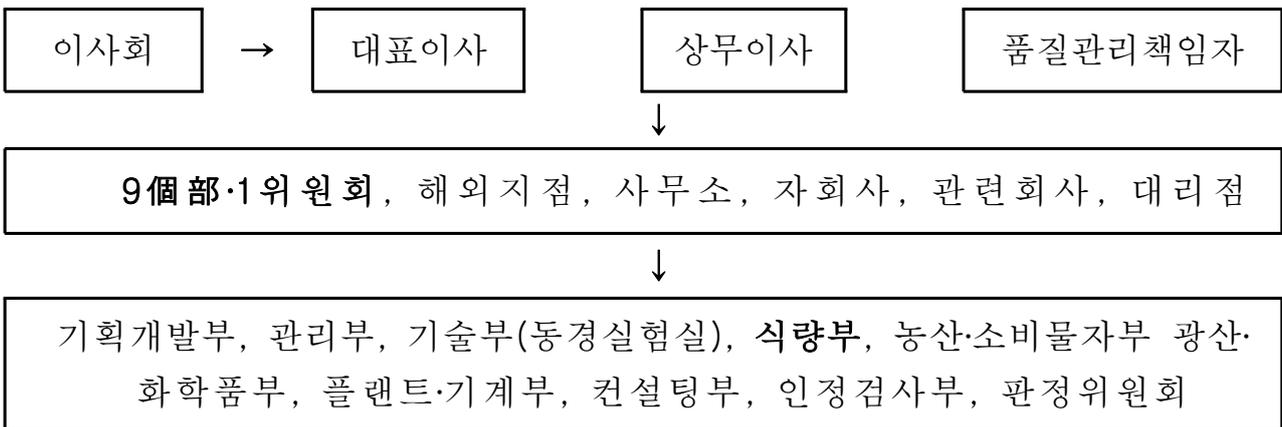
[海外貨物検査株式会社:OMIC]

1. 會社概要

- OMIC(Overseas Merchandise Inspection Co. Ltd.)은 태국 쌀에 대한 선적지검사를 목적으로 1954년에 설립
- 이때부터 국제적인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국제총합검사기관으로서 세계적인network의 총력을 구사
 - 식량농산물·소비물자, 광산·화학제품, 플랜트·기계, Consultant분야 까지 영역을 넓혀 그 수요가 비약적으로 신장
 - DNA분석이나 잔류농약검사 분야에서도 정도 높은 분석으로 세계의 Leader적 지위를 쌓고 있음.
- 또한 반세기에 걸쳐 국제적인 실적이나 경험에 의해 「각국정부와 공적기관으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고 있음.

가. 會社組織

[그림9] 조직도



나. OMIC그룹의 World network

(1) 주요 거점(Main Offices)

- 현장에서 밀착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각 주요거점은 당해 국가의 주요도시와 항만도시에 영업소를 두고 있음.

- 아시아 : Bangladesh, China, Hong Kong, India, Japan, Indonesia, Korea, Malaysia, Myanmar, Taiwan, Philippines, Singapore, Sri Lanka, Thailand, Iran, Vietnam,
- 미국 : Canada, U.S.A.
- 오스트랄리아 : Australia
- 유럽 : England
- 제휴 agent(Allied Agencies)
 - OMIC은 다양한 국가에 제휴agent를 두고 서비스 제공을 실현.

[표47] 제휴 Agent 국가

AFGHANISTAN	INDONESIA	ROMANIA
ALGERIA	IRAQ	RUSSIA
ARGENTINA	IRELAND	SAUDI ARABIA
AUSTRIA	ITALY	SLOVAK REPUBLIC
BELGIUM	IVORY COAST	SLOVENIA
BENIN	JORDAN	SOUTH AFRICA
BRAZIL	KAZAKHSTAN	SPAIN
CAMEROON	KENYA	SUDAN
CHAD	KUWAIT	SWAZILAND
CHILE	KYRGYZ	SWEDEN
COLOMBIA	LEBANON	SWITZERLAND
CUBA	LIBERIA	SYRIA
CZECH REPUBLIC	MADAGASCAR	TANZANIA
DENMARK	MEXICO	TURKEY
EGYPT	MOZAMBIQUE	UAE
EQUADOR	NETHERLANDS	UKRAINE
FRANCE	NEW ZEALAND	URUGUAY
GAMBIA	NIGER	US VIRGIN ISLANDS
GERMANY	NIGERIA	UZBEKISTAN
GHANA	NORWAY	VATICAN CITY
GREECE	PAKISTAN	VENEZUELA
GREENLAND	PANAMA	YEMEN
GUATEMALA	PARAGUAY	YUGOSLAVIA
GUINEA	PERU	ZAIRE
HUNGARY	POLAND	ZAMBIA
ICELAND	PORTUGAL	ZIMBABWE

(2) 연구소(Major Laboratories)

- OMIC의 주요 연구소는 일본 아메리카 태국 오스트리아에 있음.
 - ▶ 동경 연구실(일본)
 - 수입농산물의 분석업무를 실시할 목적으로 1956년에 설립.
 - 그 이후 철광석, 비철금속, 금·은분석의 새로운 분야에 업무를 확대하여 2002년에는 철광석 분석에 대해 ISO17025의 자격을 취득
 - 금·은의 분석에 대해서는 최신의 분석기기를 보유한 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분석 기관으로 유지.
 - 또한 식품 및 사료 및 비료의 일반 성분분석 외에 곡물 중의 카드뮴 등 금속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식품분석 서비스를 제공.
 - ▶ 포틀랜드 연구소(미국/포틀랜드)
 - 1993년에 설립되어 잔류농약 분석, 미생물 검사, 식품성분분석, DNA검사에 의한 쌀 품종감정, 유전자 재조합 작물의 판정을 실시.
 - ▶ 방콕 연구소(타이/방콕)
 - 1954년 일본전용 수출미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OMIC 최초의 해외 지점으로 설립.
 - 태국 정부의 공인검사기관이며 화학분석부문은 일본의 후생노동성에 서도 인정하는 기관으로 다양한 식품 등의 분석을 실시.
 - ▶ COPIT/Consumer Products Inspection & Testing Co, Ltd.(타이/방콕)
 - 1989년 일본전용의 섬유제품 의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설립.
 - 1998년에 OMIC그룹의 일원이 되어 이 분야의 검사·시험으로 높은 실적을 거양.
 - ▶ BHA(Bernard Heath & Associates) (오스트레일리아/멜버른)
 - 70년의 역사를 가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우수한 식품위생 전문 검사 기관임.
 - 1999년에 OMIC그룹의 일원이 되어 종래의 기술력에 가세해 OMIC의 기술력과 최신 검사 설비를 도입해 식품분석, 식품 미생물 검사, 농약 분석의 분야에서 고도의 분석검사를 실시.

2. 업무분야 소개

- OMIC은 국제 업무를 support 하는 국제총합검사기관으로서 독자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정비하여 서비스를 제공.
- <식량 / 농산물 / 소비물자 부문>, <광산 / 화학제품 부문>, <플랜트 / 기계부문>, <Consultant 부문>, <유기인정검사부문> 등의 분야에 있어 세계각지에서 <수출입화물의품질 · 중량 · 포장검사>, <화학 · DNA분석>, <Consulting>,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취급자인정>, <훈증, 식품의 안전성 확인>, <WTO-PSI(선적전 검사)업무> <기타>의 서비스를 제공
- OMIC이 발행하는 증명서 · 보고서는 국제거래에 관한 정식서류로서 각국 정부와 관계 업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

가. INSPECTION

(1) 검사내용 1

- <식량 / 농산물 / 소비물자부문>, <광산 / 화학품부문>, <플랜트 / 기계부문>
 - Sampling, 시료조제
 - 품질검사, 중량·액량검사, 검수
 - 적부, 포장·곤포검사
 - 드래프트 서베이
 - 선창·컨테이너검사

(2) 검사내용 2

<플랜트 / 기계부문>

- 엔지니어링 및 조달품검사 : 제작공정내검사, 사양·성능·기능검사, 비파괴검사, 외관·寸法검사, 완성검사, 납기촉진
- 선적 전 검사 : 목시검사, 수량·중량검사, 품질서류조합검사, 곤포 검사, 荷印검사
- 현지공사검사 : 据付감시, 완성검사·시운전

< 광산 / 화학제품 부문 >

- 철강원료 (철광석, 아연 · pellet, 선철, 환원철, 합금철)
- 부원료 (석탄, 코크스, 망간, 형석, 드로마이트, 스크랩)
- 비철원료 (동 · 연 · 아연광, 니켈, 마그네시아 · 클린카)
- 화학품 (비료, 석유제품 등)
- 각종금속류 (카파 블리스터, 아노드, 금, 은, 전기동, 아연 잉곳 등)
- 발전용일반탄

< 플랜트 / 기계부문 >

- 일반 공업제품
- 각종 수송차량
- 화학플랜트 · 제철플랜트 · 발전플랜트 등의 각종기계
- 회전기계
- 전기기기, 계장·제어기기
- 공작기계, 섬유기계, 기타 산업기계
- 압력용기, 열교환기
- 소재, 배관재 등

나. Testing & Analysis 분석

(1) 식품 성분분석

- 식품원료농산물, 생선, 냉동·냉장, 건조, 가공·조리가 끝난 모든 식품

(2) 식품첨가물 분석

- 생선, 냉동·냉장, 건조, 가공·조리가 끝난 모든 식품

(3) 식품미생물 검사

- 식품 · 유지원료농산물, 축산물, 생선, 냉동·냉장, 건조, 가공·조리가 끝난 모든 식품

(4) 중금속분석

- 식품·유지원료농산물, 생선, 냉동·냉장, 건조, 가공·조리가 끝난 모든 식품

- (5) 카드뮴 분석
 - 쌀 등 농산물
- (6) 잔류농약분석
 - 식량용·사료용 곡물, 채유종자, 잡콩, 사료용Pellet, 각종조사료, 과실, 야채, 원두커피, 카카오빈스.
- (7) Mycotoxin 분석
 - 식량용·사료용 곡물, 채유종자, 과실, 야채, 원두커피, 카카오빈스
- (8) DNA분석
 - 쌀의 품종감정, 품종증명
- (9) 유전자조작 식품 및 유전자조작 식품원료 분석
- (10) 사료영양성분의 검정
 - 농림수산성이 공정규격을 정한 배합사료, 혼합사료, 단체사료
- (11) 커피·컵 테스트
- (12) 수분, 립도, 품위, 물리시험
 - 철강원료, 철강부원료, 비철원료, 화학품, 각종금속류
- (13) 광석 중의 금·은 분석

다. Consulting

- (1) 농림수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품질관리에 관한 기술조사 및 각종프로젝트의 입안·실시기술수준, 생산능력, 실적, 품질관리 등에 대한 심사와 지도
- (2) ISO 9000시리즈의 품질보증·관리시스템 도입에 관한 Consulting
- (3) 철광석, 동광석, 니켈광석이나 사료원료 등의 생산, 수송, 항만하역, Sampling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근거하는 현장보고 및 개선방법의 Advice
- (4) 식품가공공장의 위생관리
- (5) Plant 및 기계·공장의 설비·기술수준, 생산능력, 실적, 품질관리 등에 대한 심사와 지도
- (6) 정부개발원조(ODA)에 관한 조사, 설계, 모니터링 조사, 평가업무

라. 그 외의 서비스

(1) 물류 슈퍼비전 (하역, 수송감독) 및 Claim Survey

(2) Marine 및 보험 Survey

(가) 충돌, 좌초, 하역설비 손상에 관계되는 Survey

(나) 船賃계산, 선적화물에 관한 보험 Survey

(다) 특수화물의 적부 · 하역 Survey

(라) 본선에서의 연료積込 시 Tank Cleanliness Survey

(마) 용차, 용선 계약 및 해약업무 대행 Survey

(3) FOG (積揚품질·중량보상 업무)

◦ 積地와 揚地에서의 품질 · 중량의 차이에 의해 생기는 손실을 보상.

(4) PSI

◦ 수입관세의 적정 · 확실한 징수와 신속한 통관 및 품질 · 수량의 확보를 목적으로 현재 약30개국에서 PSI(선적전검사)가 도입되고 있음.

◦ OMIC그룹의 일원인 OMIC International Ltd.는 재 제네바의 COTECNA사와 협동으로 이 PSI를 제공하고 있음.

(5) 본선 · 창고 훈증

(6) 山元조사 및 관련항만 조사

◦ 철광석, 석회, 철강 부원료, 비철금속광산

(7) 식품의 안전성 확인업무

◦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가공식품의 등록 인정기관 업무

(8) JAS法에 근거한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가공식품의 생산행정 관리자, 제조업자, 소분업자, 수입업자를 인정함.

2. 미국

가. 미국의 농산물(쌀) 생산·가공현황

(1) 쌀 생산 및 수출현황

- 2002년도 현재 미국 쌀 생산량은 950만 톤으로 세계 총생산량의 1.62%이며 미국 농산물 총생산의 2%를 점유.
- 쌀 수출량은 세계 교역량의 평균 14%로서 태국, 베트남에 이어 제 3위의 수출국 임.

(2) 미국 벼(쌀) 주요 재배지

- 북위 27도~31도 :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및 텍사스 주의 걸프 연안
- 북위32도~36도 : 아칸소,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및 미조리 주의 그랜드 프레리, 미시시피강 삼각주
- 북위 38도~40도 : 캘리포니아 주의 새크라멘토 밸리

(3) 10a당 벼 생산량 및 총생산량(2004년산 현재)

- 장립종 : 737kg/10a(미국 평균), 총생산량 7,661천 톤
- 중립종 : 934kg/10a(미국 평균), 총생산량 2,662천 톤
- 단립종 : 739kg/10a(미국 평균), 총생산량 146천 톤

※ 단립종 1.4%, 중립종 23.8%, 장립종 74.8%으로 주로 장립종을 재배

(4) 미국의 쌀 검사제도

- USDA(미국 농무부)가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벼에 대하여 1~5등급 범위 내에서 등급을 격부하고 있으며 99%이상이 1등급 임.

(5) 곡물 저장시설

- 각 지역단위별로 엘리베이터(저장창고)가 있으며 이곳에서 벼를 보관하다가 FRC에서 필요시 운송하여 도정·판매하고 있음
- 18-22%되는 벼를 수확하여 화씨 90-95℃로 수회에 걸쳐 수분함량 15%까지 화력건조를 하여 보관
- 2-3년 된 장기 보관양곡은 없으며 당해 연산을 당해에 가공

나. 미국의 농산물검사(검정) 제도

(1) 법적근거

- 미국 곡물규격법(The United States Grain Standards Act) : 1916년 제정
- 가) 1976년의 대폭적인 개정을 포함 현재까지 6회의 개정을 거침
- 나) 수출 농산물 : 의무검사(미국 곡물규격 법 제5조 의거)
- 다) 국내유통 농산물 : 희망검사(미국 곡물규격 법 제7조 의거)

(2) 검사대상

- 가) 미국 곡물규격(Official United States Standards For Grain) : 11개 품목(소맥, 대맥, 호밀, 호소맥, 옥수수, 귀리, 수수, 대두, 해바라기 종자, 아마종자, 혼합곡물)
- 나) 농업시장법(The Agricultural Marketing Act, 1946년 제정)
미곡, 두류 및 사료 등에 대한 규격 설정

(3) 검사기관 및 검사원

- 가) 연방곡물 검사국(Federal Grain Inspection Service : FGIS)
국내검사와 수출검사 실시 및 주정부·민간 검사기관의 감사 담당
- 나) FGIS가 위임 또는 지정한 주정부 및 민간 검사기관
 - 1) 위임을 받은 주정부 검사기관(7개 주정부) : 국내 및 수출검사
 - 2) 지정을 받은 주정부 검사기관(6개 주정부) : 국내검사만 실시
 - 3) 지정을 받은 민간 검사기관(43개 단체) : 국내검사만 실시

다) 검사원

- 1) 요 건 : FGIS 및 검사기관 소속직원으로 검사원 자격시험 합격한 자
- 2) 자격부여·유효기간 : FGIS 부여, 3년(일정조건의 훈련 이수)
- 3) 검사원 구분 : 샘플러, 검량기술관, 검사기술관, 검량관, 등급부여 검사관

(4) 검사방법

- 가) 시료채취 및 봉인 : Sampler, Ellis Cup, 이중관 색대 등을 사용 수출검사는 Diverter형 등의 자동샘플러 사용

나) 품위분석 : 육안감정 및 기기분석(NIRS 등) 활용

다) 최종검사 결과 합격판정 시 FGIS 검사원이 납으로 봉인된 Control key Box를 개봉한 후 모든 선적장치가 작동되는 System으로 FGIS 직원이 본선선적의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음.

(5) 현미 검사규격

◦ 국내 유통규격 및 수출규격의 구분이 없음

(6) 농산물 민간검정기관

< OMIC 미국지사 >

가) 설립연도 : 1955년(미국 샌프란시스코)

1) 포틀랜드 지점 : 북대서양 곡물(밀)수출 위주('59 설립)

2) 오리건 지점 : 최첨단 분석기기 보유 실험실('98 설립)

3) 캘리포니아 지점 : 미국과 일본간의 쌀 거래 도모('98 설립)

나) 검사항목 : 농산물검사, 안전성검정, GMO검정, 쌀품종 판별 등

농산물검사 : 등급·품질검사, 중량검사, 피해조사, 선적감독 등

다) 인증가입 : ISO9001, 잔류농약분석인증서, 식품화학인증서, ACS 등

다. 미국 농산물 공인검사기관 인증요건

(1) 법적근거

가) 미국곡물규격 법(USGSA)

1) GIPSA에서 3년 단위로 검사원, 주 및 지방정부에 대하여 공인검사 기관으로 지정

(2) 검사분류

가) 위임 주정부 : 수출농산물에 대한 의무 공인검사(캘리포니아 등 7개 주에서는 연간 15,000톤 이상의 농산물 수출업체는 의무 등록)

나) 지정 주 검사기관 및 민간기관 : 국내농산물 허용 공인검사(6개주 농업국 및 43개 민간검사기관)

(3) 공인검사 종류

- 가) 공인기관 검사원에 의한 시료채취 및 검사
- 나) 검정의뢰업체 공인검사원에 의한 시료채취 및 검사
- 다) 제출시료에 대한 검사
- 라) 공인 시료채취
- 마) 저장 및 공정과정 확인조사
- 바) 중량검사
- 사) 철도차량 단위 검사
- 아) 호퍼 및 트럭 단위 검사 등

(4) 공인 검사기관 인증(자격요건)

가) 미국곡물규격 법 7조(7.f.1.A)

1) 시설 및 자격검사원 확보

약품오염 없는 작업장, 공인검사장비 등

2) 공인검사가 이루어지는 가공공장, 저장고 등의 시설에 대한 검사원에 의한 주기적 점검 여부

3) 곡물규격 법에 따른 교육 충족 여부

4) 부당한 검사수수료 징수 여부

5) 제한항목에 대한 검사원 이외의 인력에 의한 업무 이행 금지

6) 법에 따른 조직 활동에서의 정확한 기록 여부

7) 주 및 지방정부는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고용 여부

8) 사무국은 공인검사기관 신청자 중 가장 유능한 기관을 선정

나) 규칙(Regulation 800.199)

1) 곡물업체 주식보유자에 대한 고용금지

2) 이해당사자간 뇌물행위 금지

- 3) 법 규정하의 곡물업체내의 검사장소 및 기기 이용 가능
 - 4) 이해당사자간 갈등 발생 시 검사기관은 조속히 처리
- (5) 검사 수수료
- 가) 원칙(Regulation 800.70)
- 1) 합리적이고 무차별 적용
 - 2) 정부기관의 검사수수료는 검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 3) 검사에 소요된 비용 및 인접 검사기관의 수수료와 비교
 - 4) 검사항목 간 검사신청자에 따라 차이가 없어야 함
 - 5) 검사수수료 schedule을 GIPSA에 제출
 - 6) 검사수수료의 유효기간 명시
 - 7) 일과 중 수수료와 초과 시간 및 휴일 검사수수료의 구분 명시
 - 8) 출장비 명시 등
- 나) 수수료 비교(제출 schedule)

[표48] 농산물검사 수수료 비교

구 분		중앙일리노이(검사업체)	알칸사스(멩피스 검사소)
시급	주중(일과 내)	13.75\$(검사), 9\$(시료채취)	17\$
	초과시간 및 휴일	20.63\$(검사), 13.5\$(시료채취)	25.5\$
마일리지		0.275\$	멩피스제외(IRS적용)
숙박비			30\$ 이상(실비적용)
철도차량 시료채취(시간당)		13\$	19\$
제출시료 검사수수료(점당)		6\$	8\$
재검사 수수료		7.5\$	8\$
3개 항목(동시분석)			21\$

제 6장 위격검인증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1. 위격검인증행위에 대한 단속대상의 종류

- 가. 위격검인증행위
- 나. 검인증 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 위반 행위
- 다. 점검·조사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 위반 행위

2. 단속과 관련한 주요수행 업무

- 검정기관의 장은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단속요원으로 지명하여 임무를 수행.
- 재심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검인증을 필한농산물을 대상으로 재심.
 - 품위의 선도유지 기간이 짧은 농산물, 해장함으로써 원상회복이 곤란한 농산물, 수출입농산물 등은 검인증현장 지도·확인으로 재심에 갈음.
- 재심은 검인증의 적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수량을 확인
- 재심에 있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00호의 『농산물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으로 실측이 불가능한 항목은 이를 공정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감정반을 정하여 운용.
- 단속 및 감정요원이 아래와 같은 위반을 하였을 경우는 그 책임을 지도·감독 조치.
 - ① 단속·관리·감정 업무에 불성실하거나 태만하였을 때
 - ② 적출된 비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였을 때
 - ③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을 때
 - ④ 기타 단속 또는 감정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3. 검정기관장(지사장)의 지도·감독

- 관할 검정기관의 장은 공정·원활한 검인증업무가 이루어지도록 검인증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검인증 및 점검현장수시 확인 실시
- 검인증 및 점검·조사인력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배치하되,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실정과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 배치

- 관할 검정기관의장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검인증현장 확인을 실시.
- 관할 검정기관의장은 검인증현장 확인사항 등을 업무일지에 기록하여 소속 직원의 현장업무 지도·감독에 참고하고 위격검인증 또는 검인증업무 관련지시사항 위반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별도의 단속요강에 의하여 조치

4. 위격인증 및 지시위반자에 대한 조치

- 위격검인증의 범위, 조치의 범위 및 문책의 종류, 문책의 처분방법 등은 별도로 규정을 정하여 적용토록 조치

5. 감독자에 대한 조치

- 소속직원이 위격검인증 또는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을 경우에는 관할 검정기관의장(지사장)에게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문책.
- 감독책임이 있는 관할 검정기관의장에 대한 문책기준, 처분방법, 처분 건수의 산출 및 적용, 문책기산 기간 등은 별도로 정하여 적용토록 조치

6. 문책조치 및 보고

- 처분권자 및 보고, 문책처분의 처리, 처분의 기록유지 등 제반행정절차상의 규정도 별도로 정하여 준용토록 조치.

제 7장 결 론

- 우리나라의 쌀 산업여건을 고려할 때 농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DDA 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 확대에 따른 쌀값 하락 가능성 및 농가소득 감소의 우려, 그리고 수입쌀과 국산 쌀과의 품질경쟁심화로 자칫 우리의 쌀시장이 잠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
-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질과 안전성이 높은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반면, 브랜드는 난립('06. 3현재 1,873개)되고 있어 국산 쌀 선택의 어려움은 물론, 수입쌀에 대한 품질과 가격을 국내산과 비교하여 구매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문제도 안고 있는 실정.
- RPC 등 유통주체 입장에서는 쌀 소비가 해가 거듭될수록 감소하고 있고 업체들 간의 시장경쟁 심화로 경영여건 또한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 고품질품종 재배 확대
 - 지력증진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 품질향상을 위한 재배기술 지도강화
 - 친환경 벼 재배면적 확대
 - RPC를 고품질 쌀 생산·유통의 중심체로 육성
 -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강화 등그 동안 농림부에서는 농진청, 종자관리소, 농협 등 사업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역할을 분담시킴과 아울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전업농을 육성하는 등 총력을 경주 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생산자·소비자·유통관련자들이 우리 쌀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수 있게 하여 쌀은 물론, 다양한 농산물이 대대적으로 수입이 되더라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첫째 : 국내 쌀에 대한 기관별 검사·검정 등 제도과약

둘째 : 외국의 쌀 검사(검정)제도(일본·미국 중심)과약

셋째 :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운영 실태과약 등

현행의 다양한 제도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쌀에 대한 품질차별화 방안과 민간검정기구설립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 참고로 핵심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국내 쌀 품질차별화 방안모색과 관련하여>

- 완전미기준(안)마련, 벼 재배약정농가선정심사기준(안)마련, 벼 재배 약정농가선정을 위한 세부심사요령(안)마련, RPC선정기준 및 RPC 선정을 위한 세부심사요령(안)마련, 완전미 표시인증번호 부여방법 (안) 등에 대하여 중점연구

<민간검정기구설립 방안모색과 관련하여>

- 조직의 구성, 소요인력, 장비확보, 업무범위, 검정대상 품목의 검정기준 및 검정방법, 소비자 신뢰제고방안, 소요자금 및 수익성 등에 대하여 중점연구

○ 그러나 금번연구는 연구기간, 연구소요 예산 등에서 충분한 뒷받침이 되지 않아 심층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다소 미흡하였던바, 앞으로 외국산 쌀이 아무리 우리 시장을 공략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심층연구는 지속되어야할 것으로 여겨짐.

아무튼 본 연구결과를 실행에 옮길 경우,

○ 생산자·종자·포장을 엄선하여 재배표준화에 의한 비배관리, 수확, 저장, 관리, 가공, 사후관리 등 완전미 생산 전 과정은 물론, 사후관리 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어 명실상부한 완전미 생산으로 우리 쌀에 대한 대외경쟁력 확보 가능

- 현재 약 1,900여종이 난립하고 있는 쌀 브랜드정비를 통한 차별화가 가능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쌀 선택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케 하여 우리 쌀에 대한 신뢰도 제고기여
- MMA 수입쌀 검정과 관련한 외화절약실현 등 민간검정기관을 중심으로 쌀 품질고급화,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개발 수행함으로써 현행 고비용 저효율의 System에서 저비용 고효율System으로 전환하는 등 쌀 품질관리의 전문기관으로서 그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여겨짐.

(별표 제1호)

벼 재배 약정농가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항목 및 심사기준	평점
<p>1. 생산자(조직) 자질, 능력</p> <p>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조직원을 충분히 확보한 견실한 생산자단체이거나 전업농업인으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자</p> <p>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을 충분히 확보한 생산자 조직이거나 전업농업인으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자</p> <p>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으나 조직원 확보 및 능력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경우</p> <p>라. 위의 “다”에 미달하는 경우</p>	수 우 미 양
<p>2.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p> <p>가.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재배하는 등 차별화 되어 표시인증품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p> <p>나.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 방법으로 재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p> <p>다. 산지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도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p> <p>라. 위의 “다”에 미달하는 경우</p>	수 우 미 양
<p>3. 생산포장 입지 및 생산조건</p> <p>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표시인증 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에 집단화된 지역(이하 “단지”라 한다)으로 “단지”가 1개소이고,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p> <p>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단지”가 2개소 이하이고,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p> <p>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적으며, “단지”가 3개소 이하이고,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p> <p>라. 위의 “다”에 미달하는 경우</p>	수 우 미 양
<p>4. 생산기술 수준</p> <p>가. 품질기준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경우</p> <p>나. 품질기준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양호한 경우</p> <p>다. 품질기준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미흡한 경우</p> <p>라. 위의 “다”에 미달하는 경우</p>	수 우 미 양

항목 및 심사기준	평점
<p>5.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p> <p>가. 품질기준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종자 등)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p> <p>나. 품질기준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종자 등)를 갖추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p> <p>다. 품질기준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종자 등)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p> <p>라. 위의 “다”에 미달하는 경우</p>	<p>수</p> <p>우</p> <p>미</p> <p>양</p>
<p>6. 자체 품질 관리 수준</p> <p>가. 영농일지를 1년이상 기록하고,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 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p> <p>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관리가 양호한 경우</p> <p>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 실태가 보통인 경우</p> <p>라.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 하거나, 위의 “다”에 미달하는 경우</p>	<p>수</p> <p>우</p> <p>미</p> <p>양</p>
<p>7.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 참여 등 열의도</p> <p>가.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 출하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한 실적이 3회 이상 있는 경우</p> <p>나.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 출하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한 실적이 2회 이상 있는 경우</p> <p>다. 지도 및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품 생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p> <p>라. 위의 “가,나,다”에 미달하는 경우</p>	<p>수</p> <p>우</p> <p>미</p> <p>양</p>
<p>8.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자재 확보</p> <p>가. 생산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 정선,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p> <p>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나 품질관리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경우</p> <p>다.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 등의 확보 내용이 미흡한 경우</p> <p>라. 위의 “다”에 미달하는 경우</p>	<p>수</p> <p>우</p> <p>미</p> <p>양</p>

(별표 제2호)

쌀 생산 RPC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여건	기본항목	세부항목	세부 항목별 심사 및 배점 기준			평점	소계	
			우수(5점)	양호(3점)	보통(1점)			
일 반 여 건	1. 생산자 자 질 및 가 공 시 설 운 영 능 력 (10점)	가. 생산자 자 질	품질·포장·표시에서 하자 없는 쌀을 연중 15천톤 이 상 생산할 수 있는 경우	품질·포장·표시에서 하자 없는 쌀을 연중 10천톤 이 상 생산할 수 있는 경우	품질·포장·표시에서 하자 없는 쌀을 연중 5천톤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경우			
		나. 가공시설 운영경력	7년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인 경우			
	2. 대외 유명도 (5점)	가. 생산지 선호도	소비자, 유통관계자의 여 론수렴결과 생산지의 선 호도가 90%이상 높게 나 타난 경우	소비자, 유통관계자의 여 론수렴결과 생산지의 선 호도가 70%이상 높게 나 타난 경우	소비자, 유통관계자의 여론 수렴결과 생산지의 선호도 가 50%이상 높게 나타 난 경우			
	3. 대외신용 도(20점)	가. 인증 경력	품질인증을 받은 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나. 제품판 매가격	자사제품의 쌀이 시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경우	자사제품의 쌀이 시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쌀보다 20kg포 대당 1000원 이상 3000원 이하 낮게 거래되고 있는 경우	자사제품의 쌀이 시중 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쌀보다도 20kg포대당 3000원 이상 6000원 이하 낮게 거래되 고 있는 경우			
		다. 자본동 원능력	계약재배, 생산, 보관, 가공, 출하, 판매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70% 이상 충당 가 능한 경우	계약재배, 생산, 보관, 가 공, 출하, 판매 등에 소요되 는 자금을 50% 이상 충당 가능한 경우	계약재배, 생산, 보관, 가 공, 출하, 판매 등에 소요 되는 자금을 30% 이상 충 당 가능한 경우			
		라. 행정처 분 경력	주의, 경고 등 처분경력이 조사일로부터 3년간 없는 경우	주의, 경고 등의 처분경력 이 조사일로부터 2년간 없는 경우	주의, 경고 등의 처분 경력이 조사일로부터 1년간 없는 경우			
	생 산 여 건	1. 재배포 장조건 (10점)	가. 수계 토 양 대기오염 여부	오염 및 피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	오염우려는 예상되나 피 해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오염 및 피해의 우려가 다소 예상되는 경우		
			나. 원료벼 재배의 집단화	집단화율이 100%인 경우	집단화율이 90%이상 인 경우	집단화율이 80%이상 인 경우		

여건	기본항목	세부항목	세부 항목별 심사 및 배점 기준			평점	소계
			우수(5점)	양호(3점)	보통(1점)		
생산여건	2.생산자 재밋시설 (20점)	가. 재배품종	원료벼 전량이 도 대표품종이며 만생종을 확보한 경우	원료벼 50%이상은 만생종을, 50%이하는 중생종 품종을 확보한 경우	원료벼 50%이상이 조생종인 경우		
		나. 화력건조 및 원료벼 보관시설	화력건조기는 온도와 수분의 자동제어가 가능한 순환식 이상의 건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료벼 보관시설은 제습장치가 있는 저장빈(또는 평창고)·사일로, 단열재사용창고를 보유하고 있고 연중 가공능력 90%이상의 원료벼를 저장할 수 있는 경우	화력건조기는 온도와 수분의 자동제어가 가능한 순환식 이상의 건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료벼 보관시설은 제습장치가 있는 저장빈(또는 평창고)·사일로·단열재사용창고 중 어느 한 가지를 보유치 않고 연중 가공능력 70%이상의 원료벼를 저장할 수 있는 경우	화력건조기는 온도와 수분의 자동제어가 가능한 순환식 이상의 건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료벼 보관시설은 제습장치가 있는 저장빈(또는 평창고)·사일로·단열재사용창고 중 2가지를 보유치 않고, 연중 가공능력 50%이상의 원료벼를 저장할 수 있는 경우		
		다. 기타 가공 시설	미곡종합처리장으로서 완전미(head rice)를 가공할 수 있고 ISO인증을 받은 시설인 경우	미곡종합처리장으로서 ISO인증은 받지 않았으나 완전미(head rice)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인 경우	미곡종합처리장으로서 제현, 정백 포장공정 등이 최신시설인 경우		
	라.가공능력	1일 10시간기준 규격제품 30톤 이상 생산	1일 10시간기준 규격제품 20톤 이상 생산	1일 10시간기준 규격제품 10톤 이상 생산			
3.생산기술 수준 (10점)	가.가공책임자의 경력	가공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우	가공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가공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우			
	나.가공책임자의 교육훈련참여도	교육훈련과 선진지 견학을 각 7회 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훈련과 선진지 견학을 각 5회 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훈련과 선진지 견학을 각 3회 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 원료벼의 건조관리	목표수분까지 45℃이내의 온도에서 수매량 전량 건조 또는 수분이 17~18%가 될 때까지 40℃이내의 온도에서 건조한 후 목표수분까지 강제통풍 하는 경우	목표수분까지 50℃이내의 온도에서 수매량 전량 건조 또는 수분이 17~18%가 될 때까지 45℃이내의 온도에서 건조한 후 목표수분까지 강제통풍 하는 경우	-		

여건	기본항목	세부항목	세부 항목별 심사 및 배점 기준			평점	소계
			우수(5점)	양호(3점)	보통(1점)		
품질관리여건	1. 자체 품질 관리 수준 (25점)	나. 원료벼의 저장관리	건조시설의 청소, 훈증소독, 곡온관리, 결로대책, 병충해방제, 통풍실시 등 원료벼 저장과정중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원료벼 소진까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매일 성실히 기록하며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는 경우	원료벼 저장과정중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원료벼 소진까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일정기간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기록하는 등 관리를 성실히 하고 있으나 원료벼의 관리 항목 중 어느 1가지라도 생략이 된 경우	원료벼 저장과정중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원료벼 소진까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하고 있으나 원료벼의 관리 항목 중 2가지 이상이 생략된 경우		
		다. 가공과정 관리	가공중에는 원료정선, 제현공정, 현백공정, 제품정선, 제품포장 등 각 공정별로 성실히 관리하며 관리대장에 활동상황을 매일 기록하여 근거를 남기고 있는 경우	가공중에는 각 공정별로 관리는 대체적으로 잘하는 편이나 관리대장의 기록 실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각 공정별 관리 및 대장의 기록실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라.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확보	별표기준표상의 시설 및 기자재를 전부 완비하여 운용을 잘하고 있는 경우	별표기준표상의 시설 및 기자재 중 1건이 완비가 안 되어 있으나 여타 기자재의 운용은 양호한 경우	별표기준표상의 시설 및 기자재 중 2건이 완비가 안 되어 있으며, 여타 기자재의 운용도 미흡한 경우		
		마. 제품 관리	1일 생산량 전량을 표준 팬릿에 적재가능하며 분진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하는 경우	1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표준 팬릿에 적재가능하며 분진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하는 경우	1일 생산량의 60% 이상을 표준 팬릿에 적재가능하며 분진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하는 경우		
심사결과 득점 합계							

<참고자료>

1. 國內 쌀에 대한 機關別 檢査·檢定 等の 制度

가. 國立農産物品質管理院

□ 農産物履歷追跡管理制度 (Traceability)

1. Traceability 概要

가.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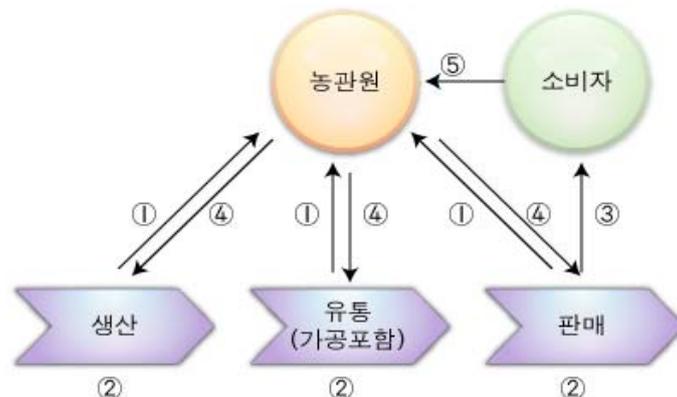
"농산물이력추적관리"라 함은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함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4호의3)

※ 외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 ▶ 유럽연합(EU식품법, 2002) : 식품, 사료, 축산가공품 및 이들의 원재료에 대하여 생산, 가공, 유통 등 모든 단계를 통해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
- ▶ 일본 : 생산, 처리·가공, 유통·판매의 식품사슬 각 단계에서 식품과 그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것
-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2004): 생산, 가공, 유통의 각 단계별로 식품의 이동을 추적하는 것 (the ability to follow the movement of a food through specified state(s) of production, processing and distribution)

나. 국내도입현황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 최종 소비까지 정보를 기록·관리 하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를 2006년 1월부터 자율 등록 방식으로 도입



- ① 농관원에 이력추적관리등록신청 ② 이력추적관리등록자(생산·유통·판매단계)의 관련정보 기록·보관
③ 이력추적농산물 판매 ④ 각 단계별 이력추적 ⑤ 소비자가 농산물의 이력정보 확인

(1) 목적

농산물에 대한 추적과 역추적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문제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취하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2) 근거법령

-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4호의3 및 제7조의 5 (2005.8.4 개정)
- ▶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농림부 고시 제2006-5호)
-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제2006-4호)

(3) 추진경과

- ▶ '04.3월 : 이력추적관리제도 추진방안 마련
- ▶ '04.9월 : "이력추적관리 가이드라인" 발표
- ▶ '04.10월 : 한우 이력추적시스템사업 실시
- ▶ '05.8월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공포(이력추적관리제 도입)
- ▶ '03~'05년 : GAP 시범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이력추적관리 시범사업을 실시

※ '05년 이력추적관리 시범사업실시 : 47품목, 965농가

(4) 기대효과

- ▶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신뢰성 향상으로 우리농산물의 국제 경쟁력 강화
- ▶ 유통 중인 농산물에 문제 발생시 추적을 통한 신속한 원인의 규명과 해당 농산물의 회수가 가능
- ▶ 농산물에 대한 생산·유통·판매 단계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다. 외국의 동향

- ▶ 이력추적관리(Traceability)에 대한 개념 및 구체적인 적용상황은 각국마다 조금씩 다르나 광우병 파동 이후 식품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축산물을 중심으로 이력추적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차 농산물로 확대 되어가고 있는 추세임
- ▶ 특히, 이를 시행하고 있는 각 국가들은 수입농축산물에 대해서도 이를 점차요구하고 있으며, 이력추적관리(Traceability)의 도입은 국내의 소비자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장벽의 해소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1) 유 럽

- ▶ 프랑스를 중심으로 벨기에, 네덜란드, 아일랜드, 독일, 영국 등에서 식육을 중심으로 도입이 의무화 되면서 유럽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 유럽연합(EU)에서는 쇠고기 라벨링을 강제하는 규칙[Regulation(EC)1760/2000, Beef Labeling Regulation]을 채택하고 2001년 1월부터 모든 회원국에 적용하도록 함
- ▶ 2005. 1월부터는 유럽의 전체 농식품과 사료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력추적을 위한 세부기준은 민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럽연합법에 규정하고 있음[EU 식품기본법 (Regulation No 178/2002) 제18조]
- ▶ EU 식품트레이스어빌리티 매뉴얼

(2) 일 본

- ▶ 일본은 BSE감염 소의 발생 및 식품 허위표시 사건이 속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2년도에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도입 준비

- ▶ 2003년 정기국회에서 「소의 개체식별정보의 관리와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채택됨에 따라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제가 의무화 됨
- ▶ 농산물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 품목별로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농협을 중심으로 이력추적제도와 유사한 생산이력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각 기록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정보를 취득하도록 전산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3) 북 미

- ▶ 미국은 유전자변형(GMO)농산물 수출국으로 유럽과 같은 이력추적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이력추적제의 요소가 일부 포함된 식품회수 프로그램이 있음
- ▶ 캐나다의 경우는 식품 회수프로그램에 이력추적관리(Traceability)가 도입되어 있음

라. 등록절차



(1) 이력추적관리제도 등록절차

- ① 등록신청(민원인→농관원)
- ② 심사일정 통보(농관원→민원인)
- ③ 등록·신청일로부터 42일 이내 등록증 교부(농관원→민원인)

(2) 이력추적관리대상 품목

※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대상품목과 동일

(3) 이력추적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① 농산물 이력추적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축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이력추적관리전산시스템 구축추진

※ 이력추적등록 및 우수농산물인증(GAP)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전산시스템구축은 2006년까지 완료예정

(4) 등록 신청

▶신청대상자

- 이력추적대상 품목 농산물을 생산하는 주체(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이력추적대상 품목 농산물의 유통업자(APC, RPC, 유통업체 등)
- 이력추적대상 품목 농산물의 판매업자

▶구비서류

- ①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 ②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해당 단계별 관리계획서
- ③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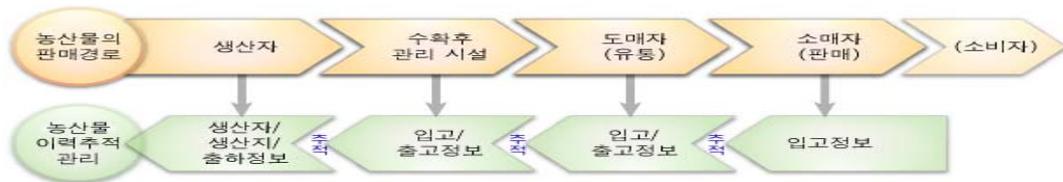
(5) 등록기준 : 농관원 고시 제2006-4호 [별표1]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세부기준

- 생산·유통·판매단계별 정보의 기록·관리
- ① 관리품을 누가 누구에게 공급하는지 기록관리 할 수 있어야 함. 다만 생산·유통·판매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② 농산물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재 등에 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있어야하며, 유통자가 포장을 하는 경우 생산자는 포장재 등에 관리번호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③ 농약 등 안전성 위해가능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생산·유통·판매 단계별 정보의 제공 : 생산·유통·판매자는 관리품을 서류나 전산기록 등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이력추적관리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적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관리품의 구분관리 : 생산·유통·판매자는 생산·유통·판매시 관리품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 할 수 있어야 함
 - 생산·유통·판매단계별 사후관리체계 확립 : 생산·유통·판매 단계별로 등록 신청자가 제출한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서는 관리품이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리콜, 폐기, 용도변경 등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체계구축 : 당해 농산물의 유통경로의 생산·유통·판매자 모두가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함

(6) 등록 후 생산·유통·판매 단계별 기록·관리 사항

- 생산자
 - 생산정보 : 생산자/재배지/면적/품목/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사용 내역
 - 출하정보 : 날짜/품목/수확 후 관리시설 또는 출하처/물량/식별단위(로트) 번호 또는 이력추적관리번호
 - 수확 후 관리시설 대표자
 - 입고정보 : 날짜/생산자/품목/물량
 - 출고정보 : 날짜/품목/판매처/물량/식별단위(로트) 번호 또는 이력추적관리번호
- ※ 입고정보기록장 또는 출고정보기록장 등에 입고품과 출고품과의 연계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유통자(수확 후 관리시설 대표자 이외의 자)

- 입고정보 : 날짜/구입처/품목/물량
- 출고정보 : 날짜/품목/판매처/물량
- ※ 입고정보기록장 또는 출고정보기록장에 등에 입고품과 출고품과의 연계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판매자(입고정보만 기록·관리) : 날짜/구입처/품목/물량
- ※ 유통자가 계산서·거래명세서 등에 입고정보의 내용을 기록하여 판매자가 동 계산서 등을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판매자는 입고정보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7) 등록유효기간

- 등록유효기간은 3년(법 제7조의5 제5항)
- 등록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등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유효기간연장신청서**(시행규칙 소정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8) 등록사항 변경

이력추적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사항변경신고서**(시행규칙 소정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 GAP(優秀 農産物)管理制度

1. GAP 概要

가. 개념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의 농업 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기준임. 또한 GAP는 자연환경에 대한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재배, 수확, 수확후 처리, 저장과정 중에 농약·중금속·미생물 등의 관리 및 그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체계임

나. 도입의 필요성

- (1) 국가 농산물생산관리시스템을 UPGRADE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 및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요구 증대
 - ▶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농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농산물 생산단계의 GAP관리체계와 생산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생산 → 유통·가공 → 판매에 이르는 일관화 된 농산물관리체계 마련의 일환
- (2) 농산물 안전에 관련된 국제동향에 적극 대응
 - ▶ Codex 등 국제기구에서 기준안을 마련 중인 제도로 국내 주요 과일, 채소류 수출국인 일본, 미국 등이 Codex의 과일, 채소류의 안전생산기준 내용을 수입 요건화 할 경우 국산 과일·채소류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3) DDA 이후 생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산물 품질관리제도 도입

- ▶ 농산물 품질관리 관련법 체계뿐만 아니라, 연구지원, 인프라구축, 인력확보 등 전반적인 안전한 농산물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DDA이후 수입산 농산물과 대응할 수 있는 품질경쟁력 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농촌 환경 개선 및 농가 자원방안(직불제도) 등의 농촌지원정책과 연계

(4) 농촌의 자연환경 보호 및 농업의 지속성 확보

- ▶ 저투입 지속형 농법으로 전환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함

다. 도입 효과

(1)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 ▶ 소비자가 만족하는 투명한 우수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신뢰 향상으로 수익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음

(2) 농산물 품질관리제도 도입에 의한 생산농가의 경쟁력 확보

- ▶ 국산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수입 농산물에 GAP를 적용할 경우 수입억제 효과도 기대됨. 한편, 통명거래에 의한 품질관리가 용이해짐.
- ▶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의하여 자국에서 GAP를 시행하게 되면 수입농산물에 대하여도 동등수준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음

라. 관련 법령

- ▶ 농산물품질관리법
-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 우수농산물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제2006-3호)
- ▶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 및 대상품목(농림부 고시 제2006-6호)
-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제2006-4호)
- ▶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농림부 고시 제2006-5호)
- ▶ 우수농산물관리기준(농진청 고시 제2006-4호)

2. 해외동향

가.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 ▶ 1997년, "식품위생에 대한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신선상태로 소비하는 과일, 채소류의 안전생산체계에 대해 회원국 간 협의를 시작함.
- ▶ 2003년 7월 1일, 본회의에서 과일류와 채소류에 대한 생산·취급기준을 비준하였음
 - 신선 과일, 채소류의 위생 실행규범(안)
 - [Draft Code of Hygienic Practice for Fresh Fruits and Vegetables](#)

나. FAO (세계 식량농업기구)

- ▶ UN산하기구인 FAO는 기존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은 생산과 소비를 배제한 중간단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오염된 사료에 의한 광우병 등 식품관련 질병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며, 2003년 4월, 화학물질, 미생물 등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식품체인접근법 (Food Chain Approach)' 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였음.

* 식품체인접근법

-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식품안전 예방조치임.
- 이 식품체인접근법에서의 토양·수질관리, 농·축산물 생산, 저장, 가공, 폐기물처리 등 농림축산업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임.
 - [우수농산물관리기준\(GAP\) 2001. 10](#)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다. EU (유럽 연합)

- ▶ EU는 동구유럽의 EU 가입을 위한 농업실행조건으로 GAP를 제시하였으며, 일반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CAP) 제정을 통해 향후 GAP 수준 이상의 영농에 대해서만 보조할 것임을 시사함.
- * EUREP(Euro-Retail Produce Working Group)
 - EU의 소비자 요구에 맞춘 안전한 신선과일·채소류 생산기준인 GAP를 개발하고, 국제적 인증기관으로 추진중임.
 - 2001년, GAP인증 등의 관리를 위하여 FoodPLUS 설립
 - 국제적 공신력을 인정받아 주요 수출국에서 EUREP의 GAP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중임
 - 생산자 조직과 유통업체간의 계약시 GAP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계약위반시 위약금 등으로 제재함.
 - [EUREPGAP개요](#)
 - [신선과일·채소류의 GAP Protocol \(EUREP\)](#)
 - [원예작물의 GAP Code\(EUREP\)](#)
 - [약용·향료작물의 GAP 지침서 \(Guidelines for GAP of Medicinal and Aromatic Plants\)](#)
 - [EUREP GAP Checklist \(Fruit and Vegetables\)](#)

라. 아시아

- ▶ 수출상대국의 식품안전성 요구에 맞추기 위한 제도로써 GAP를 도입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후진적 농산물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있음.
 - [중국 : 무공해 농산물 관리방법 \(농업부,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공동. 2002.4.29\)](#)
 - [중국 : 무공해 농산물 생산지 인정절차](#)
 - [말레이시아 : 농장인증계획\(Farm Accreditation Scheme, SALM\)](#)

마. 미주지역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등)

- ▶ 자국 국민들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GAP를 도입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시 수출국의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로써 GAP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미국 : 신선 과일·채소류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미생물관리 가이드 \(한글 자료\)](#)
 - [미국 : The Guide to minimize microbial food safety hazards for fresh fruits and vegetables. \(영문 자료\)](#)
 - [캐나다 : 최소가공 즉석식용 채소류에 대한 실행규범 \(Code of Practice for Minimally Processed Ready-to-Eat Vegetables\)](#)

3. 인증대상

가. 품목

분 류	작 물 명					
	쌀	콩	쌀보리	겉보리	맥주보리	밀
1. 식량작물(12)	옥수수	고구마	팥	감자	호밀	귀리
	참깨	들깨	땅콩	녹차		
3. 약용작물(29)	구기자	당귀	맥문동	율무	작약	황기
	인삼	천궁	오미자	지황	산약	황금
	산수유	시호	오갈피	백수오	택사	향부자
	마	도라지	감국	감초	곽향	독활
	사삼	우슬	삼백초	백출	복분자	
4. 버섯류(9)	양송이	느타리	팽이	영지	복령	동충하초
	노루궁뎅이	천마	새송이			
5. 채소류(28)	고추	배추	수박	풋고추	딸기	마늘
	오이	무	참외	대파	양파	호박
	상추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시금치	당근	가지
	멜론	생강	양배추	미나리	착색단고추	결구상추
	엔디브	잎들깨	케일	기타 쌈채류		
6. 과수류(14)	사과	배	단감	뽕은감	포도	복숭아
	자두	대추	매실	참다래	유자	양앵두
	살구	감귤				

나. 우수농산물 생산기술(공통)

1. 농산물 위해 요인	생물학적 위해 요인	화학적 위해 요인	물리적 위해 요인
2. 생산 단계	생산 환경	재배 시설	토양
	비료	농약	관개용수
3. 수확 단계	수확단계		
4. 수확후 단계	농산물 저장	농산물 운송	
5. 관리 단계	시설 설비	작업자	제품 취급
	저장 운송		

다. 우수농산물 생산기술(농산물별)

작물	식량	특용	약용	버섯
원예	채소	과수	화훼	

4. GAP인증절차

- ▶ 인증기관 : 농관원으로 부터 지정된 **전문민간인증기관**
- ▶ 인증기간: 1년(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제5항)
- ▶ 인증기준(시행령 제14조의2)
 - 우수농산물관리기준(농진청고시 제2006-4호)에 의해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것
 -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처리된 것(다만, 품목의 특성상 시설에서 처리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농림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은 제외)
 -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한 것
- ▶ 대상품목 : 총 96품목 (농림부 고시 제2006-6호 별표)
 - 식량작물(12), 특용작물(4), 약용작물(29), 버섯(9), 채소(28), 과수(14)

5. 사후관리

가. 생산과정조사

- 인증기관은 반기 1회 이상 인증품에 대한 생산과정을 조사
 - * 인증기관이 지정취소 등의 사유로 조사할 수 없는 경우 관할 농관원 출장소장이 실시
- 생산자단체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표본 추출하여 조사가능
- 조사항목
 - 파종단계 : GMO종자 여부, 재배필지가 농산물 생산계획서상의 재배필지와 일치 여부 등
 - 생육단계
 - 시비, 병충해 방제, 각종 자재투입 등 재배포장의 관리사항
 - 농약안전사용 기준의 준수 및 화학비료 사용 적정여부
 - 냉해, 우박, 병충해 등 인증품의 피해 발생 유무
 - 농약의 사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배포장에서 가장 의심이 가는 곳을 선정하여, 시료(생산물, 작물체, 토양 등)를 채취, 잔류농약분석을 의뢰
 - 수확·저장·보관·가공·포장·출하단계
 - 재배 품종별로 적기 구분 수확 실태 및 비인증품 혼입 여부
 - 저장·수송시 생산물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
 - 비인증품 혼입 및 출하품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 수확 후 관리시설 적정성 여부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이행여부
 - 기타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등
- 조사결과 보고 : 위반사항 발견시 근거자료를 첨부보고
 - * 특히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위반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보고하여야 함

나. 시판품 조사

- 농관원은 반기 1회 이상 인증농산물에 대하여 시판품조사 실시
- 조사 사항
 -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 인증을 받은 농산물인지 여부 또는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여부
 -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 기타 인증기준과의 적합 여부 등

다. 안전성조사

- 인증기관 및 농관원(출장소)은 생산과정조사·시판품조사를 실시할 때
- 조사원 판단 : 인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할 경우 시료채취 분석의뢰
 - * 조사원은 시료채취시 인증포장에서 가장 의심이 가는 곳을 선택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반드시 이해당사자(인증자)가 입회하고 채취시료에 함께 봉인하여야 함
- 의뢰처 : 인증기관이 위탁협약을 체결한 공인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하거나 인증자가 별도로 희망하는 공인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의뢰

라. 조사결과 증거서류 확보

- 조사원이 인증품에 대하여 생산과정·시판품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별지 제8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 조사원이 생산과정·시판품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입회거부·방해·기피, 품위·표시사항 확인, 관계장부·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 조사원이 생산과정·시판품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조사거부·방해·기피 등으로 시료를 수거하지 못하였을 때
- 조사원은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 인증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인증품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
-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였을 때

마. 위반자처리

(1) 행정처분 대상 : 위반사실을 출장소장에게 통보

- 인증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당해 인증품 생산지역을 관할하는 출장소장에게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통보(농관원 고시 별지 제10호서식)
- 출장소장은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행정처분기준(영 제19조, 별표 1)에 따라 처분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회신
- 행정처분시 유의사항
- * 인증기준 위반의 원인이 인증자 및 그 관련자의 잘못으로 기인된 것인지, 불가항력 등의 원인을 명확히 조사 규명하여 처분하여야 함
- * 조직의 경우 조직원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조직까지 연대처벌
- * 조직의 연대 처분시 조직원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을 규정하는 등

(2) 고발대상

- 법 제35조 위반 :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를 하거나 비인증품을 혼합한 경우
- 법 제36조 위반 : 출장소장의 행정처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우수농산물 인증품 행정처분 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때	법 제11조	시정명령	표시정지 1월	표지정지 3월
(2)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때	법 제11조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인증취소
(3) 우수농산물인증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11조	표시정지 3월	인증취소	-
(4) 우수농산물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우수농산물인증품”으로 표시한 때	법 제11조	인증취소	-	-
(5) 우수농산물인증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	법 제11조	인증취소	-	-

□ 親 環境認證

1. 개 요

가. 목 적

-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임
-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 또는 둔갑표시하는 것으로부터 생산자·소비자를 보호
- 유통과정에서의 신뢰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체계 확립

나. 추진 배경

- 그동안 증산위주의 고투입농법에 의존해온 결과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협
- 지나친 농약사용은 토양미생물, 천적감소 등 생태계 교란, 수질오염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문제 야기
- 국제적으로 농업·환경·무역의 연계농의가 강화되고, Codex에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는 등 관련 국제규범이 제정됨으로써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질 전망이다
-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

다. 인증품의 종류

- 농산물 :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 축산물 : 유기축산물, 전환기유기축산물

라. 인증기준

- 농산물 : 경영관리, 재배포장 용수 종자,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축산물 : 사육장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기반, 가축의 출 처 및 입식,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품질관리 등
 - ※ 생산조건별 세부기준은 [규칙 제9조의 별표 3](#) 참조
 -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제7조관련\)](#) 참조

2. 토양수질기준

가. 토양오염 우려기준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1조의4관련\(개정 2001.12.31\)](#)]

나. 수질기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2조관련/2002.3.01](#))

- (1) 하천
- (2) 호소
- (3) 지하수([지하수법제19조에 의한 지하수기준](#))

다. 먹는 물의 수질기준([먹는물관리법제5조](#) 및 [수도법제18조](#))

3. 토양수질기준

생산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생산여건과 품질관리상태를 심사, 인증여부를 통보해 주고생산·출하과정 조사를 거쳐 적격품에 한해 인증표지 표시후 출하

인증과정: 인증신청→인증심사→심사결과통보→생산 출하과정조사→시판품조사

4. 사후관리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 등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하며, 조사결과 인증 기준위반 등 이상품 발견시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5. 실시경과

- 유기, 무농약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1993. 12.1)
- 저농약재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1996.3.28)
- 환경농업육성법 제정(1997.12.13)
- 유기농산물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 시행(1998. 11. 6)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의무인증제 시행(2001.7.1)

6. 법적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제17조의 3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4조 내지 제17조

7. 인증기관 지정

가. 지정대상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2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
- 외국에서 생산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지정기준

조직·인력, 시설, 인증업무규정이 적합하여야 한다. (규칙 제11조의 별표 4 참조)

다. 지정절차

(1) 인증기관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규칙 제10조 관련)

- 인증기관지정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 심사계획에 따라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및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며,
-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정하여 인증기관지정서(별지 4호 서식)를 교부하고 고시

(3)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

- 인증기관이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8. 인증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20조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가. 사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7조의6 제1항 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의6 제1항 제2호	경 고	업무정지6월	지정취소
다.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7조의6 제1항 제3호	업무정지3월	업무정지6월	지정취소
라.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법 제17조의6 제1항 제4호	업무정지6월	지정취소	
마.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원인이 인증기관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법 제17조의6 제1항 제4호	업무정지3월	업무정지6월	지정취소

□ 안전성 調査

1. 안전성조사 개요

- ▶ 안전성조사는 농가의 생산포장에 재배되고 있거나 저장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대상으로 시장 출하 전에 조사하고,
- ▶ 조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은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폐기·용도전환·출하연기 등의 조치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 아무리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라도 안전하지 못하면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며 결국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저하됩니다.

가. 추진경과

- ▶ 1996. 8 : 농산물안전성조사업무처리요령 고시
- ▶ 1997. 3 : 농수산물가공식품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안전성조사근거 조문 마련
- ▶ 1999. 1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정
- ▶ 1999. 12 : 농산물안전성조사업무처리요령 개정 고시
- ▶ 2002. 01 :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 안전성조사 국가·지방공동사무

나. 실시근거

-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 ▶ 농산물안전성조사업무처리요령(농림부 고시 제99-86호)

2. 안전성조사 방법

가. 조사대상 농산물

- ▶ 쌀, 배추, 사과 등 1일 섭취량이 많거나 상추, 깻잎과 같이 조리하지 않고 날로 먹는 농산물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소비자의 관심이 큰 신선 채소류는 중점조사 품목으로 지정하여 집중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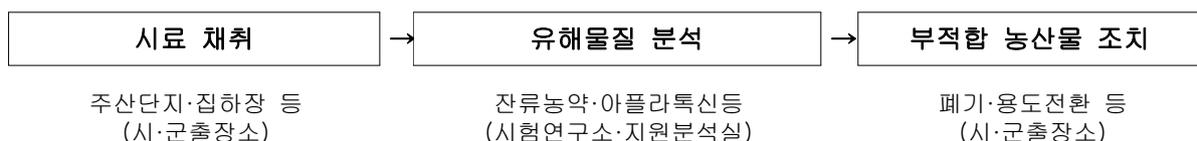
나. 조사대상 유해물질

-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곰팡이독소 등을 조사하며,
- ▶ 지금까지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품이 많이 발생된 품목, 잔류기간이 긴 농약 또는 수확기살포농약을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다. 조사시기 및 장소

- ▶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거나 수확 후 저장중인 농산물의 출하예정일을 감안하여 시장출하 전에 실시합니다.
- ▶ 주산단지 및 시설재배단지의 포장, 산지 집하장 등에서 중점 조사합니다.

라. 조사절차



마. 안전성 분석기관

- ▶ 전국 시·도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9개 분석실에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정밀분석을 실시합니다.

< 권역별 안전성 분석기관 >

구 분	시 험 연구소	경기지원	강원지원	충북지원	충남지원	전북지원	전남지원	경북지원	경남지원
관할구역	전 국	서울,인천,경기	강 원	충 북	대전,충남	전 북	광주,전남 제주	대구,경북	부산,경남 울산
소재지 (전화 번호)	서울 영등포 (02-2165-6112)	경기 안양 (031-447-2337)	강원춘천 (033-252-6028)	충북청주 (043-287-6060)	대전 중구 (042-226-6080)	전북 전주 (063-243-9530)	광주 동구 (062-970-6245)	대구 북구 (053-327-0701)	부산 연제구 (051-852-8045)

바. 부적합품 처리

- ▶ 안전성조사 결과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생산자나 소유자에게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등의 처리방법과 처리기한을 정하여 고지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부적합 농산물이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 단계>

- ▶ 조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초과사실 및 당해 농산물의 처리방법·처리기한을 정하여 해당 농가에 고지
- ▶ 고지한 처리방법에 따라 생산자 스스로 폐기·용도전환·출하연기 등 조치
- ▶ 잔류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진단하여 농약안전사용 지도 등 재발방지

<<처리방법>>

- 출하연기 : 당해 유해물질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해·소실되어 일정기간 후에 식용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까지 연기)
- 용도전환 : 당해 유해물질의 분해·소실되는 기간이 길어 식용으로 출하할 수 없으나 사료용, 종자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폐 기 : 출하연기, 용도전환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단계>

- ▶ 생산자 스스로 고지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 생산단계 농산물(농림부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적용) : 직접 고발
 - 저장·출하 전단계 농산물(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잔류허용기준 적용) : 장에게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 요청
- ▶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하여 후작물 조사 또는 익년도 안전성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지속적인 관리

3. 안전성조사의 효과

-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국민건강 보호
 - 재배포장, 저장창고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장출하를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 우리 농산물 경쟁력 향상으로 안정적인 소득증대
 - 우리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들이 믿고 찾도록 함으로써 수입농산물에 비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 농산물 수출증대
 - 철저한 안전성 관리로 재배·생산된 농산물을 수출하면 외국의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고 수출증대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4. 관련규정

1. 농산물 안전성조사업무처리요령 (농림부 고시 제1999 - 86호)
2. 생산단계농산물의 유해물질잔류허용기준 (농림부 고시 제1999 - 95호)

[별표 1] 유해물질잔류허용기준(단위 : ppm)

□ GMO農産物 表示

1. 개념과 정의

가. 유전자변형농산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의 개념.

- ▶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분리·결합하여 자연교잡에서는 육성되지 않는 의도한 특성 (제초제저항, 내병·내충, 품질의 특성화 등)을 갖도록 한 농산물
- ▶ GMO는 재배상의 유익성과 잠재적 위해성을 동시에 내포
 - 유익성 : 21세기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각광
 - 위해성 : 잠재적 인체위해성, 환경문제, 사회윤리적 문제등

나.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정의

- ▶ 「농산물관리법」 상의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정의
 -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
- ▶ 「식품위생법」 상의 유전자 재조합식품의 정의
 - 유전자 재조합식품이란 생물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 EU(유럽연합)의 정의

- 자연교배나 자연결합으로는 생성될 수 없는 방법으로 변형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농산물

□□ USDA(미농무성)의 정의

- 염색체 변형뿐 만 아니라 이종교배의 기술로 만들어진 농산물

□□ CODEX(식품표기분과위원회)의 정의

- 자연적인 증식 또는 재조합에 의하여 일어날 수 없는 방법으로 유전 물질이 변형된 농산물

2. 세계의 관리현황

가. 상품화 및 재배 현황

▶ 상품화현황

□□ 상품화된 GMO작물 : 21개 작물 163개 품종

- 옥수수 36, 유채(2종) 25, 감자 20, 면화 19, 대두 12, 카네이션 11, 토마토 8, 쌀 6, 밀 5, 담배 4, 사탕무 3, 치커리 3, 알팔파 2, 파파야 2, 호박 2, 메론, 아마, 편두, 해바라기, Bent grass 각 1

▶ 재배현황 (2005년 재배면적 원문)

□□연도별 재배면적 : ('96) 170만ha → ('99) 3,990 → ('00) 4,420 → ('01) 5,260 → ('02) 5,870
→ ('03) 6,770 → ('04) 8,100 → ('05) 9,000

- '96년 대비 2005년 재배면적 : 53배

□□ 국가별 재배면적(2005) : 미국 4,980만ha(55%), 아르헨티나 1,710(19), 브라질 940(11), 캐나다 580(6), 중국 330(4), 기타 460(5)

-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중국의 GM작물의 재배면적이 전체의 95%

- 기타 국가(16개국) : 파라과이, 인디아, 남아공, 우루과이, 호주, 멕시코, 루마니아, 필리핀, 스페인 등

□□ 작물별 재배면적 : 콩 5,440만ha(60%), 옥수수 2,120(24), 면화 980(11), 유채 460(5) 등

□□ 특성별 재배면적 : 제초제저항성 6,370만ha(71%), 해충저항성 1,620(18), 제초제저항성과 해충저항성 1,010(11)

□□ 경지면적 대비 GMO 면적 : 콩 8,600만ha의 63.3%, 옥수수 14,000의 15.1%, 면화 3,200의 30.6%, 유채 2,300의 20.0%

- 전세계 경작면적 1,369백만ha(2000, FAO) 대비 6.6% GMO 재배

□□ 재배 농가수 : ('00)350만→('01)500→('02)600→('03)700→('04)825→('05)850

※출처 : [상품화 현황\(AGBIOS\)](#), [재배면적\(ISAAA\)](#)

나. GMO 관리 국제동향

▶ 미국·캐나다

GM식품이 그 영양성분 또는 알레르기 유발 등 기존의 식품과 다른 경우에 한해 이를 표시토록 규정, 그 외에는 자발적 표시 권장

▶ EU

콩, 옥수수를 원료로 한 식품중 GM단백질이나 DNA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유전자변형 콩·옥수수로 생산 됐다는 문구 의무 표시

▶ 일본

콩, 옥수수, 감자, 유채, 면화 등 원료농산물과 및 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한 30개 식품에 대해 GMO 의무 표시

▶ 중국

농업유전자변형생물표지관리방법에 따라 유전자변형 콩, 옥수수, 유채, 면화, 토마토의 표시를 의무화하여 2002.3.20부터 시행

▶ 기타국가

호주·뉴질랜드, 브라질 등은 2001. 12월부터 표시제를 시행중이며, 이집트, 홍콩,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도 표시제를 도입하는 단계임

☞ 현재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가는 국내 규정에 의한 환경·인체의 안전성평가를 통해 안전하다고 승인된 품목에 대해서만 표시제를 적용중임

▶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를 제정(UNEP, '00.1.) 하여 2003.9월부터 시행 중이며, OECD, Codex 등에서 GMO의 안전성, 표시제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제정 중

▶ 현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GMO검정방법은 없으며 Codex에서 표준화방법을 논의중이나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

- EU, 일본에서도 각국 나름대로 검정방법을 개발하여 적용중이나 검정결과를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

▶ GMO에 대한 수출국과 수입국의 최근 입장

- GMO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며 표시제, 사후추적조사, 수입승인 등에 관한 국제규범을 제정 중에 있으나, 수출·입국간의 의견차이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

다. 主要 國家의 GMO 表示管理 現況

▶ 미국

- GMO의 안전성평가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인 규정으로 농무부에서는 GMO의 환경방출에 따른 안전성업무를 환경보호청(EPA)에서는 농약성분을 가진 GMO의 안전성업무를 담당, 식품의약품청(FDA)에서는 유전자변형 식품 및 사료의 안전성 검토
- GMO표시제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며 별도의 표시규정은 없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서 실질적 동등성 개념을 적용하여, GM식품이 기존의 식품과 구성성분·함량이나 알레르기 반응 등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에만 특별한 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

▶ EU (유럽의 관리제도)

- GMO 유통지침(90/220/EEC)에 의하여 “살아있는 GMO”(LMO)를 EU내에서 유통시키려면 사전에 환경 및 인체 안전성평가를 거쳐야 함
 - 6작물 14종 승인(콩1, 옥수수4, 유채4, 담배1, 치커리 1,카네이션 3)
- '97.5월 시행의 「신개발식품 규정(258/97)」에 의하여 GMO 가공식품(LMO 제외)을 EU내에서 유통시키려면 동 규정에 따라 인체안전성평가를 거쳐야 함
 - 식품용 승인현황 : 4작물 19종(콩1, 옥수수9, 유채7, 면화2) 승인
 - 사료용 승인현황 : 3작물 12종(콩1, 옥수수 7, 유채 4) 승인
- '98. 9월부터 GMO 표시규정(No. 1139/98, No. 258/97)에 따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유전자 변형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의 표시를 의무화
 - 비의도적 혼입을 허용치 : 0.9%
- '01.2. EU의회에서 인체유해여부조사, 유통경로추적, GM표시제를 골자로 하는 새 GM식품법안 승인하여 '02.10월부터 시행
- 기존은 회원국과 공동체에서 수행) 등

▶ 일본 (표시관련 규정)

- 농림수산성에서는 임의규정으로 GMO의 환경·사료 안전성평가, 후생노동성에서는 의무규정으로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평가실시
 - 식품으로 승인한 GMO : 7작물 75종(콩4, 옥수수25, 면화17, 유채15, 감자8, 사탕무우3, 알팔파
 - 사료로 승인한 GMO : 6작물 43종(콩4, 옥수수11, 유채 15, 면화8, 사탕무3, 알팔파2)
- 농림수산성은 2001.4.1부터 GM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시행
 - 표시대상품목 :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신선식품 및 가공식품 중 후생성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승인한 GMO
 - 농산물(6품목) : 콩, 옥수수, 감자, 유채, 면화, 알팔파 등
 - 가공식품(31품목) : 콩, 옥수수, 감자, 알팔파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 표시기준
 - 유전자조환 농산물 : “유전자조환”, “유전자조환인 것을 분별”로 표시
 - 구분유통하지 않은 농산물 : “유전자조환 불분별”로 표시
 - 비유전자조환 농산물 : “유전자조환 아님”, “유전자조환이 아닌 것을 분별”로 표시.
- 다만, 비유전자조환 농산물의 GMO관련 표시는 자율(임의)표시
- 비의도적 혼입률 허용치 : 5%
- 위반자에 대한 조치 : 1차 지시(+공표)→2차 명령(+공표) →3차 벌칙
(개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 벌금, 법인 : 1억 엔 이하의 벌금)

▶ **중국**

- 중국 농업부는 농업유전자 변형생물안전관리조례('01.6.6)를 제정·공표하고, 관리 규정으로 농업유전자 변형생물표지관리방법('02.1.10)를 고시하여 '02.3.20부터 시행
- 대상품목은 5개 품목 17종(1차 지정목록) : 대두, 옥수수, 유채, 면화종자, 토마토(해당품목종자 포함)와 대두, 옥수수, 유채 토마토 가공식품 등
- 표시기준
 - GMO의 경우 : “유전자변형00”
 - GMO가공품의 경우 : “유전자변형00가공품”, “가공원료는 유전자변형○○임”
- 다만, GMO 또는 GMO성분을 함유한 가공품이지만 최종상품에는 검출되지 않은 상품의 경우에는 “본 제품은 유전자변형00으로 가공되었으나 본 상품에는 이미 유전자변형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음” 등으로 표시
- 벌칙 : 관리규정 위반시 시한을 정하여 시정하고, 불법판매한 제품과 불법소득을 몰수하거나 벌금형으로 처분(1~5万元)

3. GMO표시제 시행의 필요성

- ▶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재배가 상업화되고 생산·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인체·환경에 나타날 수 있는 안전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GMO표시제에 대한 여론이 급속 확산
- ▶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GMO에 대한 표시제 조기 시행 요구가 증폭, 인체나 환경에 대한 위해성 여부와는 별도로 소비자에게 GM 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할 필요성 대두

4. GMO농산물 개발 및 수입유통 현황

가. GMO 개발현황

- 우리나라는 GM 농산물이 개발·보급된 사례가 없음
 - 벼 등 주요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GMO가 아닌 종자를 개발·보급
 - 2001. 5 ~ 8월 전국 주요 콩, 옥수수 재배 포장에 대하여 GMO여부 실태조사결과, 국내에서는 GMO가 재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 현재, 농진청 등에서 18개 작물 45종에 대하여 연구 진행 중
 - 온실 및 포장검정의 실용화 단계 : 벼, 고추, 배추, 감자 등

나 GMO표시 대상 식품 수입 현황(자료:식약청)

(단위 : 건, 톤, 천달러)

구분		2001년			2003년			2005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농산물	대두	판매용	26	26,082	5,505	2	55	9	5	20	7
		가공용	26	450,767	86,878	60	1,233,707	309,457	46	1,018,497	295,846
		소 계	52	476,849	92,383	62	1,233,762	309,466	51	1,018,517	295,853
	옥수수	판매용	4	1,029	216	-	-	-	-	-	-
		가공용	144	500,628	55,231	-	-	-	-	-	-
		소 계	148	501,657	55,447	-	-	-	-	-	-
계		200	978,506	147,830	62	1,233,762	309,466	51	1,018,517	295,853	

5. GMO 표시제 도입경과

- '98 국회 국정감사 시 GMO에 대한 여러 의원의 문제제기
 - GMO표시제 시행 검토[「농산물품질관리법」 제·개정('99.1.21, '02.12.26)]
 - 법제16조 :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의무화
 - 동법 시행령 제 32조 : GM농산물표시 조사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농림부고시 제정(2000.4.22)
 - 대상품목 : 콩·옥수수·콩나물, 감자(감자는 2002. 3.1)
 -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 시행시기 : 2001. 3. 1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개정'00.12.29)
 - 조사공무원에게 GMO표시 위반사범 수사 사법경찰권 부여

6. GMO 표시제의 주요내용

가. 개 요

- 표시 의무자 : 표시대상품목의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
- 대상품목 및 시행시기 : 콩, 콩나물, 옥수수는 2001.3.1부터(감자는 2002.3월부터)

나. 표시기준

- 유전자변형농산물 : “유전자변형 (농산물명)”으로 표시
-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된 경우 : “유전자변형 (농산물명) 포함” 으로 표시
-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포함가능성이 있는 경우 : “유전자변형 (농산물명)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

다. 표시방법

- 포장물 :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쉽게 알 수 있는 활자체와 크기로 표시
- 비포장물 : 판매 장소에 풋말 또는 안내판 등으로 표시

라.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 3%

- ※ 구분생산·유통관리 증빙서류를 갖추고 비의도적으로 3%이하 포함된 경우에는 “포함” 또는 “포함 가능성” 표시면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님은 자율표시

마. 표시위반 시 처벌기준

- 허위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처분 및 공포명령 불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미표시, 표시기준·방법 위반, 조사거부 방해·기피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바. 조사 및 검정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7. 관련법령 및 규정

- ▶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5호)
-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별표[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3항관련)]
- ▶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농림부고시 제2000-31호, 00. 4. 22)
- ▶ 유전자변형표시대상농산물시료수거및검정방법(농관원고시 제2001-1호, 01. 1. 30)

□ 農産物 檢査

1. 農産物檢査 목적

농산물에 대한 국가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향상, 공정 원활한 거래 및 소비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2. 農産物檢査 연혁

- 1945년 : 도영검사 실시
- 1949년~현재 : 국영검사 실시

3. 法的根據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 제21조 및 제24조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8조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27조, 제34조, 제35조

4. 農産物檢査 對象 農産物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 별표2 ⇒ 28개 품목)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15)

- (가) 곡 류 : 벼·겉보리·쌀보리·콩
- (나) 특용작물류 : 참깨·땅콩
- (다) 과실류 : 사과·배·단감·감귤
- (라) 채소류 : 마늘·고추·양파
- (마) 잡사류 : 누에씨·누에고치

(2) 정부가 수출·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수입하는 농산물(10)

- (가) 곡 류
 - 1) 조곡 : 콩·팥·녹두
 - 2) 정곡 : 현미·쌀

(나) 특용작물류 : 참깨·땅콩

(다) 채소류 : 마늘·고추·양파

(3) 정부가 구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3)

곡류 : 현미, 쌀, 보리쌀

나. 농림부 고시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 관련 ⇒ 22개 품목)

(1) 정부가 구매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구매하는 농산물(1)

(가) 곡류 : 옥수수

(2) 정부가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농산물(3)

(가) 곡류 : 보리.메밀

(나) 서류 : 감자

(3) 생산자단체가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생산자로부터 구매하는 농산물(6)

(가) 곡류 : 맥주보리, 밀, 귀리

(나) 서류 : 고구마, 절간고구마

(다) 특용작물류 : 유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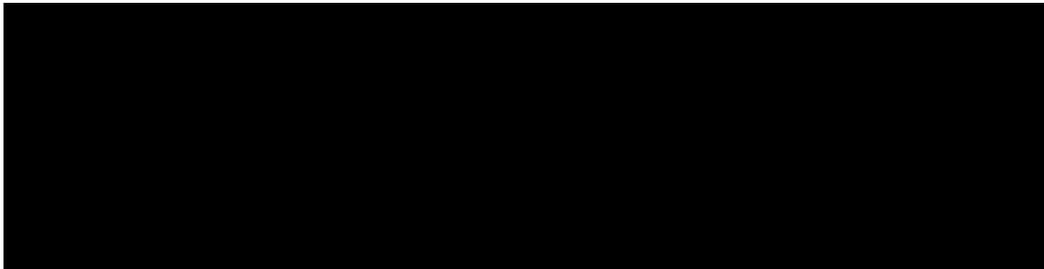
(4) 국제견업협회 규정에 의해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잠사류 중 검사를 신청하는 것(3)

: 생사·쌍고치실·견연사

(5) 국가 종자 생산계획에 의한 지정포장에서 생산된 작물종자(9)

: 맥주보리·밀·팥·녹두·땅콩·참깨·들깨·고구마·유채

5. 收買檢査 處理節次



□ 地理的 表示

1. 목적

-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도모
-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2. 도입배경 및 개념

-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보호 움직임('95년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호함으로써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 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리적표시등록제도 도입(농수산물품질관리법 ; '99. 7. 1)

- 지리적표시라 함은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함

3. 법적근거 (지리적표시 등록관련법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내지 제11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9조](#)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내지 제20조](#)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구성·운영규정 제정\(2000.9.21\)](#)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구성\(2001.8.25\)](#)
-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개정\(2002.9.10\)](#)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구성·운영규정 개정\(2005.10.11\)](#)

4. 지리적표시 등록

가. 등록절차

신청 → 심사 → 등록신청공고 → 이의제기및 심사 → 등록공고 → 표시사용 및 사후관리

나. 신청자격([시행령 제17조](#))

특정지역 안에서 지리적 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자로 구성된 단체(법인)에 한함. 다만 등록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지역 내에 1인만 존재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다. 신청대상품목([시행령 제16조](#))

- (1) 농산물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
- (2) 2002.9.10 고시된 품목 : 녹차, 인삼류, 주류 등 [151개 품목](#)

라. 등록신청 및 등록심사([시행규칙 제17조](#))

신청인은 [등록신청서](#)와 7가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지리적 표시관리 기관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 심사 요청

○ 심사기준

- 지리적 표시의 명칭,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자체품질기준의 적절성,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기타 필요한 등록요건

※ 등록기준([시행령 제15조](#))

당해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품목, 품질등급이 표준규격의 최상등급 또는 관행적 최상등급일 것, 당해 품목의 명성, 품질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자연 환경적 요인 또는 인적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품목일 것, 당해 품목이 지리적표시의 대상 지역 안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품목일 것, 기타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마. 심사결과의 처리([시행령 제18조](#))

지리적 표시관리 기관장은 지리적 표시등록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참작하여 아래 사항 처리

(1) 부적합 통지

- 지리적표시를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2) 보완 통지 : 부적합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등록신청공고 : 등록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없는 때

※ 등록신청공고 내용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신청자의 자체품질기준,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바. 이의신청 및 심사(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18조)

누구든지 등록신청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리적 표시관리 기관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지리적 표시관리 기관장은 지리적 표시등록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사항 처리

1) 지리적 표시 등록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심사결과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2) 부적합 통지는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리적 표시 등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사. 지리적 표시의 등록 및 등록공고(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19조)

지리적 표시관리 기관장은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리적 표시등록증 발급

○ 지리적 표시관리 기관장은 지리적 표시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지리적 표시등록공고를 해야 함

※ 등록공고 사항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지리적 표시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지리적 표시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지리적 표시대상지역의 범위,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등록자의 자체 품질기준

아. 지리적특산품의 표시(시행규칙 제20조)

지리적 표시등록을 받은 자는 지리적특산품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별표4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

자. 등록취소 및 취소공고(법 제11조, 시행규칙 제19조)

지리적 표시관리 기관장은 취소사유가 있어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취소공고를 하여야 함

(1) 등록취소사유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3차에 걸쳐 한 때,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을 2차에 걸쳐 위반한 때,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제품에 지리적특산품의 표시를 한 때, 지리적 표시등록을 받은 자가 전업·폐업 등의 사유로 지리적특산품의 생산이 곤란 한 때,

(2) 등록취소공고 사항

취소일자 및 등록번호, 지리적 표시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지리적 표시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취소사유

차. 지리적특산품의 보호 및 사후관리

(1) 허위표시 등의 금지(법 제9조)

(가)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지리적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금지

(나) 지리적특산물에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금지

(2) 사후관리([법 제10조](#))

지리적 표시관리 기관장은 지리적특산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조사를 할 수 있음

- 1) 지리적특산품의 등록요건에의 적합성 조사
- 2) 지리적특산품의 관련서류 등의 열람
- 3) 지리적특산품의 시료수거·조사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의뢰

(3) 취소 등의 행정처분([법 제11조](#), [시행령 제19조](#))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조사 등 사후관리 결과 지리적특산품이 시정명령, 표시정지,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 가능

※ 시행령 별표 1참조

- 등록취소의 경우 청문 실시([법 제33조](#))

(4) 벌칙([법 제35조](#))

(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지리적특산품의 허위·유사표시, 지리적특산품의 혼합 판매 또는 진열

(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취소 등 행정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다) 사후관리를 위한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나. 農村振興廳

□ 벼 品種判別 技術

1. 技術개발

○ 개발연도 : 1999 ~ 2001년 첨단 [핵산지문법](#)에 의한 벼 품종 판별을 위한 품종별 판별마커셋트를 개발함으로써 실용기술 완성

○ 기술의 명칭

- ① 품종판별을 위한 코드화 방법(특허출원번호 : 10-2001-0034002)
- ② 품종판별을 위한 마이크로 새틀라이트 마커조합 및 그에 의한 품종별 고유코드번호(특허출원번호 : 10-2001-0034003)

2. 技術이전

○ 기술이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3), 경기도농업기술원('04)

○ 기술교육

- 호남 및 영남농업연구소 담당자 4명 : 지역기술이전 담당 (2004)
- 각도 농업기술원에 기술이전 워크샵(2005, 2회) : 담당자 등 17명(호남 및 영남농업연구소 공동)
- 농업기술 센터에 대한 기술이전 워크샵(2006, 예정)

3. 기술개선

- 품종판별 기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동연구(2004)
 - 다카라 코리아바이오테크놀로지(주)

4. 기술내용

- 벼 품종별로 각각의 유전자지문을 분석하여 사전에 준비(코드화)
- 판정 대상 벼의 지문을 조사하여 준비된 지문과 대조 및 판정
 - 어떤 벼가 특정한 품종이 맞는지 확보된 특정 품종의 유전자 지문과 맞비교함으로써 품종 판별이 가능하나 아무 벼나 가지고 어떤 품종인지를 맞추어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모든 벼 품종의 유전자 지문을 사전에 확보해 두었다가 상호 대조해야 하기 때문임

《 품종의 일치 및 진위 여부 판정 》

1. 분석대상 : 벼 식물체 또는 쌀
2. 대비품종 : 작물과학원 등의 기본식물
3. 판별도구 : DNA 마커 6종에 따른 밴드 형상
 - 활용 마커 수 : 6종(RM48, RM249, RM209, RM70, RM257, OSR20)
4. 분석방법
 - ① 분석할 시료와 대비품종으로부터 DNA 추출
 - ② RM48 등 6개 DNA 마커를 사용하여 시료 DNA를 PCR로 증폭한 후 전기영동 하여 silver staining 법으로 염색
 - ③ 발생된 DNA 밴드 양상을 조사하여 대비품종과 비교
 - ※ PCR : DNA의 특정한 부분을 일정한 길이로 증폭시키는 반응
5. 결과해석
 - ① 대비품종과 같은 DNA 양상을 보이면 같은 품종으로 판명
 - ② 대비품종과 다른 DNA 양상을 보이면 다른 품종으로 판명

DNA 마커	발생된 DNA 밴드의 위치				
	대비 품종	시료 1	시료 2	시료 3	시료 4
RM 48	■	■	■	■	■
RM 249	■	■	■	■	■
RM 209	■	■	■	■	■
RM 70	■	■	■	■	■
RM 257	■	■	■	■	■
OSR 20	■	■	■	■	■

- 시료 1은 RM249, RM70에서, 시료3은 RM257에서, 시료 4는 RM48, RM209, OSR20에서 대비 품종과 DNA 밴드 위치가 다르므로 다른 품종으로 판정
- 시료 2는 대비품종과 같은 것으로 판정

《 품종명 미상의 벼 품종 확인 》

1. 분석대상 : 벼 식물체 또는 쌀 (국내 육성 품종과의 동일여부 판별 가능)
2. 대비품종 : 작물과학원 등의 기본식물
3. 판별도구 : DNA 마커 6종에 따른 코드
4. 분석방법
 - ① 분석할 시료와 대비품종으로부터 DNA 추출
 - ② DNA 마커 6종을 사용하여 시료 DNA를 PCR로 증폭하고 전기영동 한 밴드위치를 확인한 후 대비품종의 밴드 위치와 비교

※ PCR : DNA의 특정한 부분을 일정한 길이로 증폭시키는 반응

- ③ 6종 DNA 마커에 따라 발생된 DNA 밴드를 코드화 하여 작물원이 보유한 코드번호와 비교하여 품종 판별

대비밴드 위치	시료 1	시료 2	시료 3	대비밴드 위치	시료 1	시료 2	시료 3
DNA 마커 : A 				DNA 마커 : D 			
DNA 마커 당 코드번호	4	3	8	DNA 마커 당 코드번호	01	08	05
DNA 마커 : B 				DNA 마커 : E 			
DNA 마커 당 코드번호	08	05	03	DNA 마커 당 코드번호	13	06	06
DNA 마커 : C 				DNA 마커 : F 			
DNA 마커 당 코드번호	04	08	09	DNA 마커 당 코드번호	08	05	15

5. 결과해석

- ① 6종의 DNA 마커에 의해 발생된 밴드의 코드번호 작성
 시료 1은 4 08 04 01 13 08, 시료 2는 3 05 08 08 06 05
- ② 작물과학원이 기 보유한 기본식물의 코드번호와 비교 및 판정
 시료 1은 일품벼, 시료 2는 추정벼와 코드번호와 일치하므로 각각 일품벼와 추정벼로 판정

다. 地方自治團體

1. 慶尙南道 推薦商品制(QC) 農産物

가. 상품추천 (QC)

(1) 추천대상

- (가) 농산물가공 산업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인증』 및 『특산물품질인증』 획득 업체의 농산물 가공식품 (농림부의 물레방아표, 명인지정서, 특산물인증서 등)
- (나)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획득한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의 신선농산물

(다) 특정지역에서만 생산되거나 재배되는 품목으로서 수출 또는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출품 등으로 우수성이 인정된 품목

(2) 추천기준

(가) 신선농산물의 경우는 재배면적이 곡류 3ha, 과실류 2ha, 기타 0.5ha이상인 농가 및 생산자단체로서 농작물 재배경험이 5년 이상인 자

(나) 가공식품의 경우는 생산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1) 제 출 처 : 시·군 QC담당부서
- 2) 제출기간 : 상반기(5월중), 하반기(10월중)
- 3) 처리기간 : 2개월
- 4) 수 수 료 : 없음

나.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1) 심사표에 의한 심사결과 현지심사위원이 다음기준을 충족하고

(가) 현지심사 위원 심사보고서 평가결과 70~100이상이어야 하고

(나) 미로 평가된 항목이 1개 이내 이어야 하며 "수"로 평가된 항목이 "우"로 평가된 항목보다 많아야 함

(2) 심의회 개최 시 심사위원 전원의 합격판정을 받은 품목(업체)에 한하여 경남 추천 상품으로 추천 판정함

다. 업무 흐름도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현지실사] [심의회개최] [지정서 발급]

2. 京畿道 統畝브랜드 G 마크

경기도는 무농약이나 유기재배를 통해 생산되는 환경친화 농산품과 명실 공히 전국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하는 농산물생산 농가 및 업체 74개소를 선정, 도지사 인증 브랜드인 ‘G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G마크의 바탕(녹색)은 친환경을 뜻하고 영문자 G는 도지사(Governor)가 품질을 보증하는 (Guaranteed), 우수하고(Good), 환경친화적이거나(Green) 지역명품(Gold)농산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또한 G와 연결된 새싹은 씨앗을 뿌릴 때부터 정성을 다한다는 농부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산물은 안전합니다.

환경농산물 생산 전국1위를 기록할 정도로 유기질비료와 토착미생물, 녹비작물, 천적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여 농약이나 화학비료, 환경호르몬 등으로부터 안전합니다.

◆경기도 농산물은 정직합니다.

천혜의 기후와 비옥한 토지에서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경기농업인들의 정성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농산물 고유의 맛과 향, 영양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산물은 신선합니다.

수도권과 생활을 같이하는 인접지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짧아 신선도가 그대로 유지 됩니다

■ 농산물 「리콜제」 실시로 더욱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G마크 인증 농특산물의 품질에 불만이 있을 때는 구입 후 2일 이내에 즉시 반품·교환이 가능합니다.

■ G마크를 부착한 농특산물은 리콜 및 반품이 가능합니다.

리콜 또는 반품 처리가 되지 않고 생산자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 조치를 하여 권익을 보호합니다.

■ 도지사가 우선 보상해 드립니다.

G마크 생산자가 리콜이나 반품 요구에 불응시 도지사가 우선 보상해드리고 생산자에게 구상권을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국내 최초로 농산물 보험제도를 실시합니다.

G마크를 부착한 농특산물에 의하여 심각한 문제 또는 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2억 원까지 보상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 줍니다.

■ 소비자 안내 및 불만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마크에 관하여 궁금한 내용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 G 마크 선정방법

(1) 통합브랜드(G마크) 사용권부여 신청절차

(가) 농업인이 시장·군수에게 통합브랜드사용 신청서 제출

(나)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 조사실시 후 통합브랜드심의위원회에 추천

(다) 통합브랜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품목 선정심의

(라) 도지사 승인결정에 따라 「경기도농특산물통합브랜드」 사용권부여서 교부

(2) 사업신청

(3) 선정기준

(가) 환경친화 인증(녹색마크)대상품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유기재배 또는 무농약재배로 인증 받은 품목에 ■대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시장에서 일정 수준이상 유통시킬 수 있는 품목을 선정

(나) 지역명품 인증(황색마크)대상품목

농림부로부터 농수산물가공산업에 의한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품목 또는 품질의 우수 성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추천을 받은 품목 중에서 재배면적 및 생산비율, 소비자■인지도, 해당지역자원활용도, 판로확대 및 홍보계획, 품질개선계획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나. G마크 부여현황

(1) 환경친화인증 : 25개소

(2) 지역명품(전통식품) : 9개소

(3) 지역명품 : 40개소

다. G 마크 인증 농특산물

(1)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 1차 승인('00.10.19) : 환경친화인증 3, 지역명품인증 27개 등 30개품목
- 2차 승인('01. 5.29) : 환경친화인증 2, 지역명품인증 1개 등 3개품목
- 3차 승인('01.11.15) : 환경친화인증 3, 지역명품인증 13개 등 15개품목
- 4차 승인('02.11.12) : 환경친화인증 3, 지역명품인증 8개 등 11개품목
- 5차 승인('03.12.01) : 환경친화인증 3, 지역명품인증 9개 등 12개품목
- 6차 승인('04.11.17) : 환경친화인증 14, 지역명품인증 3개 등 17개품목

(2) 환경친화인증 : 25개품목(과채류13, 쌀6, 버섯6)

(3) 지역명품인증(전통식품류) : 9개품목(장류2, 김치류 4, 장류2, 가공식품3)

(4) 지역명품인증(일반품목) : 49개품목

- 농산물 : 25품목, ■ 축산물 : 11품목, ■ 임산물 : 2품목, ■ 기타 : 2품목 등

3. 忠南 브랜드쌀 淸風明月

가. 현황

- 충남 쌀의 성가제고를 통한 제값 수취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고 충남도와 농협의 민관 협력 사업을 부각하고자 개발하였는바 개발 당시는 도의 예산보조 및 브랜드에 참여한 농협 RPC의 분담금으로 홍보 및 판촉활동이 활발했으나 도(행정기관)의 보조금 지급제한 및 농업부문 보조금예산을 친환경 경비로 결집하여 특색 사업화 하려는 도의 농정방침에 따라 보조금지원이 중단된 상태이며 농협RPC도 비용대비 매출액 증대효과가 미미하여 비용 분담을 기피하는 경향임.
- 충남도의 지원이 중단된 후 관리가 소홀하여 젓고 브랜드사용 RPC에서도 고가 브랜드의 개념에서 멀어져 감.
- 관리주체 및 제재기준이 모호고 광역단위 브랜드가 퇴색되고 최근은 시군단위 및 개별 브랜드 선호 경향이 강함.
- 현재 브랜드 사용 농협 RPC(18개소)
천안성환, 공주선풍, 보령남포, 아산둔포, 서산대산, 농산연무, 연기통합, 부여부여, 홍성갈산, 예산삼교, 예산고덕, 태안원북, 당진합덕, 당진고대, 당진송악, 당진신평, 당진우강, 당진면천,
※ 2005년도 판매실적:12,000톤 정도로 추산(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4. 全南 랜드쌀 風光水土

가. 米質 및 包裝才 管理 基準

(1) 미질관리

(가) 출하조합 : RPC운영조합 및 품질인증 쌀 획득조합

(나) 생산기준

출하조합 관내 농민과 계약재배에 의하여 생산하고 농협 RPC에서 가공 한 쌀로서 다음 조건을 갖춘 쌀

- 1) 계약재배: 파종 시 부터 쌀 작목반을 중심으로 조합관내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하여 농가별, 품종별 계약재배 약정서를 비치 할 것.
- 2) 품 종: 해당 지역의 우량(장려)품종으로서 계약재배 약정서에 의한 농가별 품종 확인이 가능할 것
- 3) 토양관리: 간척지 또는 객토, 퇴비, 흙 살리기 운동 등 지속적인 땅심 높이기로 비옥한 논 일 것.
- 4) 수확건조: 적기수확 하고 화력 건조시 고온, 급건 되지 않을 것
- 5) 수집저장: 품종별로 수집 후 구분 보관관리가 가능할 것.
- 6) 가공출하: 농협 RPC에서 가공 할 것, 다만 불가피할 경우 농협 RPC 수준의 공장에서 가공할 것

(다) 풍광수토 브랜드 사용

- 1) 『풍광수토GOLD』 : 농관원의 품질인증 쌀에 한하여 사용
- 2) 『풍광수토』 : 품질인증 쌀 이외의 풍광수토 쌀에 사용

(2) 포장재관리

(가) 포장재의 조제, 공급은 RPC의 위임을 받아 지역본부가 관리

매년 계약재배 실적을 파악하고, 확인된 재배물량에 한하여 포장재 매수 공급하며 출하조합은 지역본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포장재를 임의로 제작 사용할 수 없다

(나) 포장재 공급체계

RPC농협신청 → 지역본부(심사확인) → 농협포장재사업소, 발주 → 조제업자, 공급 → 검수(RPC) → 대금결제(포장재사업소 역환)
 ※포장재사업소 사업 활성화를 위해 포장재사업소에 위임 제작

(3) 품질관리 강화배경

(가) 일부RPC가 미질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으로 '풍광수토'쌀에 대한 미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는 등 소비자 신뢰 실패

(나) 2000.12.7 전라남도가 감사지적 사항 개선을 위하여 전남서 생산되는 품질 인증 미에 한하여 풍광수토 브랜드를 사용할 것을 요청

(4) 풍광수토 브랜드 현재출하가격

(가) 풍광수토골드 평균 출하가격 : 최고 45,312원/20kg, 최저39,712/20kg

(나) 풍광수토 평균 출하가격 : 최고 41,538/20kg, 최저 38,888/20kg

(5) 현행 관리기준 위반사례

(가) 생산기준

"풍광수토 골드" 쌀의 생산기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인증미"로 제한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RPC농협에서 이를 미 준수하고 계속 사용하여 풍광수토 브랜드 미질저하 및 명예실추

(나) 출하가격 및 시기

- 1) 출하조합 상호간에 과당 경쟁으로 인하여 저가 출하에 의한 피해 발생 우려
- 2) 일부 RPC조합에서 풍광수토 골드상표를 일반미가격으로 출하함으로써 미질 및 브랜드 이미지 손상

- 3) 관내 계약재배 및 품질 인증 미에 대하여 풍광수토 또는 골드 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하나 일부 RPC에서 일반미를 포장 공급 하거나 계약재배 물량 소진시기 이후에도 계속 출하함으로써 품질 저하 및 소비자 민원야기 우려

(다) 포장재 관리

- 1) 일부 농협에서 풍광수토 포장지를 지역본부 승인 없이 민간 포장 제조업체에 신청, 공급받아 유통함으로써 브랜드 관리 문제점 노출
- 2) "풍광수토골드"조제업체인 미국포장에서 임의로 "풍광수토"포장재를 제작 공급함으로써 공동브랜드 관리에 물의를 야기함.
- 3) 풍광수토 브랜드 사용 위반에 따른 제재조항 미비

풍광수토 미질 및 포장재 관리기준(현행)

구 분	풍광수토골드	풍광수토
1. 미질관리 ○출하조합	- RPC운영조합 중 품질인증쌀 획득조합	- RPC운영조합
2.생산기준 ○계약재배	- 파종 시 부터 쌀 작목반을 중심으로 조합 관내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하여 농가별·품종별 계약 재배 약정 (약정서 비치)	좌 동
○ 품 종	- 해당지역의 우량(장려)품종으로서 계약재배 약정서에 의한 농가별 품종확인이 가능할 것	좌 동
○ 토양관리	- 간척지 또는 객토·퇴비·흙 살리기 운동 등 지속적인 땅심 높이기로 비옥한 논일 것	좌 동
○ 수확건조	- 적기 수확하고 산물수매보관 - 고온·급건 금지	좌 동
○ 수집저장	- 품종별 산물수매 후 구분 보관·관리	좌 동
○ 가공출하	- 농협RPC에서 가공	좌 동
3. 브랜드의 구분사용	- 농관원의 품질인증 쌀에 한하여 사용	- 품질인증 이외의 쌀에 사용
4. 포장재관리	- 포장재 공급은 RPC조합의 위임을 받아 지역본부에서 관리 - 매년 계약재배 실적을 파악하고 확인된 재배 물량에 한하여 포장재 매수공급	좌 동
5. 판매가격	- 50,000원 이상(20kg/포)	- 43,000원 이상

라. 農業協同組合中央會

1. 農協RPC, 市郡單位 統合 加速化

□ 농협중앙회는 지난2006. 4. 20(목) ~ 4.21(금) 농협공제수련원에서 지자체 양정 책임자, RPC통합 참여조합 관계자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미국종합처리장(RPC)통합을 희망하는 10개 시·군 30개RPC를 대상으로 “RPC통합설명회”를 개최하고 RPC통합에 따른 우대지원 및 실무 절차에 대하여 논의한바 있다.

- 농림부와 농협은 읍·면 단위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농협의 RPC를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RPC간 과다경쟁 해소, 이름 있는 브랜드 쌀 육성을 통한 우리쌀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04년부터 시군단위 RPC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 2004년 국내 최초로 3개 지역 8개 RPC가 통합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05년 4개 지역 17개 RPC 등 매년 시군단위 통합에 참여하는 지역농협의 RPC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 농림부와 농협은 현재 182개인 농협RPC를 2010년까지 100개 정도로 통합할 계획이다. 통합된 RPC는 농협과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특히,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가공 및 건조저장시설의 현대화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끝.
- 농협RPC수 : ('03) 200개 RPC → ('05) 182개 → ('10) 100개
- 우대 지원자금
 - 운영자금 : 정부(운영자금 20~80억원, 3년 무이자), 농협중앙회 (운영자금 30~90억원, 3년 무이자)
 - 시설자금 : 가공시설현대화 자금(사업비 20억원, '07년부터 지원)

2. 農協, 老後RPC 改補修資金 156억원 支援

- 농협중앙회는 수입쌀에 맞설 수 있는 고품질 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노후화된 RPC 31개소에 대해 156억원의 개보수자금을 지원한다고 2006.4.13일 밝혔다.
-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150억 원의 무이자 융자와 6억 원의 무상 보조금으로 노후화된 RPC시설의 기기교체 등 개보수자금으로 사용된다. 이번 자금지원으로 10여년 된 노후 RPC시설이 개·보수되면, 농협 쌀의 품질은 한층 높아지고, RPC의 경영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RPC 개보수자금은 '03년 처음 지원된 이래, 작년까지 3년 동안 총 122개 RPC에(전체 RPC의 67%) 무이자 융자 504억 원, 중앙회 보조금 19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 농협은 내년까지 나머지 RPC에 대해서도 개보수자금 지원을 완료하여, 수입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고품질 쌀 생산시설을 완벽하게 갖춘다는 계획임.

3. 國內 最高價, 有色米 試食, 展示, 販賣

- 농협 성남하나로 클럽(분당 오리역 소재)은 2006년 2월 9일부터 '정월대보름맞이 농특산물전'을 개최하면서 적토미 등 고품질, 고가의 희귀 쌀인 오색미로 밥을 지어 즉석에서 시식하고 전시, 판매하는 코너를 열었다.
- 이 행사에서 전시, 판매된 오색미로는 적토미(전남 장흥산 : 적색쌀), 자광미(경기 김포산 : 적색빛이 나는쌀), 녹토미(전남 장흥산 : 녹색쌀), 흑미(강원 철원산 : 흑색쌀), 백미(경기 이천산 : 백색쌀)이다.
- 특히, 전남 장흥 쇠뚝구리마을의 적토미는 900평 논에서 지난해 520kg만 생산되었을 정도로 산간지역의 척박한 땅에서 유기농법으로만 재배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최고가인 한가마(80kg)에 200만 원에 팔려 나간 적이 있는데 이날부터 이 가격수준에서 농협 성남하나로 클럽에 전속 출하되어 한정 판매되었다..
- 또한 경기 김포산인 자광미(紫光米)는 “붉은빛이 도는 쌀”이라는 뜻으로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면 오히려 수확량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는 쌀로서 김포금쌀과 검은콩을 약간 섞어 밥을 지으면 구수하고 맛이 아주 좋다. 옛날에는 궁중 진상미로 유명했으며 2,500평에 2,000kg 정도 생산되었고 현재 한가마(80kg)에 1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 농협 성남하나로 클럽 관계자는“수입쌀 시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농업·농촌에 희망을 주기 위해 ‘오색미’등 고품질의 우리쌀 판매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 韓國食品研究院

□ 特化研究團本部 研究事業

우리나라 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벼의 수확 후 건조, 저장, 가공 및 유통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쌀의 객관적 식미평가 방법 확립과 등급화 기준 마련으로 쌀의 유통체계를 품질에 의해 등급화, 차별화하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쌀을 이용한 무균포장 밥 등 각종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산업화하고 있다.

1. 쌀 연구단 연구실적

- 물벼의 제현율 측정기술 개발
- 중형산물 건조,저장 시설 개발
- 현미품온조정을 통한 가공기술 개발
- 씻지않는쌀 제조설비의 국산화 및 실용화 기술 개발
- 쌀의 식미기준수식화 및 한국형식미판정시스템 개발
-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산지 전처리가공시스템 개발
- 곡류로부터 콜레스테롤상승억제 기능소재의 개발 및 활용기술 연구
- 고주파를 이용한 식품의 살균 및 유통기간연장에 관한 연구
- 유통쌀의 품질유지를 위한 유통방법 및 포장기술 개발
- RPC 기술지원을 통한 생산농가의 편익제공 및 소득증대
- 한국쌀의 향돌연변이성 효과에 대한 연구로 쌀의 소비촉진
- 미강을 이용한 새로운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및 활용
- 전통식혜 식품공전상 신설을 위한 타당성 연구
- 수입쌀(MMA물량)에 대한 산지별 식미와 가공특성 연구
- 쌀의 원산지·품종판별 연구로 수입쌀의 불법유통 예방
- 중저온 건조저장기법 활용 고품위 쌀 생산기술 기술이전

2. 관능검사

한국 식품연구원 관능 검사실에서 식품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재의 관능평가에 대한 자문 및 검사의뢰에 응하기 위해 연구원의 관능 검사실은 검사에 필요한 준비 시설 및 공간 그리고 급수, 하수, 전기, 조명 시설이 완비된 12개의 booth를 지니고 있다.

○ 운영현황

외부와 연구원의 의뢰에 의해 1999년도에 약280회의 관능평가가 수행 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식품산업체 뿐만 아니라, 농협, 식품관련 가전업체, 전자회사 및 기타 연구소 등 여러 산업체 및 기관으로부터 관능검사를 의뢰받아 검사를 수행 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관능검사 정규교육과 경험을 지닌 패널 manager와 여러 식품의 개관적인 관능검사에 참여한 50여명의 유 경험 패널이 있으며, 고객의 요청 시 원외에서 target group을 선별하여 소비자검사(양적검사, 질적 검사)도 수행하고 있다.

2. 食品醫藥品安全廳의 公認檢定機關 指定 및 事後管理 實態

가. 公認檢定機關 指定根據

(1) 食品衛生法

제18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 등의 검사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식품 등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5·12·29, 98·2·28, 2002.8.26.] [[시행일 2003.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2.8.26.] [[시행일 2003.2.26.]]

1.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검사관련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한 때

(2) 식품위생 검사기관 지정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3-54호)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검사기관의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사기관을 구분하여 지정한다.

1. 법 제16조, 법 제17조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을 검사하는 기관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 품질검사**를 위탁받아 검사하는 기관

제4조(검사기관의 구비요건) ①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신소재식품, 다 이옥신 등 신종유해물질 또는 방사능오염물질만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험실, 전처리실, 기기분석실, 관능검사실 등 검사시설 면적의 합계가 400㎡ 이상이어야 하고 구획되어야 한다.
2. [별표 1](#)에서 정한 검사설비와 기계·기구류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 검사원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동업자조합의 공동검사실에서 특정식품의 규격·기준만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험실, 전처리실, 기기분석실 등 검사시설의 면적의 합계는 250㎡ 이상이어야 하고 구획되어야 한다.

2. **별표 2**에서 정한 검사설비와 기계·기구류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 검사원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검사능력평가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에 대하여 지정 전에 검사능력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능력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검사능력평가 결과 신뢰성·정확성 확보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관리를 위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한다. 다만, 제3조제1호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검사기관으로서의 검사능력평가 및 신뢰성 등을 심의한 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기관 지정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검사기관의 명칭, 소재지, 검사대상식품등, 검사기관 구분 및 검사기관 지정 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1]

檢査設備·機械·器具 및 檢査員의 數. 資格基準(제4조제1항 관련)

※법 제16조, 법 제17조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을 검사하는 기관

1. 검사설비·기계·기구 기준

2. 검사원의 기준

가. 검사원의 자격

(1)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영양학, 식품과학, 축산학, 축산가공학, 수산제조학, 농산제조학, 식품제조학, 화학, 농화학, 식품화학, 생물학, 미생물학, 약학, 환경공학(다이옥신 검사에 한함), 식품 등의 검사와 관련이 있는 위생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식품기술사, 식품제조기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구비한 자

나. 검사원의 수

(1) 자격기준에 적합한 8명 이상(이중 이화학분야 3명, 미생물분야 2명은 식품등의 연구·검사·검정과 관련된 검사기관의 해당분야 시험·검사 분야에서 대학졸업자의 경우 2년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4년이상 각 해당분야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단, 타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원은 제외한다.)

[별표 2]

檢査施設・機械器具類 및 檢査員의 數・資格基準 (제4조제2항 관련)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 품질검사를 위탁받아 검사하는 기관

1. 검사설비·기계·기구기준

2. 검사원의 기준

가. 검사원의 자격

- (1)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영양학, 식품과학, 축산학, 축산가공학, 수산제조학, 농산제조학, 식품제조학, 화학, 농화학, 식품화학, 생물학, 미생물학, 약학, 식품 등의 검사와 관련이 있는 위생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2) 식품기술사, 식품제조기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구비한 자

나. 검사원의 수

- (1) 자격기준에 적합한 4명 이상(이중 이화학분야 1명, 미생물분야 1명은 식품 등의 연구·검사·검정과 관련된 검사기관의 해당분야 시험·검사분야에서 대학졸업자의 경우 1년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3년이상 각 해당분야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단, 타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원은 제외한다)
- (2) 동업자조합의 공동 검사실에서 특정 식품의 규격·기준만을 검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식품에 대한 검사분야에서 1년이상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나. 事後管理實態

(1) 업무분장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령 제346호 일부개정 2006. 01. 24.] 제5조2(유해물질관리단장)의 규정에서 유해물질관리단장 하에 검사관리팀을 두고 관리 함

제5조의2 (유해물질관리단장) ①유해물질관리단장 밑에 위해관리팀장·위해정보팀장·위해기준팀장 및 검사관리팀장을 둔다.

⑤검사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 2.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평가·관리
- 3.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관리를 위한 교육, 평가지표 개발, 시료표준화 및 시험법표준화
- 4.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간이시험법 등 개발·보급
- 5. 기준·규격에 대한 적·부 판정을 위한 시험방법의 개발

(2) 식품위생검사기관(자가 품질검사기관포함) 처분기준

제정 2001. 9. 19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71호

개정 2002. 5. 29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77호

1. 목적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의거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지정·운영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검사실적 등의 보고 및 지도·감독 등을 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규정에는 위반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검사업무의 정지 및 시정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형평성·공평성·투명성·객관성·효율성 제고를 유지하는데 있다.

2. 위반내용

-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
- 변경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 검사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한 때

(3) 의약품기준 및 시험방법편찬위원회규정

제정 1998. 4. 29 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4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편찬을 위하여 설치하는 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편찬에 관한 사항
- ②기타 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편찬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안전평가관, 의약품평가부장, 생약평가부장, 의약품평가부 각과장, 생약평가부 각 과장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안전평가관이 된다.

③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약품규격과 보건연구관이 된다.

제4조 (위원장의 임무 등)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 관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의약품평가부장 또는 생약평가부장이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하며 위원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위원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의 소집)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 (의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 4. 29 부터 시행한다.

3. 畜産物 等級判定所 運營實態

가. 設立根據 및 目的

(1) 設立根據 : 축산법

제 29 조 (축산물등급판정소<개정 2001.1.26>)

- ① 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이하 "등급판정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1.1.26>
- ② 등급판정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1.1.26>
- ③ 등급판정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1.1.26>
- ④ 등급판정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1.1.26>
 1. 축산물등급판정
 2. 축산물의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축산물등급판정기술의 개발
 4.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사의 양성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 ⑤ 삭제 <2001.1.26>
- ⑥ 농림부장관은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농림부장관은 등급판정소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판정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시설과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⑨ 등급판정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6>

(2) 設立目的 :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가축개량의 촉진을 통한 국내산 축산물의 국제 경쟁력제고하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에 기여

□ 沿革

- 1989. 04 정부로부터 축산물등급판정사업 수임 및 수행착수
농림부—한국종축개량협회 육류등급부
- 1992. 07 축산물등급판정 시범실시
- 1993. 08 한국종축개량협회 축산물등급판정소로 개편
- 1994. 12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소속변경(법적근거)
- 2000. 07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소속변경
- 2001. 07 축산물등급판정소 별도법인으로 독립
- 2003. 01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징수업무 개시
- 2004. 04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기관 지정

[우리의 미래, 축산물품질평가 및 인증 전문기관으로 성장]

나. 組織構成

(1) 組織 : 3부(8팀) 4지역본부 10지소 21출장소



(2) 構成人員 :

구분	상임임원	일 반 직						기능직	합계
		1급	2급	3급	4급	5.6급	소계		
직급	(소장)	1급	2급	3급	4급	5.6급	소계		
인원	1	3	3	14	40	158	218	13	232

다. 主要事業 內容

- 소 도체 등급판정
- 계란 등급판정
- 돼지 도체 등급판정
 - 돼지 온도체 등급판정
 - 돼지 기계 등급판정
 - 돼지 냉도체 등급판정
- 축산물의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축산물 등급판정기술의 개발
- 축산물 등급판정사 양성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의 위탁사업

라. 豫算 및 財務

(1) 예산관리

(가)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P)
합계 (A+B)	13,712	14,879	13,779	13,059	13,937
보조금 계 (A)	13,712	14,879	8,847	7,768	8,565
운영비(인건비 포함)	12,551	11,271	12,499	7,348	8,105
자산취득비	1,161	3,608	1,274	420	460
수수료(B)	-	-	4,926	5,291	5,372

□ 任員現況

○ 선임절차

- 상임이사(소장) : 소장 추천위원회 - 이사회결 - 농림부장관승인 - 이사장임면
- 비상근이사(당연직, 선임직)
 - 당연직이사 : 농림부 축산국장외 9개 단체장
 - 선임직이사 : 이사회에서 선임(재적이사 3분의2이상 찬성)

○ 구성현황

연번	구분	성명	직책	비고
1	당연직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	비상임
2	당연직	송석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	비상임
3	당연직	조병대	한국종축개량협회 회장	비상임
4	당연직	김명규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회장	비상임
5	당연직	문병창	축산물기업중앙회 회장	비상임
6	당연직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	비상임
7	당연직	최영열	대한양돈협회 회장	비상임
8	당연직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비상임
9	당연직	정광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비상임
10	당연직	김경남	축산물등급판정소 소장	상임
11	선임직	최준구	대한양계협회 회장	비상임
12	선임직	한형석	한국계육협회 회장	비상임
13	선임직	곽동경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비상임
14	선임직	강광파	(사) 소비자 시민의 모임 상임이사	비상임
15	감사	김창근	중앙대학교 산업과학대 교수	비상임

□ 勞使關係

○ 노조설립

■ 노조설립 : 2002년 4월 29일 설립신고

■ 상급단체 : 민주노총 공공연맹 (2002.7.13)

■ 조합가입현황 ('05.10.1 현재)

- 가입대상자 209명중 194명 가입 (92.8%)

■ 노사분규 : 없음

■ 노조전임여부 : 없음

- 효율적인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경영혁신팀에 노동조합간부 1명을 파견운영

○ 근로조건

■ 주 40시간근무제 : 법적 시행일 ('06.7.1)

※ 행자부 주40시간근무제 시행시점과 맞추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작업위험도 : 산업재해 없음

■ 학자금 지원

- 중·고교 : 입학금, 수업료, 실습비등 지급

- 대학교 : 농협중앙회를 통한 학자금 대출시 이자보전

■ 최근1년 이내 직원 이직률 : 0.87%(2명 이직)

■ 동호회 활동지원 : 없음('06년 예산에 반영계획)

4. 國內 檢定會社 運營實態

가. 法的根據

(1) 향만운송사업법(법률 제6890호 : '03. 5. 27)

※ 향만운송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행하는 행위로, 영리여부를 불문하여 적용

(2) 향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6372호 : '99. 5. 27)

(3) 향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24호 : '99. 6. 24)

나. 現況

(1) 業體數 : 28개사

(2) 國籍別

(가) 국적사 : 25개사

한국검정, 한국검사검정공사, 대한해사검정, 협성검정 등

※ 해외업무는 외국회사와 제휴하여 업무처리

(나) 외국지사 : 3개사

한국SGS(스위스 100%), ITS(영국50%), OMIC(한국80%)

(3) 規模別

(가) 대형업체 : 7개사

- 1) 년 매출액이 80~100억 정도, 직원 100명(비정규직 제외)정도의 회사로 지출은 인건비가 60%정도를 차지
- 2) 한국SGS, ITS, 한국검정, 한국검사검정공사, 대한해사검정, OMIC, 협성검정

(나) 중소기업 : 21개사

다. 檢定關聯 業體의 種類 및 主要業務

(1) 종류 : 감정, 검수, 검량,

(2) 주요업무

- (가) 감정사업 : 선적화물에 대한 창구의 안전과 화물의 적부 상태를 실사, 감정(평가)하여 공증하는 사업
- (나) 검수사업 : 선적화물의 적하, 양하 이동시에 그 화물의 개수 또는 수도 사업을 입회 확인하여 공증하는 사업
- (다) 검량사업 : 선박화물 중 선적화물의 적하, 양하 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여 공증하는 사업

라. 農産物에 對한 우리나라 檢定會社의 檢定能力 및 實態

(1) 농산물에 대한 전문검정회사 : 없음

(2) 검정회사의 농산물 검정능력

- (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분계측정도의 분석 능력과 장비만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임
- (나) 전문적 분석을 요하는 사항들은 전문분석기관에 검정의뢰 또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보고서(평가서)를 작성함.

(3) 검정능력을 완비하지 못하는 이유

- (가)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수입국으로서 업무량이 없어 대부분 공산품위주의 검정을 하고 있어 농산물검정에 투자를 기피
- (나) 민수용 수입농산물의 품위감정이 의무 및 통관에 필요한 요건사항이 아니고 타인의 수요(필요)에 응하는 행위임으로 검정회사들이 투자를 하지 않음.

(4) 따라서, 농산물의 검정보다는 검량·검수업무를 하고, 일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마. 輸入農産物의 檢定 現況

(1) 정부가 수입하는 농산물

(가) MMA 수입현미

- 1) 검정방법 : 구매계약서에는 선적항에서 검정을 하기로 되어 있으나, 적격품 생산을 위하여 가공공장위주의 검정을 하고 있음
 - 일본본사 직원 또는 현지기술직원이 검정

- 2) 업체지정방법 : 농관원, 조달청, 유통공사(또는 식검, 식약청)의 추천을 받아 농림부에서 결정
- 3) 역대 검정업체 : OMIC(80년도 및 MMA 현미 수입물량 전량)

(나) 유통공사에서 수입하는 일반 농산물

- 1) 검정방법 : 선적항 위주의 검정
- 2) 업체지정방법 : 등록된 검정업체에 돌아가면서 검정을 시키고 있음
 - ITS, 신한검정, 아주검정, OMIC, 범한검정, 대한해사검정, 세계검정
 - ※ 조달청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검정업체 지정제도를 폐지

(2) 민간업체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가) 사료용 농산물

선적지에서 검정을 받고 국내 도착항에서는 수량·피해품 확인

(나) 일반 농산물

선적항이나, 도착항에서 품위검정을 받지 않고 도착항에서는 수량·피해품 확인만 하여 규격 미달품이 도입될 경우 구제방법이 없음

(3) 검정수수료

(가) 검사화물가격(송장가격)의 1%이내, 단 견본채취, 분석료 기타 부대요금은 별도

(나) 화물의 손해감정은 검사화물가격의 0.5%

(다) 국가별 현미 검정수수료 : \$/톤

국가별	태국	중국	미국	베트남	인도	호주
금액	0.5~0.9	7.0~9.5	3.5(5~8)	0.6~0.9	0.9~1.8	1.0

바. 港灣運送事業 免許 및 基準

(1) 항만운송사업 면허 : 해운항만청장

(2) 검수(검수, 검량, 감정)사업 면허 기준

종류 급지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1 급지	2 급지	3 급지		
구분	인천, 부산, 울산, 포항, 광양	군산, 여수 마산, 동해	1 급지 및 2 급지 를 제외한 항		
1.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2. 검수사	인 천 : 30인 이상 부 산 : 50인 이상 그 외 지역 : 10인 이상	3인 이상	2인 이상	-	
3. 감정사	-	-	-	6인 이상	
4. 검량사					6인 이상

사. 檢數員 資格

- 자격 :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운항만청장에게 등록된 자
- 자격시험관할관청 : 해운항만청
- 자격시험 구분 : 신체검사, 필기시험, 구술시험
- 시험과목

구 분	검 수 원	감 정 원	검 양 원
시험과목	1.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2. 항만운송사업 법 3. 영 어	1. 종사 하고자하는 전문분야에 해당과목 2.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3. 항만운송법 4. 영 어	1. 선박의 구조 및 흘수계산 방법 2.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3. 항만운송법 4. 영 어

-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구술시험 : 60점 이상 득점한 자

아. 農産物檢定 主要業體 現況

업체명	해외검정 공사(OMIC)	고려검정 공사(ITS)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1-23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2-6
대표	박 헌량	김윤환
검정품목	곡물/광산물/2차 산업생산품 등	농축산물/석유화학제품 등
연계기관	OMIC(일본)	ITS(영국)
투자비율	한국 80%, 일본 20%	한국 50%, 영국 50%
활동지역	전 세계	전 세계
해외지점	74개국	97개국
국내지사	15개사무소	15개 사무소
인원	62명	130명

※ 日本 OMIC은 1953年 日本農林省(食糧廳)退職자와 綜合商社가 共同으로 投資하여 設置한 自國內에 輸入되는 農産物의 檢定을 目的으로 設立하였으며 OMIC의 技術部長, 常務는 日本食糧廳 檢査員出身을 特採하고 있음

- 農林省 出身 6名이 50%, 10個 綜合商社가 50%를 出資하여 設立

※ 日本의 경우는 農産物의 輸入을 市場情報力이 豊富한 綜合商社에서 輸入하여 品質, 價格競争이 유리하나, 우리나라는 小規模業體에서 輸入하여 品質이 떨어지는 農産物이 많이 導入되고 있음

□ 참고

☞ 문헌

- 농림부, 「2006고 품질 쌀 생산유통대책」, 2006
- 농림부, 「쌀 브랜드 경영지침서」, 2006
- 농림부, 「브랜드 쌀 육성대책」, 2006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사업 종합보고서」, 200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MMA쌀 검사를 위한 교육교재」 200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RPC종사자 교육교재」, 200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수첩」, 2000

☞ 관계기관 Home Page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ome Page(www.naqs.go.kr)
- 농촌진흥청 Home Page(www.rda.go.kr)
- 경기도청 Home Page(www.gg.go.kr)
- 충청도청 Home Page(www.chungnam.net)
- 전남도청 Home Page(www.geonnam.go.kr)
- 경남도청 Home Page(www.gsnd.net)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Home Page(www.nonghyup.com)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Home Page(www.kfri.re.kr)
- 축산물등급판정소 Home Page(www.apgs.co.kr)
- 식품의약품안전청 Home Page(www.kfda.go.kr)
- 일본해외화물검사주식회사(OMIC)Home Page(www.omicnet.com)
- 일본전국미국안전공급확보기구 Home Page(www.komenet.jp)
- 재단법인 일본곡물검정협회 Home Page (www.kokken.or.jp/)
- 일본농림수산성 Home Page(www.maff.go.jp)
- 미연방곡물검사국(GIPSA) Home page(www.gipsa.usda.gov/GIPSA)